

서울특별시보

등록번호 제 39 호
 등록년월일 1953년 6월 18일
 발행인 서울특별시시장 권한유
 편집인 공보실장 안길
 인쇄소 경화인쇄소

차 례

△주 례..... 12622

- 제 433호 서울특별시립 부녀복지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제 434호 서울특별시 구·동 파월장병지원위원회 조례
 제 435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
 제 436호 서울특별시 의무직 공무원 특수근무수당 지급조례
 제 437호 서울특별시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중 개정
 제 438호 서울특별시영 전차 운임 조례
 제 439호 서울특별시 운수사업 특별회계 조례
 제 440호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소 설치 조례
 제 441호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규 칙..... 12649

- 제 553호 서울특별시 물가조정위원회 규칙
 ✓ 제 554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
 제 555호 서울특별시 도시미화 협의회 규칙
 제 556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위원회 규칙
 제 557호 서울특별시 구과제별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제 558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
 제 559호 서울특별시 전차제도 사업 인수위원회의 규칙
 제 560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
 제 561호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소 직제

△문 례..... 12670

제 214호 서울특별시 구종합행정 강화의견

△사 령..... 12672

△고 시..... 12719

제 968호 사방시설지 해제

제 969호 사방지정지 해제

제 970호 66년도 종축점사 실시

제 971호 사방지정지 해제

제 972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단지 조성)

제 973호 196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제2회)및 각특별회계(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

제 974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975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976호 사방지정지 해제

제 977호 사방지정지 해제

제 978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979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980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981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정정

제 982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983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984호 모축의 도살금지

제 985호 광전병 예방주사 실시

제 986호 사방지정지 해제

제 987호 사방지정지 해제

제 988호 사방지정지 해제

제 989호 사방지정지 해제

제 990호 사방지정지 해제

제 991호 사방지정지 해제

- 제992호 사방지정지 해제
- 제993호 사방지정지 해제
- 제994호 사방지정지 해제
- 제995호 도로수익과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 제996호 운수사업소 명칭및 위치
- 제997호 196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공 고..... 12735

- 제 69 호 공영주택 (10동분)분양
- 제 70 호 조리사 강습시험
- 제 71 호 독도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 제 72 호 시유건물 철거조건부 매각처분
- 제 73 호 미매각택지 및 체비지 매각처분
- 제 74 호 시유건물 철거 조건부 매각처분
- 제 75 호 성산토지구획정리지구 제1차 환지계획 및 예정지지정
- 제 76 호 부정축산물 단속원 임명조치
- 제 77 호 환지처분 일부 변경
- 제 78 호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공고
- 제 79 호 시유건물 철거조건부 매각처분
- 제 80 호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 81 호 재산압류 통지서 공시 송달
- 제 82 호 제8회 경사승진 시험 실시
- 제 83 호 세목 공고
- 제 84 호 우량공산물 심사
- 제 85 호 토지및 지장물 세목공고
- 제 86 호 유골개장공고
- 제 87 호 영업용 차량 임시 검사일시

(4) 조 례

제 88 호 도로사용폐지

제 89 호 도로폐지

서종공고제 80 호 도로점용허가

서종공고제 91 호 도로점용허가

서종공고제 92 호 도로점용허가

서성공고제 7 호 하천부지임시점용허가

서영공고제 78 호 도로및 하천부지점용허가

서종공고제 79 호 도로점용허가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서울특별시조례제433호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사용료) 제1호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박료 1박

시립근우회관 10원

시립양지회관 20원

6. 미용료

가. 고 데 1회 30원

나. 파 마 1회 80원

다. 맞사지 1회 50원

부 칙

이 조례는 서기 196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구·동 파월장병 지원위원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국

◎서울특별시조례제434호

서울특별시·구·동파월장병지원위원회조례

제1조 (설치) 국군의 월남과전에 따른 제반지원대책을 종합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 파월장병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이 위원회는 상급 파월장병 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원방침에 따라 다음 사항의 지역단위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1. 파월장병의 환송, 환영, 기타, 사기양양에 관한 사항
2. 파월장병의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월남사태와 월남파병에 대한 홍보, 계몽에 관한 사항
4. 전사상자및 동가족의 위문원호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특수지원사업의 계획실시에 관한 사항
6. 기타 월남파병에 따른 제반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각급위원회의 종류 위원의 경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1. 서울특별시 파월장병 지원위원회 | 25인 이내 |
| 2. 구파월장병 지원위원회 | 20인 이내 |
| 3. 동파월장병 지원위원회 | 10인 이내 |

②위원회에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 구청장과 동장이,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제1부시장, 경찰서장과 파출소주임이 되고 그1인은 민간측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선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동위원은 동장이 그 동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의결사항의 존중 및 협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은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서울특별시 공보실장 구공보계장과 동사무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보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상급 파월장병지원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1966년 4월 19일자 서울특별시 규칙 제550호 서울특별시 파월장병 지원대책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과월장병지원위원회위원선정기준

기 관 측	민 간 인 측
① 서울특별시 제1부시장	① 언론계대표
② " 제2부시장	② 금융계대표
③ " 교 육 감	③ 실업계대표
④ " 지방원호청장	④ 교육계대표
⑤ " 병 무 청 장	⑤ 종교계대표
⑥ 서울중앙방송국장	⑥ 사회단체대표
⑦ 제6관구사령관	⑦ 체육계대표
⑧ 서울특별시 내무국장	⑧ 연예계대표
⑨ " 보건사회국장	⑨ 상공회의소대표
⑩ " 경 찰 국 장	⑩ 재건국민운동본부대표
⑪ 기타특별지방행정관서의장	⑪ 기타유지

별표 2.

구과월장병지원위원회위원선정기준

기 관 측	민 간 인 측
① 구총무과장	① 언론계대표
② 구사회과장	② 금융계대표
③ 경찰서장	③ 실업계대표
④ 기타특별행정관서의장	④ 교육계대표
	⑤ 종교계대표
	⑥ 사회단체대표
	⑦ 상공계대표
	⑧ 기타유지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史 編纂委員會 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5月 19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35號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中 “副市長”을 “第1副市長”으로 同條 第3項中 “高級公務員”을 “所屬公務員”으로 “學識이 있는 者”를 “專門的 知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로 한다

第6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條의 2(專門研究員및 補助員) ①委員會에 專門研究員과 補助員若干人을 들수 있다.

②專門研究員은 市史에 關한 專門的인 學識經驗이 있는者 中에서 市長이 이를 委囑한다.

③補助員은 市公務員中에서 市長이 이를 委囑한다

다만 市公務員으로서 遂行할수 없는 境遇에는 市長은 따로 補助員을 委囑할수 있다

第7條第1項中 “서울特別市公報課長”을 “서울特別市 企劃 行政課長”으로 한다

第8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條(報酬및 手當) ①委員會의 委員에게는 會議席에 對한 所定の 手當을 豫算範圍內에서 支給할 수 있다

② 專門研究員및 補助員의 報酬와 手當에 對하여는 市の 規則으로 定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條例(改正全文)

第1條 (設置) 서울特別市에 서울特別市史 編纂委員會(以下委員會라 한다)

를 둔다

第2條 (管掌事項) 委員會는 서울特別市史 編纂을 爲하여 史料의 蒐集調査와 研究에 關한 事項을 審議한다

第3條 (組織) 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2人和 委員 若干人으로서 組織한다

第4條 (前同) ①委員長은 市長이 된다

②副委員長中 1人은 第1副市長으로 하고 1人은 委員中에서 市長이 이를 委屬한다

③委員은 서울特別市所屬公務員과 市史에 關한 專門的知識과 經驗이 豊富한者 中에서 市長이 이를 委屬한다

第5條 (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會務를 統理한다

②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여 委員長 有故時에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6條 (常任委員) ⑥委員中에서 常任委員1人을 둔다

②常任委員은 市長이 이를 委屬한다

③常任委員은 委員會에서 審議決定된 事項을 處理한다.

第6條의2 (專門研究員및 補助員) ①委員會에 專門研究員과 補助員 若干人을 들수 있다.

② 專門研究員은 市史에 關한 專門的인 學識經驗이 있는者 中에서 市長이 이를 委屬한다

③補助員은 市公務員中에서 市長이 이를 委屬한다 다만 市公務員으로서 遂行할 수 없는 境遇에는 市長은 따로 補助員을 委屬할수 있다

第7條 (幹事 및 書記) ①委員會에 幹事 1人和 書記若干人을 둔다

②幹事는 서울特別市 企劃行政課長으로 하고 書記는 市公務員中에서 市長이 이를 任命한다.

③幹事와 書記는 上司의 命을 받아 庶務에 從事한다

第8條 (報酬 및 手當) ①委員會의 委員에게는 會議出席에 對한 所定의 手當을 豫算範圍內에서 支給할 수 있다

②專門研究員및 補助員의 報酬와 手當에 對하여는 市의 規則으로 定한다

第9條 (顧問) ① 委員會에 顧問을 둘수 있다

② 顧問은 市長이 이를 委屬한다

第10條 (運轉)委員會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市長이 따로 定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의무직 공무원 특수근무수당지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조례 제436호

서울특별시 의무직 공무원 특수근무수당 지급조례

제1조 (지급액) 서울특별시가 설치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에게는 발표와 같이 특수근무수당 (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2조 (지급방법) (1) 수당은 임명일을 기준으로 실제근무일수에 의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2) 시장은 예산형편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일부를 감액 지급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서기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의무직공무원 특수근무수당액

직 급	수 당 액
지 방 부 기 감	월 10,000 원
지 방 의 무 기 정	월 10,000 원
지 방 의 무 기 좌	월 10,000 원
지 방 의 무 기 사	월 5,000 원

國務總理의 承認 및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얻은 서울特別市 中央都賣市場業務規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5月 26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王

◎서울特別市條例 第437號

서울特別市中央都賣市場業務規程中改正條例

第18條의 1 第3項中 (前2項의 保證金은 供託하여야 한다)를 (前2項의 保證金은 供託하여야 하며 有價證券으로 代用 할 수 있다)로 한다

第62條 第1項 第3號와 第4號中 (10원)을 (20원)으로

第5號中 (40원)을 (80원)으로

第6號와 第7號中 (25원)을 (50원)으로

第8號中 (3원)을 (6원)으로

同條 2項中 (物價指數)를 (都賣物價指數)로 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서울特別市營電車運賃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5月 28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王

◎서울特別市條例 第438號

서울特別市營電車運賃條例

第 1 條 서울特別市營電車運賃에 關하여는 이 條例에 依한다

第 2 條 運賃은 別表와 같으며 單區間乘車制로 한다

第 3 條 乘車券의 種類와 發賣 및 使用範圍는 다음과 같다

1. 普通乘車券

一般乘客에 對하여 發賣한다

2. 普通回数乘車券

一般乘客에 對하여 發賣한다

3. 軍警乘車券

正服, 正帽을 着用한 軍人, 警察官, 郵便夫에 對하여 發賣한다 다만 軍屬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一般定期乘車券

一般乘客에 無記名으로 發賣하여 乘車回數에 制限없이 使用할 수 있다

5. 通學定期乘車券

教育法에 依하여 文敎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이 認可한 學校에 通學하는 學生에 限하여 乘車區間을 指定發賣한다

第4條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無賃으로 運送한다

1. 保護者가 同伴하는 6歲未滿의 小兒2人까지
2. 腕章을 附着한 文書連絡兵 및 公用兵

第5條 一般定期乘車券 및 通學定期乘車券의 通用期間은 每月 1일부터 月末까지 1個月間으로 한다

第6條 電車運行途中 天災, 地變 其他 不可抗力의 事故發生으로 繼續運行이 不可能한 境遇에는 既收運賃은 還拂하지 아니한다

第7條 一般定期乘車券 및 通學定期乘車券은 發賣後再發行 또는 運賃을 還拂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境遇에는 手數料 10원을 徵收하고 交換 再發行 또는 運賃을 還拂한다

1. 交換再發行은 使用中 不注意 또는 不可抗力의 事由로 汚損되어 記載事項을 識別하기 困難하게된 境遇에는 使用者의 要求에 依하여 再發行하되 그 乘車券이 有効期間內的 것임이 確認되고 通學乘車券일 境遇에는 券面에 記載된 本人임이 確認된것에 限한다.
2. 運賃의 還拂은 通學定期券에 限하여 使用開始前 學生의 身分을 喪失하거나 또는 徵兵, 死亡, 其他事由로 本券을 使用할수 없게되어 還拂을 要求할 때에 限한다

第8條 一般定期乘車券 및 通學定期乘車券은 乘車할때 또는 檢札할 때는 乘務員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9條 ① 運賃을 改正하거나 또는 乘車券을 變更하였을 때에는 舊乘車券은 使用하지 못하며 舊乘車券 所持者는 運賃改正日 또는 乘車券 變更日로부

더 30日以內에 限하여 運賃의 還拂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定期乘車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前項의 舊券은 還拂期限이 經過할 때에는 無効로 한다.

第10條 乘車券은 다음의 境遇에는 이를 無効로 하여 回收하며 不正한 方法으로 使用할 때는 相當運賃을 追徴하고 既收運賃은 還拂하지 아니한다

1. 使用制限이 있는 乘車券은 그 制限을 違反하여 使用하며 또는 指定 乘降停留場 및 乘車區間外에서 使用할 때
2. 通用期間이 經過한 乘車券을 使用할 때 또는 不正乘車의 手段으로 使用할 때
3. 券面記載事項을 塗抹 改變하였을 때

附 則

① 이 條例는 1966年 6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 이 條例施行日以前에 發行한 乘車券은 1966年 6月 30日까지 使用할 수 있다

別 表

乘 車 券 種 類	乘車回數及 期 限	運 賃	記 事
普 通 乘 車 券	1回	2圓50錢	通行稅包含
普 通 回 數 乘 車 券	15回	34圓00	〃
軍 警 乘 車 券	1回	1圓00	〃
一 般 定 期 乘 車 券	1個月	200圓00	免 稅
通 學 定 期 乘 車 券	1個月	120圓00	〃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서울特別市 運輸事業 特別會計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5月 28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 第439號

서울特別市運輸事業特別會計條例

第一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條例는 서울特別市(以下市라한다) 運輸事業(以下事業이라한다)의 合理的인 經營을 爲하여 그의 豫算과 會計에 關한 基本的事項을 規定함으로서 그 健全한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特別會計의 設置) 이 事業을 運營하기 爲하여 市에 運輸事業 特別會計를 設置하고 그收入으로서 그支出에 充當한다

第3條 (計理原則) 이 事業의 會計處理는 企業會計原則 및 其他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正規의 簿記原則에 따라 計理하여야 한다

第4條 (會計年度) 이 事業의 會計年度는 一般會計年度에 準한다

第5條 (年度所屬의 區分) ①이 事業의 會計는 收入 및 費用의 發生과 資產 資本 및 負債의 増減變動을 現金收支와는 關係없이 그原因이 되는 事實이 發生하는 날을 基準으로 하여 年度 所屬을 區分한다

②前項의 事實이 發生한 날을 定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 原因이 되는 事實을 確認한 날을 基準으로 하여 年度 所屬을 區分한다

第6條 (計理의 區分) ①이 事業은 그 會計를 損益計定, 資產計定, 資本計定, 負債計定 其他 必要한 中間計定을 두어 計理한다

②前項의 計定區分은 規則으로 定한다

第二章 資 金

第7條 (轉入金) 災害의 復舊 其他 特別한 事由로 因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豫算의 定하는 바에 따라 市의 一般會計 또는 其他의 特別會計로 부더의 轉入金 및 國庫補助에 依한 收入으로서 支出에 充當할 수 있다

第8條 (事業債) 이 事業에 必要한 施設을 建設 또는 改良하기 爲하여 必要할 때에는 市議會의 承認을 얻은 金額의 範圍內에서 서울特別市運輸事業債를 發行할 수 있다

第9條 (一時借入金) ①이 事業의 會計運營에 있어서 支拂上의 現金이 不足할 때에는 이 事業特別會計의 負擔으로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②當該年度の 收入으로서 當該年度の 借入金を 償還하지 못하였을 境遇에는 償還할 수 없는 金額을 限度로 하여 이를 償還延長할 수 있다

第10條 (積立基金) 이 事業은 特定한 施設의 建設 또는 改良과 長期負債의 償

還을 目的으로 하는 基金을 積立할 수 있다

第三章 豫 算

第11條 (豫算의 附屬) ① 每會計年度마다 市議會에 豫算을 附屬할 때에는 市長은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付하여야 한다

1. 當該 豫算의 執行計劃書
2. 當該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와 資金計劃書
3. 前前年度의 損益計算書 및 貸借對照表
4. 前年度 및 當該年度의 豫定損益計算書와 豫定貸借對照表
5. 當該年度의 歲入歲出豫算의 事項別 說明書
6. 職種別 定員表와 前年度 對照表
7. 資金豫算書
8. 前年度의 原價計算書 및 當該年度의 豫定原價計算書
9. 其他 財政의 狀況과 豫算의 內容을 明白히 함에 必要한 事項

② 前項 各號의 書式은 따로 規則으로 定한다

第12條 (豫備費)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과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하여 豫備費로서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金額을 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第13條 (豫算의 彈力性) 需要增加로 因하여 이事業에 直接必要한 經費不足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市長은 當該需要量增加로 因하여 豫想되는 收入의 範圍內에서 當該事業에 直接 必要한 經費를 使用할 수 있다

이 境遇에 있어서는 市長은 次期議會에 그 狀況을 報告하여야 한다

第14條 (豫算의 流用) 이 事業運營에 있어서 必要한 境遇에는 規則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歲出豫算의 各目經費를 流用할 수 있다

第15條 (豫算의 移越) ① 豫算으로 定한 事業의 運轉또는 改良을 爲하여 必要한 經費로서 年度間에 支出義務가 確定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境遇에는 市長은 그 金額을 翌年度에 移越하여 使用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每會計年度의 支出豫定金額은 翌年度에 使用할 수 없다 다만 當該 會計年度內에 支出豫算의 支出原因 行爲를 하고 不可避한 事由로 因하여 年度內에 支拂義務가 發生하지 아

니한 것에 대하여는 市長은 그 金額을 翌年度에 移越하여 使用할 수 있다

⑧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豫算을 移越하였을 境遇에는 市長은 移越金 使用에 關한 計劃을 次期議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④繼續費로서 當該 會計年度에 支拂義務가 確定되지 아니한 金額은 最終年度까지 遞次로 移越하여 使用할 수 있다

第四章 出 納

第16條 (出納) ①市長은 觀光運輸局長으로 하여금 運輸事業에 關係되는 歲入歲出의 出納事務를 掌理케 한다

②運輸事業費 特別會計의 收入員과 支出員은 市長이 別途 命한다

③市長은 業務執行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이 事業會計에 關係되는 現金出納事務의 一部를 取扱케 할 수 있다

第17條 (現金의 保管) 이事業會計에 關係되는 現金은 市金庫에 預入 保管하여야 한다

다만 市長이 定한 額을 限度로 現金을 自體保管할 수 있다

第五章 決 算

第18條 (決算) ①市長은 每 會計年度末 現在로 諸帳簿를 磨勘하여 3月以內에 決算書를 作成하여 一切의 證憑書類를 添付 次期 議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決算承認으로서 責任은 解除된다

②前項의 決算書는 豫算決算報告書 및 財務諸表로 하고 그書式은 따로 規則으로 定한다

第19條 (移延整理) 火災로 因한 巨額의 固定財産損失 및 次年度以後에 그 效果가 미치는 經費로서 當該年度가 그 全額을 負擔하는 것이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規則에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移延整理할 수 있다

第20條 (剩餘金) 이 事業에 있어서 年度末에 利益이 發生하는 境遇에는 前會計年度에서 移越한 缺損金을 補填하고 殘額이 있는 때는 그 殘額의 一部 또는 全部를 減價積立金 또는 利益積立金으로서 積立하여야 한다

第21條 (缺損整理) 決算의 結果 생긴 缺損이 利益積立金을 超過하였을 境遇에 그 超過金額을 移越缺損으로 整理하여야 한다

第六章 補 則

第22條 (企業豫算會計法의 準用) 이 條例의 規定을 除外하고는 企業豫算會計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3條 (會計規則) 이 條例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規則으로 定한다

附 則

이 條例는 西紀 1966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서울特別市運輸事業所 設置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5月 28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 第440號

서울特別市運輸事業所設置條例

第1條 (目的) 首都交通體系의 合理的인 整備 및 擴充을 期하기 爲하여 軌道事業 및 自動車運送事業과 이에 附帶되는 事業을 綜合經營하고 이로서 市民의 交通福利를 增進하기 爲하여 서울特別市運輸事業所 (以下事業所라 한다)를 둔다

第2條 (名稱 및 位置) 事業所 및 事業場의 名稱과 位置는 市長이 이를 告示한다

第3條 (公務員) ①事業所에 所長을, 工作廠에 廠長을 두고 所長은 地方行政書記官 또는 地方行政事務官으로 廠長은 地方機枝技佐로 補한다

②所長 및 廠長以外에 必要한 公務員은 따로 定하는바에 依한다

第4條 (施行細則) 이 條例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附 則

이 條例는 西紀 1966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立 運動場使用料 徵收條例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5月 31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 第441號

서울特別市立運動場使用料徵收條例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서울特別市立運動場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

第 1 條 (目的) 이 條例는 서울特別市立運動場 (以下 運動場이라 한다) 使用料徵收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義) 이 條例에서 使用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①施設이라 함은 陸上競技場, 蹴球場, 野球場, 排球場, 庭球場, 水泳場, 卓球練習場, 冬季스케이트場, 室內競技場과 그에 附隨된 必要한 設備 또는 備品을 말한다

②施設의 使用이라 함은 前號의 施設을 使用하거나 放送, 廣告 (TV 包含) 揭示, 展覽, 또는 其他의 行爲를 말한다.

③專用者라 함은 運動場을 專用으로 使用하는 者를 專用料라 함은 專用者가 納付하는 料金を 말한다

④利用者라 함은 個人 또는 團體가 練習을 目的으로 利用하는 者를 利用料라 함은 利用者가 納付하는 料金を 말한다

⑤觀覽者라 함은 觀覽을 目的으로 入場하는 者를, 觀覽料라 함은 觀覽者가 納付하는 料金を 말한다

⑥入場者라 함은 前各號 以外의 目的으로 入場하는 者를 入場料라 함은 入場者가 納付하는 料金を 말한다

⑦使用者라 함은 前各號의 者를 使用料라 함은 使用者가 納付하는 料金を 말한다

⑧有料時라 함은 名目如何를 不問하고 觀覽客으로부터 料金を 徵收하거나 經費의 一部를 負擔시켜 入場시키는 것을 말한다

第 3 條 (使用의 許可와 使用條件) 運動場을 使用하고자하는 者는 市長에게

使用許可 (觀覽料包含)을 받고 市長이 定하는 使用條件을 誠實히 履行하여야 한다

第4條 (不許可)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使用許可를 하지 아니한다

- ①公共의 秩序와 善良한 風俗을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할 때
- ②施設 또는 設備의 管理上 支障이 있다고 認定할 때
- ③其他 市長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

第5條 (使用料) 運動場의 使用料는 別表와 같다

第6條 (專用者) ①運動場을 專用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專用하고자 하는날 (以下 專用이라한다)로부터 15日前에 別紙 第1號書式에 依한 運動場施設使用申請書 2부를 市長에게 提出하여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專用者가 觀覽料를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市長에게 觀覽料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前 各項에 依한 許可는 別紙第2號書式에 依한 運動場施設使用許可書를 交付함으로써 行한다

④專用으로 使用할 때 許可時間을 超過하여 使用하고자 할 때는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7條 (專用料의 納期) ①運動場 施設의 專用許可를 받은者는 專用日 7日前에 使用料를 市長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②第6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期日이 늦어질 때 專用料의 納期以後에 許可를 받은 者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許可받은 날에 納付하여야 한다

③專用日數가 2日以上 繼續할 때는 分納할 수 있다

④許可時間을 超過하여 使用할 때의 使用料는 競技終了後 即日 納付하여야 한다

第8條 (利用者) ①運動場을 專用으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練習을 爲하여 利用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이 指定한 日時에 限하여 許可를 받아 利用할 수 있다

②前項의 利用者는 利用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③利用料의 納付는 練習券을 購入함으로써 行한다

④個人의 利用者가 所定時間을 繼續하여 延長할 때는 所定時間마다 所定金額의 2分之1을 追徵한다 다만 團體練習의 境遇와 코트를 單位로한 利用料의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條 (觀覽者) ①運動場을 專用으로 許可받은者가 觀覽者로 부터 觀覽料를 徵收하는 有料入場의 境遇 觀覽者는 所定の 觀覽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②觀覽料의 納付는 觀覽券을 購入함으로써 行한다

③正服을 한 軍人 警察官 및 學生의 觀覽料는 第5條의 規定에 依한 一般人 觀覽料의 半額以下로 하여야 한다 다만 國際競技와 프로競技 및 體育 以外的 目的으로 使用할 때는 一般人 觀覽料를 超過할 수 없다

④專用者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市長의 許可를 받아 團體入場者에게 3割以內로 割引할 수 있다 團體入場이라 함은 特定團體의 構成員을 對象으로 30人以上의 引率者에 依하여 同時 入場함을 말한다

⑤專用者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市長의 許可를 받아 特別觀覽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10條 (減割制) 觀覽料를 徵收하는 有料入場의 境遇는 觀覽料收入額의 2割의 該當額을 使用料로 한다 다만 觀覽料收入額이 基本額에 未達할 때에는 基本額을 徵收하고 1日 使用料總額이 20萬원을 超過할 때에는 第16表에 依한다

第11條 (入場券) ①專用者 利用者 觀覽者 以外の 者가 入場할 때에는 入場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②入場料의 納付는 入場券을 購入함으로써 行한다 다만 市長이 入場料를 徵收함이 不適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2條 (使用料의 減免) 市長이 公用 또는 公益上 特別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第13條 (審査委員會) 前條의 減免은 서울特別市立運動場使用料 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市長이 決定한다

第14條 (使用料의 返還) 使用者가 市長에게 使用許可를 받은後 使用日 또는

其他 條件에 變動이 있을 때는 다음 1 依한다

① 專用者가 專用料의 納期以前에 使用申請을 取消하는 境遇에는 徵收한 使用料(基本額)의 5割을 返還한다

② 觀覽者 利用者 入場者로 부터 徵收한 料金は 原則적으로 返還하지 아니한다

③ 專用者가 專用料의 納期以後에 使用申請을 取消한 때에는 徵收한 專用料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다만 歸責事由가 專用者에게 있지 아니한 때에는 徵收한 專用料를 返還한다

④ 專用者가 使用日의 變更을 許可 받을 때에는 當初 許可日에 對하여 納付한 使用料(基本料金)의 5割을 追徵한다 다만 天災地變 其他 不可避한 事由로 因하여 運動場의 使用이 不可能하여 變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專用者가 미리 雨天 또는 其他 事由를 豫想하여 專用日 以外에 그에 붙여서 1日에 限하여 豫備日로 許可를 받을 때에는 使用하지 아니할 때에 限하여 所定 使用料의 5割을 徵收한다 다만 英忠體育館의 境遇는 例外로 한다

⑥ 第15條의 規定에 依하여 그 使用이 受消 또는 停止되었을 때에는 그 使用料를 返還하지 아니한다

第15條 (許可의 取消 및 停止) 市長은 다음 各號의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使用許可를 取消하거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① 使用許可의 目的을 違反하였을 때

② 이 條例 또는 이 條例에 따른 規則이나 使用條件을 違反하거나 市長의 指示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③ 公共의 秩序와 善良한 風俗을 害할 憂慮가 發生할 때

④ 施設 또는 設備의 管理上 支障이 있다고 認定될 때

⑤ 競技秩序가 甚히 소란할 때

⑥ 其他 市長이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第16條 (免責) 市長은 前條 各號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者가 使用의 許可를

取消 당하였거나 停止處分을 받았을 때는 賠償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17條 (使用者의 損害賠償責任) ①使用者는 施設等を 使用함에 있어 善良한 管理者로서의 注意를 가지고 使用하여야 한다

②使用者는 施設 等を 破損하거나 滅失하였을 때에는 그로 因하여 發生한 損害에 對하여 市長이 定하는 額을 賠償하여야 한다

③專用으로 使用할 때는 누구의 行爲임을 不拘하고 使用許可를 받은 者가 賠償하여야 한다

④賠償金은 賣票額 其他 寄託된 有價證券이나 物件으로 가름하여 賠償할 수 있다.

第18條 (入場의 制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市長은 使用者에 入場을 거절하거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①他人이 感染할만한 缺陷이 있거나 傳染病疾患이 있는者

②滿醉者

③他人에게 危險을 주거나 또는 防害가 될 物品을 携帯한者

④市長이 使用者의 安全上 必要하거나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者

第19條 (使用者의 設備) ①使用者가 使用期間中에 特別한 設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市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市長은 管理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使用者 負擔으로 必要한 設備을 시킬 수 있다

③前項에 依하여 設備하였을 때에는 그 使用期間 滿了와 同時에 使用者負擔으로 이를 撤去하고 原狀復舊하여야 한다

④使用者가 前項의 規定에 依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代執行하고 그 費用을 使用者로 부터 徵收한다

第20條 (讓渡 및 傳貸의 禁止) 이 條例에 依하여 專用으로 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市長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그 權利를 讓渡하거나 傳貸할 수 없다

第21條 (賣票) 觀覽券 練習券 入場券은 運動場에서 賣票한다

다만 觀覽券에 限하여 使用許可를 받은者가 市長의 許可를 받은 豫賣分에 限한 賣票은 例外로 한다

第22條 (委任事項) 使用料에 包含하는 施設 設備 用具 搬品의 種類 및 그의 定量과 超過하여 使用할 때 그 超過分에 對하여 追加로 徵收하는 料率에 關한 事項은 市長에게 委任한다

第23條 (施行規則) 이 條例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附 則

1. (施行日) 이 條例는 1965年 6月 1일부터 施行한다
2. (超過措置) 既に 運動場 使用許可를 받고 使用料를 納付한 것의 對하여는 이 條例에 依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前同) 野球場의 使用料는 運動場에 라이타設備가 完了한 後까지 陸上競技場의 使用料를 徵收한다

서울特別市立運動場 및 體育館 使用料表

第1. 陸上競技場(蹴球場包含)

(1) 陸上競技場을 專用으로 使用할 때는 다음과 같다

區 分	無 時(基本額)		有 料 時 間	備 考
	土日・公休日	平 日		
1. 體育競技	7,800원	6,000원	觀覽料收入額의 2割	專用日로부터
2. 體育以外の目的	52,000	40,000	2割 該當額	7日 以 上

(2) 陸上競技場을 專用으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練習을 爲하여 利用코자 할 때는 다음과 같다

區 分	時 間	料 金
1. 個人이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때	1人 2時間當	20원
2. 團體가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때	2 時 間 當	600

(3) 使用時間을 晝間 08:00부터 18:00

夜間 18:00부터 24:00로 한다

(4) 專用으로 使用할 때 晝間使用을 繼續하여 延長할 때는 1時間當 所定金額의 10分之1을 追徵한다

第2. 野球場

(1) 野球場을 專用으로 使用할 때는 다음과 같다

第 三 表	區 分	無 料 時 (基本額)				有 料 時	納 期
		土・日・公休日		平 日			
		晝 間	夜 間	晝 間	夜 間		
1. 體育競技	7,800원	11,700원	6,000원	9,000원	觀覽料收入 額의 2割 該當額	專用日 로부터 7日以前	
2. 體育以外的 의 目的	52,000	78,000	40,000	60,000			

(2) 野球場을 專用으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練習을 爲하여 利用코져 할 때는 다음과 같다

第 四 表	區 分	時 間	料 金
	1. 個人이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 때	1人 2時間當	20원
	2. 團體가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 때	2時間當	600

(3) 使用時間은 晝間 08:00부터 16:30

夜間 18:30부터 24:00로 한다

(4) 專用으로 使用할 때 晝間使用을 繼續하여 延長할 때에는 時間當 夜間 所定金額의 10分之1을 追徴한다

但 使用者 一覽表에 夜間使用 豫約者가 晝間料金の 10分之 1을 追徴한다

(5) 夜間使用時間에는 練習을 爲한 利用許可를 하지 아니한다

第3. 庭球場 및 排球場

(1) 庭球場 및 排球場을 專用으로 使用할 때는 다음과 같다

第 五 表	區 分	場 所	無 料 時 (基本額)		有 料 時	納 期
			土・日・公休日			
			平	日		
	1. 庭球競技 및 排球	庭球場 排球場	1,950원 1,560	1,500원 1,200	觀覽料	專用日

2.	前項以外の 體育競技	庭球場 排球場	3,250 2,600	2,500 2,000	收入額 의 2割	로부터 7 日 以前
3.	前各項以外 의 目的	庭球場 排球場	19,500 13,000	15,000 10,000	該當額	

(2) 庭球場 및 排球場을 專用으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練習을 爲하여 利用코저 할 때는 다음과 같다

第 六 表	區 分	時 間	料 金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 때	2時間 1코트當	200원

(3) 使用時間은 晝間 08:00부터 18:00 夜間 18:00부터 24:00로 한다

(4) 專用으로 使用할 때 晝間使用을 繼續하여 延長할 때에는 1時間當 所定金額의 10分之 1을 追徵한다

第4. 水泳場

(1) 水泳場을 專用으로 使用할 때는 다음과 같다

第 七 表	區 分	無 料 時 (茶 本 額)					
		土・日・公休日			平 日		
					有料時 時間		
		대인풀	다이빙풀	아동풀	대인풀	다이빙풀	아동풀
	1. 水泳場으로 使用할 때	원	원	원	원	원	원
	2. 水泳場以外의 體育競技	7,150	4,550	2,600	5,500	3,500	2,000
	3. 體育以外의 目的	4,810	2,930	1,600	3,700	2,300	1,300
		31,200	20,800	11,700	24,000	13,000	9,000

(2) 水泳場을 專用으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練習을 爲하여 利用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다

第 八 表	區 分	時 間	料 金
	1. 一般인풀 (다이빙풀 대인풀)	1人 2時間當	20원
	2. 兒童풀	〃	10

(3) 使用時間은 08:00부터 13:00까지를 午前으로 14:00부터 19:00까

지를 午後로 한다

- (4) 專用으로 使用할 때 午前 使用을 繼續하여 延長할 때는 1時間當 所定金額의 10分之 1을 追徴한다

第5. 卓球練習場

- (1) 卓球練習場을 利用코저 할 때는 다음과 같다

第九表	區	分	時 間	料 金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 때		1臺當 1時間	30원

- (2) 1時間未滿인 것은 1時間으로 한다

第6. 冬季스케이트場

- (1) 冬季스케이트場을 專用으로 使用할 때는 다음과 같다

第十表	區 分	無 料 時 (若 本 額)		有 料 時	納 期
		土・日・公休日	平 日		
	冬季各種競技	13,000원	10,000원	觀覽料收入額의 2割該當額	專用日로부터 7日以前

- (2) 冬季스케이트場을 專用으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練習을 爲하여 利用코저 할 때는 다음과 같다

第十一表	區	分	時 間	料 金
	1. 一般人的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 때		1人 2時間當	20원
	2. 兒童이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 때		〃	15

第7. 英忠體育館

- (1) 英忠體育館을 專用으로 使用할 때는 다음과 같다

第十二表	區 分	無 料 時 (若 本 額)				有料時	納 期
		土・日・公休日		平 日			
		晝 間	夜 晝	晝 間	夜 間		
	1.體 育 競 技	10,000원	15,600원	8,000원	12,000원	觀覽料收入額의 2割該當額	專用日로부터 7日以前
	2.體育以外の目的	52,000	78,000	40,000	60,000		

- (2) 獎忠體育館을 專用으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練習을 爲하여 利用코저 할 때는 다음과 같다

第十三表

區 分	時 間	料 金
1. 個人練習을 爲하여 利用할 때	1人 2時間當	200원
2. 團體가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 때	2時間當	800

- (3) 使用時間은 晝間 08:00부터 17:00 夜間 19:00부터 24:00로 한다

- (4) 專用으로 할 때 晝間使用을 繼續하여 延長할 때는 1時間當 夜間 所定金額의 10分之 1을 追徵한다

第8. 商行爲上の 使用料

- (1) 競技 또는 集會를 中繼放送의 한 專用者는 그로부터 徵收한 金額의 2割을 使用料로 納付하여야 한다

그 金額이 다음 基本額에 未達하거나 徵收한 金額이 없을 때는 基本額을 徵收한다

다만 아마추어 國內競技의 境遇에 放送中繼料를 받지 아니할 때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 (2) 各競技場에서 商行爲를 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다

種 別	區 分	期 間	基 本 額	備 考
T V 中 繼 放 送	푸 로 레 스 링	國際競技 國內 〃	1 회 30,000원 7,500	
	푸 로 권 투	國際 〃 國內 〃	〃 20,000 5,000	
	籠 球	國際 〃 國內 〃	〃 12,000 3,000	
	野 球	國際 〃 國內 〃	〃 12,000 3,000	
	蹴 球	國際 〃 國內 〃	〃 12,000 3,000	
	排 球	國際 〃 國內 〃	〃 6,000 1,500	

아마추어 권투	國際 國內	〃	8,000 2,000	
其 他 競 技	國際 國內	〃	2,000 500	
中 繼 放 送	TV中繼料의 半額으로 한다			
宣傳·廣告·揭示·展覽 物件貸與·其他行爲	1 年	契約者の 年間計劃書에 依한 總收入金의 2割		

第9. 入場料

運動場의 入場料는 다음과 같다

入 場 料	1 人 1 回	5 원
-------	---------	-----

第10. 賦割制使用料 減額表

- (1) 賦割制使用料가 20萬원을 超過할 때는 다음 減額率에 依하여 割引한다

$$\text{減額率} = \frac{\text{使用料} - 200,000\text{원}}{1,000} \times \frac{1}{1,000}$$

$$\text{減 額} = \text{使用料} \times \text{減額率}$$

例示

使 用 料	割引率	減 額	納 付 額
200,000원			200,000원
300,000	10%	30,000원	270,000
400,000	20%	80,000	320,000
500,000	30%	150,000	350,000

- (2) 賦割制使用料가 50萬원을 超過할 때에는 3割을 割引한다

第一號樣式

市立運動場施設使用申請書

1. 使用코자 하는 施設

運動場名	目 的	使用期間	使用時間	備 考

2. 使用코자 하는 附帶 設備

設 備 名	個數	設 備 名	個數	設 備 名	個數	設 備 名	個數
中繼放送		冷 房					
TV中繼		照 明					
暖 房		擴 聲 機					

3. 觀覽料

區 分	金 額	區 分	金 額	豫 賣 處	備 考
特別觀覽券		軍・警學生券			
一般觀覽券		團體券 一般 軍警學生			

市立運動場使用料 徵收條例를 嚴守하겠아오니 위와같이 使用許可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西紀 1966.

申請者住所

團 體 名

代 表 者

電話 _____

서울特別市長 貴下

第2號樣式

市立運動場施設使用許可書

1. 申請者住所

國 體 名

代 表 者

2. 使用許可의 施設

運 動 場 名	目 的	使 用 期 間	使 用 時 間	備 考

3. 使用코자 하는 附帶 設備

設 備 名	數 量	設 備 名	數 量	設 備 名	數 量	設 備 名	數 量
中繼放送		擴 聲 機		冷 房			
TV中繼		暖 房		照 明			

4. 觀覽料

區 分	金 額	區 分	金 額	豫 賣 處	備 考
特別觀覽券		軍警·學生券			
一般觀覽券		團體券—般 軍警學生			

5. 使用料

區 分	金 額	算 出 基 礎	備 考
施設使用料			
附帶設備使用料			
商行等使用料			
計			

6. 條件

--

위와 같이 許可함

西紀 1966.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규 칙

서울특별시 물가조정위원회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 김 한 욱

◎서울특별시 규칙 제533호

서울특별시 물가조정위원회 규칙

제 1 조 (목적) 물가조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가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사항중에서 시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을 관장한다

1. 물가조정 및 생활필수품 품질향상
2. 소비자 보호
3.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제 3 조 (조직)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또는 물가조정과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 4 조 (위원장직무) 1)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간사와서기) 1)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둔다

2) 간사는 상무과장이 서기는 상무과의 소비자 보호계장과 물가조정계장이 된다

3)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에 종사한다

제 6 조 (소집)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32) 규 칙

3) 의장은 표결권을 갖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7 조 (실비지급)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보고) 위원장은 사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답변케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과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 9 조 (시행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서울특별시 규칙 제554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0 조 (관광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0 조 (관광과) 1) 관광과에 관광사업계와 관광선전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관광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사업계

- 가.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 나. 관광자원의 조사 통계 개발
- 다. 관광협회운영의 지도감독
- 라. 관광시설의 설치 경비 운영
- 마. 시영관광시설의 유지관리
- 바. 관광업체 종업원 교양지도
- 사. 과내사무 및 국내타과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

2. 관광선전계

가. 관광에 관한 선전 및 광고

나. 관광이념의 보급 계몽

다. 관광객의 유치 관광여객여행 안내

제22조 (차량과) 제2항 제1호 “차량등록제”분장사무중 “자·차량조립승인”
를 삭제한다

제33조 (상무과)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33조 (상무과) 1) 상무과에 상정제 소비자보호제 물가조정제와 제량제물
두고 상정제장 소비자보호제장과 물가조정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제
량제장은 기계기과 또는 지방기계기과로 보한다

2) 상무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정제

가. 국 소관행정의 종합조정

나. 상공회의소 상품거래소 기타 상업단체의 지도감독

다. 석유류의 수급조절

라. 상도의 양양

마. 파내 서무 및 국내 타과 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소비자보호제

가. 소비자보호에 관한사항

나. 생활필수품 품질조사

다. 불량생활필수품 개선권유 및 시정조치

라. 소비자의 단결 계몽에 관한사항

마. 소비절약지도에 관한사항

바. 소비조합 지도육성에 관한사항

3. 물가조정제

가. 물가조사에 관한사항

나. 물가조정에 관한사항

다. 서울특별시 물가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라. 물질유통 질서에 관한사항

마. 경찰제 실시 및 시범점포지도육성

바. 상업광고 및 선전물 통제

자. 시장에 관한사항

4. 계량제

가. 계량의 연구 및 조사

나. 계량기 검사 및 검정

다. 메—타법실시에 관한사항

라. 계량기 사업관리

제37조 (관리과) 제2항 “공지관리계” 분장사무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개지에 관한사항

부 칙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시미화협의회 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규칙제555호

서울특별시 도시미화협의회 규칙

제1조 (설치) 시민의 경서생활과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둔다

제2조 (직무) 협의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공무원의 관리 및 경비 가로수식재 녹지대정비외기본방침과 종합계획 수립
2. 도시미화를 위한 기본문제 및 자료제공
3. 서울특별시장의 제시하는 문제의 조사 및 조언

제3조 (건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한다

제4조 (조직) 1)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8인이내로 조직한다

2.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국장이 된다
3. 위원은 공원분야에 관계하는 공무원과 학식 경력이 풍부한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장직위) 1) 위원장은 회의를 통리한다

-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위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1) 협의회에 간사1인을 둔다

- 2) 간사는 녹지와공원계장이 된다
-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소집등)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소의결한다
- 3)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경권을 가진다

제8조 (일비) 위원이 직무수행상 협의회에 출석하였을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수있다 다만 시소속공무원인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행세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 交通安全委員會 規則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5月 14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 規則 第556號

서울特別市交通安全委員會規則

第1條 (設置) 交通安全委員會 規程第10條 (1965. 11. 10. 大統領令 2280號)에 依하여 서울特別市長의 諮問에 應하여 交通安全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爲하여 서울特別市 交通安全委員會 (以下委員會라한다)를 둔다

第2條 (職務) 委員會는 다음의 事項을 管掌한다

1. 交通事故의 原因調査 및 그 防止策 研究에 關한 事項
2. 交通安全施設의 研究改善에 關한 事項
3. 交通安全啓蒙에 關한 事項
4. 市長이 要求하는 交通安全에 必要한 事項

第3條 (構成) 委員會는 委員長1人 副委員長2人과 委員30人 以內로 構成한다

第4條 (委員長等の 職務) ①委員長은 警察局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交通課長과 運輸課長이 된다

②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公務를 統理한다

③委員長은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때에는 委員長이 指定하는 副委員長이 그 직무를 代行한다

第5條 (委員의 委囑) 委員은 交通安全에 關聯되는 職務에 從事하는 公務員 또는 交通行政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者中에서 市長이 委囑한다

第6條 (責任委員制) ①委員會의 管掌事項을 分擔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責任 委員을 둔다

②책임위원의 組織과 分장사항은 委員長이 定한다

第7條 (召集) 委員長은 每3月마다 定例會議을 召集한다 다만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에는 隨時 臨時會議을 召集할수 있다

第8條 (議事) ①會議는 在籍委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9條 (幹事 및 書記) ①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幹事와 書記를 둔다

②幹事와 書記는 市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命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委員長의 命을받아 委員會의 庶務에 從事한다

第10條 (日當等) 會議에 出席한 委員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에 對하여는 豫算의 範圍內에서 日當과 旅費를 支給할수 있다

第11條 (報告等) 委員이 分掌處理한 事項으로서 委員長이 特別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案은 委員會에 報告하거나 上程하게 할 수 있다

第12條 (業務處理) 委員은 分掌處理한 事項에 對하여는 그 結果를 次期 會議 開催 前日까지 委員長에게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13條 (施行細則) 이 規則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定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會則) 서기 1965년 1월 1일부터 施行한 交通委員會 會則은 이를 廢止한다

서울특별시 구 과제별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 규칙 제557호

서울특별시 구 과제별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구과제별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산업과) 제 3항 제 3호 “농경제” 분장사무중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양정 수산과 축산

제 4 조 (부과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부과과) 1) 종로구 중구와 영등포구의 부과과에 직세계 유종음식 세계 부가세계와 지적계를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와 용산구의 부과과에 직세계 간세계와 지적계를 둔다 다만 유종음식세계와 부과세계는 간세계에 가
들한다

2) 지적계장은 지적기사로 그외의 계장은 지방사세주사로 보한다

3) 부과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3.8) 규 칙

1. 직세제

- 가.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농지세 및 목적세의 부과
- 나. 시세부과의 개정 및 취소
- 다. 가옥대장의 정비보존
- 라. 파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

2. 유흥음식세제

- 가. 유흥음식세 도축세 마권세 및 면허세의 부과
- 나. 시세 부과외 개정 및 취소

3. 부가세제

- 가. 소득세부가세 법인세 부가세 영업세부가세의 부과
- 나. 시세 국세의 세원조사
- 다. 국세부가세 감루 세원의 색출
- 라. 국세기판에 대한 자료조사

4. 지적제

- 가. 임야 토지대장의 정비보존
- 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정비보존
- 다. 토지 및 임야의 분할 합병
- 라. 토지과세 기준조사
- 마. 지적관계 제증명 발급

부 칙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공포한다

서기 196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 규칙 제558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획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제획과) 1) 제획과에 운영계 종합계획계 지역계획계와 가로계획계를 두고 운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계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지역계획계장과 가로계획계장은 토목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2) 제획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계

- 가. 도시계획 기본자료수집 통계 분석
- 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다. 도시계획관계법규정비 및 계몽선전
- 라. 도시계획행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확인 협조 및 선전과 단원처리
- 마. 파배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

2. 종합계획계

- 가. 도시계획구역내 교통 위생 보안 산업 후생 및 문화에 관한 중요 시설의 종합계획 및 우선순위결정
- 나. 도시계획 기본조사 측량
- 다. 도시계획도 수도권도 기타 도면작성 보안
- 라. 시가지 개발계획
- 마. 국토건설종합법에 의한 제업무의 조정협조

3. 지역계획계

- 가. 지역 지구의 지경 및 결정
- 나. 도시계획법 제13조 (토지등의 보전)에 규정된 업무의 조정 (제획가사무)
- 다. 공원 녹지 및 유원지의 계획
- 라. 도시 미화 종합조정
- 마. 풍치지구내 행위허가 및 개간허가 업무조정

4. 가로계획계

가. 도시계획 가로 광장 기타 교통계획

나. 고속교통계획

다. 도로인정

라. 사도 측조 및 폐도에 관한사항

마. 건축선 지정에 관한 협조

바. 경계명시 측량

제35조의 1(특지파) 제1항중 “공원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토목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를 “공원제장은 지방임업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전차궤도사업 인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서울특별시 규칙 제559호

서울전차 궤도 사업 인수 위원회 규칙

제1조 (목적)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서울 전차 궤도사업을 국무총리 훈령 제32호 (서기 1966년 5월 18일자)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인수함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심의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 전차 궤도 사업 인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제1부시장이 된다

(3) 부위원장은 교통부 육운국장 및 서울특별시 관광운수국장이 된다

(4) 위원은 상공부 전기국장 국무총리 시정 담당 비서관 한전 업무 담당 상무이사 서울특별시 건설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3인이내로 한다

(5)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서울특별시내 전차제도 사업 (이하 사업이라한다) 인수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업의 인수절차
2. 사업의 인수 방법 및 범위
3. 기타 사업인수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5조 (회의 및 결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때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2)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인다

(4)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조회 또는 의견의 요구) (1)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기관 및 한국전력 주식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특히 한국전력 노조측 대표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간사 3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 및 서기는 전차제도 사업 인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명한다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에 종사한다

제8조 (보수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일당 및 여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 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가 전차제도 사업을 인수한 날로 부터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서울特別市職制中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5月 25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 第560號

서울特別市職制中改正規則

서울特別市職制中 다음과같이 改正한다

第三條를 다음과같이 新設한다

第三條 (企劃管理官) ①企劃管理官일에 企劃官 法務官과 統計官을 두고 企劃管理官은 行政理事官 또는 行政副理事官으로 企劃官과 法務官은 行政書記官 또는 行政事務官으로 統計官은 統計書記官 또는 統計事務官으로 補한다

②企劃官일에 企劃調整擔當官과 審査分析擔當官을 두고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補하며 分掌事務는 다음各號와 같다

1. 企劃調整擔當官

가. 市政의 基本運營計劃樹立 및 綜合調整

나. 各種 重要計劃樹立에 關한 調整 統制

다. 企劃樹立 및 市政綜合施策에 必要한 各種 資料의 蒐集과 刊行

라. 豫算編成方針과 事業優先順位決定

마. 地方長官會議參席에 隨伴하는 資料蒐集 및 主管

바. 狀況室管理

2. 審査分析擔當官

가. 市政施策과 企劃施行의 審査分析 및 評價

나. 審査分析에 關한 各種資料의 蒐集

⑤ 法務官 밑에 法制擔當官과 訟務擔當官을 두고 地方行政事務官 또는 法務官補로 補하여 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法制擔當官

가. 條例 規則 訓令 告示 및 各種成案文書의 審査

나. 法令公布通知 및 法令例規集의 編纂刊行

다. 市政諮問委員會運營

2. 訟務擔當官

가. 爭訟事件의 審査處理

나. 法律顧問 및 訴訟代理人配定

다. 爭訟事件進行

⑥ 統計官 밑에 統計基準擔當官, 統計調査擔當官을 두고 統計事務官 또는 地方財經事務官으로 補하며 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統計基準擔當官

가. 統計行政에 關한 綜合計劃의 樹立

나. 統計基準設定

다. 統計分析 및 統計作成統制

라. 業務統計資料蒐集作成

마. 報告例의 調整 및 統制

바. 統計刊行物의 發刊 保管

2. 統計調査擔當官

가. 各種調査統計의 計劃 및 調整

나. 各種調査統計의 集計와 編纂

다. 統計의 公表

라. 調査員의 敎育訓練

마. 調査統計研究

바. 委任統計調査

第五條 (內務局) 第一項中「企劃行政課」를 「行政課」로 「企劃行政課長」을 「行政課長」으로 한다

第六條 (總務課) 第一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六條 (總務課) ①總務課에 庶務係 儀典係 管理係와 文書係를 두고 課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

同第二項 第5號「統計係」分掌事務를 削除한다

第六條의 一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六條의 一 (行政課) ①行政課에 行政係 能率係와 市政研究係를 두고 係長은 行政事務官 또는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

②行政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行政係

- 가. 區行政施策樹立運營 및 行政指導
- 나. 區 洞關係陳情處理
- 다. 區의 豫算配賦
- 라. 行政區域의 名稱 位置 區域變更
- 마. 統班組織 및 運營
- 바. 區行政關係會議
- 사. 市議會에 關한 事項
- 아. 選舉 및 國民投票에 關한 事項
- 자. 寄附金品蒐集統制 및 各種雜賦金統制
- 차. 兵事事務協助
- 카. 紹介營業 및 行政書士營業申告
- 타.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能率係

- 가. 本廳 및 區 洞事業所의 事務改善指導
- 나. 區洞行政能率向上
- 다. 對民行政改善 및 研究 評價

3. 市政研究係

- 가. 市政調査 및 市政研究會運營
- 나. 首都行政制度改善研究 및 資料蒐集
- 다. 行政標準化 및 提案制度運營
- 라. 市史編纂委員會運營
- 마. 市政資料室運營

第九條의 一 (監査課) 第一項中 「審査分析係」를 削除한다 同條第二項 第四號 「審査分析係」分掌事務를 削除한다

第十條中 「稅務課」를 「稅政課」로 「稅務課長」을 「稅政課長」으로 한다

第十二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十二條 (稅政課) ① 稅政課에 稅政係 直稅係 間稅係 徵收係와 地籍係를 두 고 稅政係長은 地方財經事務官 또는 地方行政事務官으로 直稅係長 間稅係長 徵收係長은 地方財經事務官으로 地籍係長은 地籍技佐로 補한다

② 稅政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稅政係

- 가. 稅政運營에 關한 企劃審査 및 指導監督
- 나. 市稅에 關한 條例 規則 其他 例規의 整飭
- 다. 市稅歲入豫算과 財政費의 調整配分
- 라. 地方稅法運營에 關한 照覆 및 再審査請求와 民願處理에 對한 審査
- 마. 市稅增收推進委員會의 運營
- 바. 稅務從事公務員 諸證票發給에 關한 事項
- 사.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直稅係

- 가. 取得稅 自動車稅 財産稅 農地稅와 目的稅賦課事務의 指導
- 나. 各號 稅目에 對한 賦課額統計 및 報告와 市稅賦課額의 集計
- 다. 各號 稅目에 對한 稅源調査와 査察
- 라. 取得稅 財産稅의 課稅基準의 策定 承認과 農地稅所得標準率 決定
- 마. 各號 稅目에 對한 質疑 照覆과 再審査請求 訴願 請願等 民願의 處理
- 바. 爭訟事務處理

사. 가號 稅目에 對한 事故와 犯則者處理

아. 家屋臺帳整備保存指導監督

3. 間稅係

가. 遊興飲食稅 屠畜稅 馬券稅 免許稅와 國稅附加稅 賦課事務의 指導

나. 가號 稅目에 對한 賦課額 統計 및 報告

다. 가號 稅目에 對한 稅源調査와 査察

라. 遊興飲食稅의 種別指定 確認 및 均衡調整

마. 가號 稅目에 對한 質疑照覆과 再審査請求 請願等 民願의 處理

바. 가號 稅目에 對한 爭訟事務處理

사. 가號 稅目에 對한 事故와 犯則者處理

4. 徵收係

가. 市稅徵收 事務의 計劃과 指導監督

나. 市稅의 收入 및 稅外收入의 統計 및 報告

다. 納稅宣傳 및 納稅施設에 關한 事項

라. 納稅擔保에 關한 事項

마. 納稅組合 및 特別徵收團體의 指導

바. 徵收猶豫申請의 處理와 納期延長의 承認

사. 市稅滯納處分에 對한 再審査請求와 民願處理

아. 過誤納金의 充當 還付 및 交付金事務의 處理와 指導

자. 滯納處分 및 押留物件 換價事務의 指導

차. 徵收金亡失事故의 處理와 缺損處分の 指導監督

카. 道路受益者負擔金 道路 및 河川敷地使用料徵收에 關한 指導監督

타. 道路復舊費 建設關係 雜收入에 關한 事項

파. 納稅에 關한 諸證明事務의 指導

하. 徵稅表彰에 關한 事項

5. 地籍係

가. 地籍公簿의 整理保存에 關한 指導監督

나. 測量檢査(30筆以上の 廣大地圖根測量 三角測量 確定測量)

다. 地積算定檢査와 測量原因檢査 및 査閱

라. 地籍에 關한 境界鑑定人 選定

마. 土地課稅基準調査에 對한 指導

바. 地籍圖의 作成補充

사. 地籍關係 諸證明發給에 關한 指導

第十九條 (觀光運輸局) 第一項을 다음 같이 한다

第十九條 (觀光運輸局) 觀光運輸局에 觀光課 運輸行政課 運輸事業課와 車輛課를 둔다

②局長은 行政理事官 또는 行政副理事官으로 觀光課長 運輸行政課長과 車輛課長은 行政書記官으로 運輸事業課長은 行政書記官 또는 地方行政書記官으로 補한다

③局長 밑에 運輸調整官을 두고 行政書記官 또는 地方行政書記官으로 補하며 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가. 市營運輸事業과 民營運輸事業의 綜合調整

나. 市營 버스運輸事業 및 電車軌道事業의 綜合計劃樹立 審査分析 調整과 事業經營의 改善

다. 所管企業會計制度 및 事業關係 法規整備

第二十一條 (運輸行政課) 中 「運輸課」를 「運輸行政課」로 한다

第二十一條의 一 (運輸事業課) 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二十一條의 一 (運輸事業課) ①運輸事業課에 管理係 事業係 財務係와 經理係를 두고 管理係長과 事業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財務係長과 經理係長은 地方財經事務官으로 補한다

2) 運輸事業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管理係

가. 所管事業所의 指導監督

나. 所管事業所 從業員의 福利와 勞務管理

다.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事業係

- 가. 市營메스 및 電車運轉計劃의 策定 및 變更
- 나. 市營메스 및 電車運轉系統의 新設改廢
- 다. 市營메스 運輸事業 및 電車軌道事業의 業務監督
- 라. 事故處理 (訴訟 및 和解)
- 마. 事業用 車輛의 整備管理

3. 財務係

- 가. 運輸事業費 特別會計 歲入
- 나. 運輸事業費 特別會計 豫算編成 配定 및 決算
- 다. 所管事業의 原價計算
- 라. 運輸事業費 特別會計의 起債와 償還
- 마. 事業用 固定資産의 取得 管理處分
- 바. 事業用 資材의 出納保管 및 需給計劃
- 사. 軌道 및 電氣施設의 建設 改善과 維持 管理
- 아. 事業用 資産臺帳 整備 및 倉庫運營

4. 經理係

- 가. 運輸事業費 特別會計 歲出
- 나. 事業用 資材의 購買用役 運搬 및 賃貸借契約의 發議
- 다. 事業用 物品 調達
- 라. 有價證券의 出納保管
- 마. 運輸事業費 特別會計의 會計審査
- 바. 金庫에 關한 事項

第二十四條 (社會課) 第二項 第二號 「勞動係」分掌事務中 다음과 같이 加한다

- 가. 市長相對의 勞使協議에 關한 綜合調整統制

附 則

이 規則은 西紀 1966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소 직제를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 규칙 제561호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소 직제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소 (이하 사업소라한다)의 조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장) 1) 사업소에 소장을 공작창에 창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행정저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창장은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

2) 소장파 창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3 조 (공무원의 정원) 1) 사업소에 소장 공작창에 창장이외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 4 조 (전차운수사업소) 1) 전차운수사업소에 사무과와 업무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 5 조 (사무과) 1) 사무과에 서무계와 경리계를 두고 서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경리계장은 지방재정주사로 보한다

2) 사무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계

가. 문서 관인 기밀

나. 교육 및 훈련

다. 청중단속 및 당직

라. 인사 복무 급여 후생

마. 도시 비품정리

바. 제 통제

사.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아. 타과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

2. 경리계

가.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 나. 계약 및 지출
- 다. 물품출납 보관
- 라. 물품검수 및 공사검사 입회
- 마. 저장품의 소요판단 및 부대비의 통제

제 6 조 (업무과) 1) 업무과에 관리계와 영업계를 두고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영업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재경주사로 보한다
2) 업무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계

- 가. 승무원의 교육 훈련
- 나. 전차사고처리 및 유류품처리
- 다. 전차내 청소
- 라. 노무관리
- 하. 파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영업계

- 가. 전차운행
- 나. 전차종업원의 지도감독
- 다. 안전관리
- 라. 승차권의 판매 및 위탁
- 마. 선전 및 광고

제 7 조 (자동차운수사업소) 1) 자동차운수사업소에 사무계와 업무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재경주사로 보한다

2) 자동차운수사업소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계

- 가. 문서 판인 기밀
- 나. 청중단속 및 당직
- 다. 인사 복무 급여 후생
- 라.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 마. 물품관리

- 바. 도서 및 비품관리
- 사. 계통계
- 아.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 자. 계약 및 지출
- 차. 물품점수 및 검사 임회
- 카. 주유소관리
- 타.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

3. 업무제

- 가. 운행계획 및 배차
- 나. 승무원지도감독 및 교육훈련
- 다. 교통사고처리
- 라. 승차권판매 위탁
- 마. 노무관리
- 바. 기재관리
- 사. 차량 소수리

제 8 조 (운수사업공작창) 1) 운수사업공작창에 서무제 공작제1계와 공작제2계를 두고 서무제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재정주사로 공작제1계장과 공작제2계장은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

2) 운수사업공작창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제

- 가. 문서 관인 기밀
- 나. 청중단속 및 당직
- 다. 인사 복무 급여 후생
- 라.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 마. 도서 비품관리
- 바. 계통계
- 사.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 아. 계약 및 지출

자. 물품검수 및 검사임회

차. 물품관리

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

2. 공작제1계

가. 전차의 장치점검 수리 및 보수

나. 전차고 및 부대시설의 관리

다. 전차제도의 부설개량 및 보수와 포장토목공사

라. 전차제도용 직통전선로와 부대설비의 건설 및 보수

3. 공작제2계

가. 자동차의 장치점검 수리 및 보수

나. 자동차고 및 부대시설의 관리

다. 자동차기구의 관리

- 제 9 조 (직무대행)** 1) 전차운수사업소장 유고시는 지방행정사무관인 서무과장이 자동차운수사업소장 및 운수사업공작창장 유고시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재경주사인 서무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행할 자가 유고시는 시장이 지정 하는 과장 또는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훈령 제214호

과	국	장
구	청	장
보	건	소
수	도	사
업	소	장

서울특별시 구 종합행정 강화의 전을 이에 제정한다

서기 1966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서울특별시 구 종합행정 강화의 전

제 1 조 (목적) 이령은 구의 종합행정시책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건행정에 대한조정) 구청장은 다음의 보건소 업무를 조정 통제한다

1. 관내 보건행정의 종합계획
2. 민원사무의 처리사항
3. 전염병 예방과진료
4. 방역대책 수립
5. 결핵환자 나환자 마약환자 취급에 관한사항
6. 무허가업소 부정식품 의약품의 단속
7. 공터방지에 관한사항
8. 공중변소 소독

제 3 조 (수도행정에 대한 조정) 구청장은 다음의 수도사업소업무를 조정 통제한다

다만 관할지역내의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은 동구수도사업소는 동대문구청장이 서부수도사업소는 서대문구청장이 조정 통제한다

1. 관내 수도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2. 민원사무의 처리사항
3. 시민에 대한 주지안내에 관한사항
4. 관급대용선 부설공사
5. 부정수도공사 단속
6. 공설 공용수전관리
7. 급수인구 현황통계
8. 급수사용료 징수에 관한사항

제4조 (조정통제의 범위) 구청장은 전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 지시하고 업무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시행세칙) 이령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령은 서기 196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사 령

◎서기 1966년 5월 1일

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세무과 지방사세주사 이 종 호

종로구 근무를 명함

충남 김 정 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중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사세주사 이 회 규

행정주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행정주사 이 회 규

농림부 전출을 명함

	농림부	안	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사세주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정	한 호
부산시 전출을 명함			
	수원시	이	병 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조전부 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부산시	김	두 훈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김	기 용
지방보건지원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위생시험소 근무를 명함			
		심	상 을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조	봉 수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56) 사 령

조건부 지방보건의원보에 임함	이	중	희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김	소	자
	환	별	연
조건부 지방보건의원보에 임함	권	녕	우
위생시험소 근무를 명함	심	언	호
행정주사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중부병원 지방간호기원 최		병	주
1966년 5월 1일부터 1966년 6월 11일까지 내무국 인사과			
파견근무를 명함	김	용	태
	김	상	욱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내무국 감사과 근무를 명함			
양평군보건소	엄	원	호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의무기과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파장에 보함			
종로구 행정주사보 이	이	대	권
철도청 전출을 명함			
성동구 지방토목기과 서		상	규

성동구 건설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주사보 이 대 권

행정주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근속가봉원 80원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고양군 신 회 성

서울특별시 건임을 명함

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도시계획국서무과 지방행정사무관 엄 창 섭

도시계획국 서무과결 내부국 총무과(제1부시장실) 근무를 명함

단 겸무처 근무를 명함

김 진 기

조진부 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중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윤 수 경

조진부 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배 동 수

조진부 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김 일 중

조진부 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경 온 모

조진부 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종로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최 덕 하

조건부 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편 재 홍

조건부 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이 재 용
김 정 남
채 규 연
홍 익 수

조건부 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건설국토목과 근무를 명함

김 중 택

조건부 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도시계획국주택과 근무를 명함

이 중 목

조건부 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제관사업소점 건설국토목과 근무를 명함

단 겸무처 근무를 명함

김 성 기

조건부 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남부건설사업소점 건설국토목과 근무를 명함

단 겸무처 근무를 명함

최 익 성
김 주 환

조건부 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건설국토목과 근무를 명함

	김	형	무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내무국에 산과 행정주사 이	규	숙	
영등포구보건의소 근무를 명함(지방)			
보건사회국보건과결중구보건의소 보건기사 오	윤	세	
보건사회국보건과결종로구보건의소 보건기사 김	동	군	
본직을 면하고 겸직에 전임함(지방)			
마포구보건의소겸보건사회국보건과 지방보건기사 박	상	현	
겸직을 면함			
농정과결서대문구 지방농업기사 윤	탁	환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내무국기획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유	영	석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내무국간사와 지방행정주사보 박	진	우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내무국감사와 지방행정주사보 최	규	필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관광운수국관광과 지방행정주사보 서	영	원	
용산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관광운수국차량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주	열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건설국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유	병	진	
중구 근무를 명함			
수도국업무과 지방행정주사보 박	시	하	
수도국급수과 근무를 명함			
청소국청소제1과 지방행정주사보 조	문	석	

(60) 사 령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청소제2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동 성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주사보 남 진 명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강 찬 도

성북구 근무를 명함

미아리보조수원지 지방행정주사보 한 상 래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의약과 지방행정주사보 황 용 학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중구보건소검보진과 지방보건기사보 라 경 욱

정직을 면함

보건사회국보진과 지방보건기사보 이 러 중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건축기사보 이 현 삼

성동구 근무를 명함

건축과 지방건축기사보 이 계 환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총무과 지방행정서기 정 영 숙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재무국회제과 지방행정서기 최 춘 길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세무과 지방행정서기 최 윤 호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건축과 지방행정서기 강 신 성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차량과 지방행정서기 김 제 윤

용산구 근무를 명함(지방)

의약과 지방행정서기 이 태 원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의약과 지방행정서기 박 송 진	
마포병원 근무를 명함	
상무과 지방행정서기 강 예 숙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상무과 지방행정서기 조 경 태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복지과 지방행정서기 정 학 진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관리과 지방행정서기 변 경 수	
포장과 지방행정서기 이 양 원	
성북구 근무를 명함	
경리과 지방행정서기 이 서 용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수원과 지방행정서기 김 분 기	
미아리보즈수원지 근무를 명함	
급수과 지방행정서기 전 종 훈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시설과 지방행정서기 권 영 윤	
용산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예산과 지방행정서기 김 순 자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주택과 지방행정서기 오 나 식	
서부병원 근무를 명함	
영선과 지방행정서기 권 광 순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62) 사 명

마포구 근무를 명함(지방)	세무과 사세서기 권	용	성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주제과 지방재정서기 이	문	가
양정과 근무를 명함	회계과 지방재정서기 김	석	희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건축과 지방건축지원 고	창	철
성북구 근무를 명함	건축과 지방건축지원 이	문	희
성동구 근무를 명함	건축과 지방건축지원 성	하	철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건축과 지방건축지원 양	해	준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총무과 지방행정서기보 이	봉	희
종로구 근무를 명함	관제과 지방행정서기보 김	정	자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기획과 지방행정서기보 권	병	일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차량과 지방행정서기보 강	병	섭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사회과 지방행정서기보 권	옥	승
성북구 근무를 명함	농경과 지방행정서기보 이	제	주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관리과 지방행정서기보 김	상	배

	공업과 지방행정서기보	박	애	자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업무과 지방행정서기보	송	진	숙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업무과 지방행정서기보	김	세	연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무과 지방행정서기보	전	경	호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건축과 조진부지방건축위원보	황	병	혁
마포구 근무를 명함				
	건축과 조진부지방건축위원보	최	광	수
중구 근무를 명함				
	건축과 조진부지방건축위원보	오	딘	환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건축과 조진부지방건축위원보	설	영	석
성동구 근무를 명함				
	건축과 지방건축위원보	송	경	현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건축과 지방건축위원보	박	한	영
성북구 근무를 명함				
	포장과 지방토목위원보	엄	새	용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하수과 지방토목위원보	김	학	수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하수과 지방토목위원보	최	진	인
용산구 근무를 명함				
	수원과 지방토목위원보	조	광	치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6 4) 사 령

성동구 근무를 명함	농정과 지방축산기원보	정	갑	성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장	기	홍
마포구 근무를 명함	주택과 지방토목기원	정	재	석
	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김	치	민
종로구 근무를 명함	왕십리편포장 지방토목기원	라	병	주
	구의수원지사사무소 지방토목기원	이	태	식
성북구 근무를 명함	청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노량진수원지사사무소 지방토목기원	이	용	분
용산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부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김	시	진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정	태	운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대현산배수지사사무소 지방토목기원보	정	규	부
	왕십리편포장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	유	상	규
	수도관리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	정	찬	도
성동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남	궁	혁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지방)	양정과 재경서기	홍	봉	학
	포장과 지방토목기원	한	걸	숙

남부건설사업소 지방토목지원 유 경 안
토목과근무를 명함

중구 산림보호서기 성 기 수
중앙공무원교육원전출을 명함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 임 노 길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 김 근 배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 김 호 섭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 한 옥 분

농촌지도사에 임함

농촌지도소 근무를 명함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보 오 태 영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보 김 승 환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보 박 우 식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보 오 락 세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보 이 기 덕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보 채 강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보 하 인 환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보 이 경 란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보 함 옥 자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보 김 선 옥

농촌지도사보에 임함

농촌지도소 근무를 명함

공보실 행정주사 허 돈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공보실 근무를 명함

내무국총무과 행정주사 정 호 진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내무국총무과 근무를 명함

(6 6) 사 령

	내무국인사과 행정주사 조 남 호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내무국인사과 군무를 명함	기획행정과 행정주사 한	백
	기획행정과 행정주사 신 상	육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내무국기획행정과 군무를 명함	기획행정과 행정주사보 조 귀 환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내무국기획행정과 군무를 명함	내무국감사과 행정주사 백 일	여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내무국감사과 군무를 명함	내무국감사과 행정서기 김 효 창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내무국감사과 군무를 명함	재무국관제과 행정주사 김 두 기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재무국관제과 군무를 명함	주택과 행정주사 유 학 준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주택과 군무를 명함	운수과 행정주사 주 용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운수과 군무를 명함	운수과 행정주사보 김 배 상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운수과 군무를 명함	차량과 행정주사 박 자 경	
	차량과 행정주사 박 동 창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차량과 근무를 명함	차량과 행정주사보 이	별	대
	차량과 행정주사보 이	주	익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차량과 근무를 명함	차량과 행정서기 손	동	수
	차량과 행정서기 최	남	근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차량과 근무를 명함	차량과 행정서기 천	일	호
	차량과 행정서기 태	경	발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차량과 근무를 명함	사회과 행정주사 성	학	용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사회과 근무를 명함	보건과 행정주사 정	동	원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보건과 근무를 명함	의약과 행정주사 최	형	열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의약과 근무를 명함	산업국상무과 행정주사 신	무	균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산업국상무과 근무를 명함	산업국공업과 행정주사 이	영	환
	산업국공업과 행정주사 김	낙	선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산업국공업과 근무를 명함

산업국공업과 행정주사보 임 한 빈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산업국공업과 근무를 명함

산업국공업과 행정서기 이 용 우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산업국공업과 근무를 명함

산업국공업과 행정서기보 김 익 환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산업국공업과 근무를 명함

건설국관리과 행정주사 배 준 기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건설국관리과 근무를 명함

수도국업무과 행정주사 장 세 환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수도국업무과 근무를 명함

종로구 행정주사보 주 제 선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행정주사 최 수 복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중구 행정주사 권 동 수

중구 행정주사 최 흥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중구 행정주사보 강 낙 준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행정주사 이	성	구	
	동대문구 행정주사보 황	경	환	
	동대문구 행정주사보 김	종	현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행정주사 주	두	기	
	성동구 행정주사 허		환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행정주사보 김	현	철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행정주사 문	재	철	
	성북구 행정주사 이	판	순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행정주사 고	기	호	
	서대문구 행정주사 김	경	철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행정주사보 이	주	연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행정주사 박	병	덕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70) 사 령

	마포구 행정주사보	강	석	진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행정주사	김	익	봉
	용산구 행정주사	이	제	정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행정주사보	최	용	만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행정주사	김	익	상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행정주사보	박	경	만
	영등포구 행정주사보	김	환	국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내무국예산과 재정주사	이	석	중
지방재정주사에 임함				
내무국예산과 근무를 명함				
	내무국예산과 재정서기	최	영	태
지방재정서기에 임함				
내무국예산과 근무를 명함				
	재무국회계과 재정주사	하	삼	근
	재무국회계과 재정주사	이	병	희
지방재정주사에 임함				
재무국회계과 근무를 명함				
	재무국회계과 재정서기	윤	정	중

지방재정서기에 임함

재무국회계과 근무를 명함

재무국세무과 재경주사 강 동 석

지방재경주사에 임함

재무국세무과 근무를 명함

재무국세무과 사세주사 김 재 영

지방사세주사에 임함

재무국세무과 근무를 명함

재무국세무과 사세주사 이 재 명

지방사세주사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중구 사세주사보 홍 부 한

지방사세주사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사세주사 강 수 원

동대문구 사세주사 이 재 홍

지방사세주사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사세주사보 안 도 영

지방사세주사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사세주사 엄 기 홍

지방사세주사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사세주사 김 영 주

지방사세주사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사세주사보 안 현 용

(72) 사 령

지방사세주사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 명함

성북구 사세주사 한 제 택

지방사세주사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사세주사 황 천 신

지방사세주사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사세주사 노 세 회

지방사세주사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계획과 토목기사 김 필 교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계획과 근무를 명함

건설국토목과 토목기사 윤 남 하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건설국토목과 근무를 명함

건설국하수과 토목기사 심 형 윤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건설국하수과 근무를 명함

건설국하수과 토목기원 윤 용 무

지방토목기원에 임함

건설국하수과 근무를 명함

수도국급수과 토목기사 장 시 목

수도국급수과 토목기사 이 하 신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수도국급수과 근무를 명함

수도국시설과 토목기사 문 강 호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수도국시설과 근무를 명함					
	종로구 토목기사	변	원	성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토목기사보	조	병	현	
지방토목기사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토목기사	노	홍	진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토목기사	이	국	호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토목기사보	김	성	규	
지방토목기사보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토목기사	신	영	우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건축과 제3계장직무대리 건축기사	이	조	엽	
지방건축기사에 임함					
건축과 제3계장직무대리 근무를 명함					
	건축과 건축기사	한	병	수	
지방건축기사에 임함					
건축과 근무를 명함					
	종로구 건축기사보	정	성	교	

지방건축기사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건축기사보 황 춘 의

지방건축기사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구 건축기사 이 승 호

지방건축기사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농업토목기사보 김 성 제

지방농업토목기사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농업토목기사 김 진 문

서대문구 농업토목기사 심 규 택

지방농업토목기사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산업국농경과 농업기원 박 찬 갑

지방농업기원에 임함

산업국농경과 근무를 명함

산업국공업과 전기기사 김 상 윤

지방기계기사에 임함

산업국공업과 근무를 명함

건설국영선과 전기기사 조 용 회

지방기계기사에 임함

건설국영선과 근무를 명함

산업국농경과 축산기사 구 인 서

지방축산기사에 임함

산업국농경과 근무를 명함

중구사회과 행정주사보 황 규 원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행정서기 손 철 원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운수와 근무를 명함

행정서기 이 수 근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차량과 근무를 명함

건축기사 김 한 탈

지방건축기사에 임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유 지 관

서울특별시건설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성동구 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계획과 조건부지방토목기원보 이 종 철

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도시계획국 계획과 근무를 명함

정리과 지방재경서기관 경 의 진

과장에 보함

2호봉을 급함

수도국정리과 근무를 명함

특지과 지방임업기과 박 한 병

사방조림계장에 보함

3호봉을 급함

산업국특지과 근무를 명함

(7 6) 사 령

수원과 지방토목기정	박	원	항
파장에 보합			
3호봉을 급합			
수도국수원과 근무를 명함			
영선과 지방기계기과	이	홍	남
설비제장에 보합			
3호봉을 급합			
건설국영선과 근무를 명함			
토목과 지방기계기과	김	인	주
가로제장에 보합			
2호봉을 급합			
건설국토목과 근무를 명함			
토목기과계획과 지방토목기과	김	경	길
계획제장에 보합			
2호봉을 급합			
계획과 근무를 명함			
포장과 지방토목기과	정	필	현
시설제장에 보합			
1호봉 근가400을 급합			
건설국포장과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토목기과	주	재	유
건설과장에 보합			
2호봉을 급합			
종로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토목기과	김	교	준
건설과장에 보합			
3호봉을 급합			
중구 근무를 명함			

건설과장에 보함	동대문구	지방토목기과	김	진	우
2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토목기과	이	해	원
건설과장에 보함					
1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토목기과	오	의	환
건설과장에 보함					
4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토목기과	최	영	수
건설과장에 보함					
2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토목기과	이	인	용
건설과장에 보함					
3호봉을 급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토목과	지방토목기과	공	하	영
토목계장에 보함					
2호봉을 급함					
건설국토목국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토목기과	차	준	문
건설과장에 보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보건과 지방의무기정 구 도 서			
과장에 보함			
3호봉을 급함			
보건과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5월 4일			
종로구보건소 지방의무기과	엄	원	호
종로구 보건소방역과장 공석기간중 겸무를 명함			
◎서기 1966년 5월 5일			
도시계획국구획정리과 지방조무수	정	남	해
(자동차운전)			
내무국총무과 근무를 명함			
내무국총무과 지방조무수(자동차운전)	안	현	순
도시계획국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5월 6일			
공보실 지방행정사무관	이	창	수
부산시 전출을 명함			
◎서기 1966년 5월 10일			
청소국청소1과 기계기사보	정	희	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내무국총무과 필생	윤	교	영
내무국총무과 공관타자원	박	춘	자
내무국총무과 통역사	정	경	식
월수당 8,000원을 급함			
내무국총무과 임시교환원	안	순	자
내무국총무과 임시교환원	김	상	일
내무국총무과 임시운전원	장	명	복
내무국총무과 임시운전원	최	종	석
내무국총무과 임시운전원	허	영	식

월수당 5,400원을 급함	내무국총무과	임시윤전원	방	응	보
	내무국총무과	등사원	배	기	병
	내무국총무과	등사원	김	용	기
일당 150원을 급함	내무국총무과	등사원	김	말	숙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최	재	운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김	옥	자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김	지	관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허	영	심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경	원	영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유	인	배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안	금	녀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홍	숙	경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김	수	옥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신	화	섭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엄	인	신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김	비	내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최	미	자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박	인	영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홍	경	희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양	영	희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신	미	란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윤	선	섭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우	덕	순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유	분	선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오	정	숙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박	사	현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윤	장	섭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정	영	숙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양	영	숙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허	영	희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장	미	자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김	옥	련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최	숙	희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박	정	옥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조	예	옥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이	형	생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우	해	경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정	인	복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경	해	관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조	현	숙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정	명	순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김	양	규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이	영	분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이	영	수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강	영	순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김	경	옥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지	영	자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김	순	섭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김	은	경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이	위	경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정	성	철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윤	복	임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이	상	윤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김	순	자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김	차	곤
	내무국총무과 문서전달원	신	근	교
월수당 3,000원을 급함				
	내무국기획행정과 속기사	최	병	철
월수당 8,000원을 급함				
◎서기 1966년 5월 11일				
	인사과 지방행정서기	김	기	섭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5월 15일				
		이	선	훈
서울특별시전일을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				
		노	금	자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				
		양	기	종
서울특별시 전일을 명함				
조건부농업기원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	박	덕	기
지방사세서기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	임	승	직
지방사세서기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사세서기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서기 이 한 생
지방사세서기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노 상 호
지방사세서기에 임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 유 석 에
지방사세서기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김 태 진
지방사세서기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서기 은 철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목 인 상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조 용 도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고 광 욱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정 진 태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신 강 한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서 경 용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안 봉 토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최 호 경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규 영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임 영 화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유 영 욱

지방사서서기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박 상 기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윤 석 후

지방사서서기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서기보 박 중 욱
중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성 수

지방사서서기보에 임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장 용 원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무 용

(8 4) 사 령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강	미	자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백	명	현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정	한	철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길	표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윤	영	수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석	규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박	규	철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박	준	상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의	중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일	섭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상	구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권 태 국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윤 태 준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주 연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은 천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경 필 현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강 사 익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심 영 준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맥 흥 기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남 체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서 상 수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임 병 군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병	울
성동구 근무를 명함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우	성	준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종	기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정	영	수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창	환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규	열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지적기원보 박	성	규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지적기원보 김	의	구
성북구 근무를 명함			
		오	철 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도시계획국계획과 근무를 명함			
	관재과점서대문구 지방지적기사 신	순	희
지적기사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지적기사보 유	재	성
지적기사보에 임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지적기사보	김	복	수
지적기사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지적기사보	양	용	희
지적기사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지적기사보	안	희	정
지적기사보에 임함				
재무국세무과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지적기사	경	영	호
지적기사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지적기사보	우	이	홍
지적기사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지적기사보	설	희	열
지적기사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지적기사보	박	상	진
지적기사보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지적기사보	최	한	식
지적기사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지적기사보	이	석	윤
지적기사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적기원에 임함	세무과 지방지적기원	김	원	태
성동구 근무를 명함				
지적기원에 임함	세무과 지방지적기원	송	명	근
세무과 근무를 명함				
지적기원에 임함	중구 지방지적기원	김	진	원
중구 근무를 명함				
지적기원에 임함	동대문구 지방지적기원	박	홍	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적기원에 임함	성동구 지방지적기원	조	준	해
성동구 근무를 명함				
지적기원에 임함	성북구 지방지적기원	임	봉	수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지적기원	홍	원	현
지적기원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지적기원	마	홍	범
지적기원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지적기원	안	홍	기
지적기원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지적기원	이	택	희
지적기원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지적기원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지적기원	김	풍	현
지적기원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지적기원	이	제	진
지적기원에 임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지적기원	김	동	찬
지적기원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지적기원	박	수	남
지적기원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지적기원	홍	기	태
지적기원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지적기원	김	원	복
지적기원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지적기원보	백	홍	수
지적기원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조건부지방지적기원보	성	광	수
조건부지적기원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선동구 지방지적기원보	김	연	재
지적기원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지적기원보	성	수	일
성동구 조건부지방지적기원보	김	성	자	
성동구 조건부지방지적기원보	장	풍	석	

(90) 사 령

조건부지적기원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지적기원보 김 훈 주

지적기원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조건부지방지적기원보 김 회 영

성북구 조건부지방지적기원보 조 경 은

성북구 조부전지방지적기원보 김 복 권

조건부지적기원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지적기원보 석 창 덕

서대문구 지방지적기원보 안 승 민

지적기원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조건부지방지적기원보 장 형 섭

조건부지적기원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지적기원보 장 등 익

마포구 지방지적기원보 조 규 은

지적기원보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지적기원보 성 태 용

지적기원보에 임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지적기원보 장 재 상

영등포구 지방지적기원보 장 관 권

영등포구 지방지적기원보 조 흥 래

지적기원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조건부지방지적기원보	송	오	복
영등포구	조건부지방지적기원보	이	경	부
영등포구	조건부지방지적기원보	박	지	준

조건부지적기원보에 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최	경	규
지방간호기원보	여	지	승

7호봉을 급함

보육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김	진	란
---------	---	---	---

7호봉을 급함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신	희	자
---------	---	---	---

7호봉을 급함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박	우	순
---------	---	---	---

7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김	계	찬
지방간호기원보	고	송	자
지방간호기원보	이	동	분

7호봉을 급함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한	경	순
---------	---	---	---

7호봉을 급함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이		구
---------	---	--	---

7호봉을 금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5월 16일

공업과장	행정서기관	한	연	국
운수과장	행정서기관	박	종	문
청소제1과장	행정서기관	장	희	중
주택과장	행정서기관	강	정	희
교육원사무과장	행정서기관	송	재	호
교육원교학과장	행정서기관	오	정	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1항5호 직위해제

◎서기 1966년 5월 31일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서기관 임 법 식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의1항 3호 직위해제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서기관 이 일 수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서기관 홍 윤 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의 1항1호 직위해제

관리과장 행정서기관 이 달 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1항 5호 직위해제

◎서기 1966년 5월 16일

공보실장 행정서기관 안 진

공업과 과장에 포함

인사과장 행정서기관 박 유 서

양정과 과장에 포함

직위해제 행정서기관 심 윤

교육원사무과 과장에 포함

직위해제 행정서기관 안 기 배

교육원교수부 교수요원 (지방행정서기관전출)

세무과장 재정서기관 박 임 용

농정과 과장직무대리를 명함

교육원 지방행정서기관 김 성 권

주택과 과장직무대리를 명함

중구 행정사무관 윤 락 환

인사과 과장직무대리를 명함

기획행정과 행정사무관 손 영 한

기획행정과 과장직무대리를 명함

종로구수도사업소소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찬 회

운수와 과장직무대리를 명함

세무과부과제장 지방제정사무관 안 덕 기

세무과 과장직무대리를 명함

감사과제1제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길 원

관리과 과장직무대리를 명함

인사과보임제장 지방행정사무관 연 기 호

총무과장에 보함

중구 근무를 명함

기획행정과기획조정제장 행정사무관 김 상 진

행정제장에 보함

행정과 근무를 명함

인사과조직관리제장 지방행정사무관 국 응 호

보임제장에 보함

인사과 근무를 명함

기획행정과법제제장 지방행정사무관 배 문 환

기획조정제장에 보함

기획행정과 근무를 명함

성북구총무과장 행정사무관 김 백 수

지방행정서기관에 보함

교육원교수부 근무를 명함

기획행정과장 행정서기관 김 영 제	
구청장에 보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양정과장 행정서기관 홍 석 철	
구청장에 보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기획행정과 지방행정서기 고 주 백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5월 17일	
	고 주 백
비서 (4급갑류상당)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내무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	
	박 종 찬
비서 (4급갑류상당)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내무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5월 20일	
산업국상무과 기제기사 신 학 주	
계량제장 직무대리에 임함	
산업국상무과 근무를 명함	
내무국감사과 지방행정주사 박 순 철	
법제제장 직무대리에 보함	
내무국 기획행정과 근무를 명함	
성북구호적병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회 수	
물가조경제장에 보함	
산업국상무과 근무를 명함	
산업국상무과 조전부지방행정사무관 손 종 석	

소비자보호계장에 포함

산업국상무과 근무를 명함

관광운수국관광과사업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한 철

호적병무과장에 포함

성복구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5월 20일

재판사업소검토목과 조건부지방토목기원보 이 중 목

남부건설사업소검토목과 조건부지방토목기원보 김 성 기

본인출두치않음으로인하여 1966년5월1일자 신규임명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함

감사과 지방재정주사 이 병 기

내무국감사과검 내무국총무과 검무를 명함

단 검무처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5월 21일

내무국인사과 외무축탁 박 춘 욱

월 18,000원을 급함

내무국인사과 축기사 원 광 연

월 8,000원을 급함

내무국인사과 사환 손 최 순

내무국인사과 사환 이 경 욱

월 3,000원을 급함

◎서기 1966년 5월 23일

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중 현

재무국 관제과 근무를 명함

주택과 지방행정주사보 박 응 립

도시계획국 주택과검 구로동주택관리사무소검무를 명함

단 검무처 근무를 명함

세무과 지방사세주사 김 병 성

원예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5월 31일

중구 지방행정주사보	이	명	제
중구 지방행정서기보	전	민	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 그직위를 해제함			
내무국총무과 지방조무수(자동차운전)	강	신	익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2 제1항제3호 규정에의하여 직위해제를 명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지원	박	재	덕
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2호의 규정에의하여 견책에치함			
독도출장소 지방행정사무관	최	창	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3호의 규정에의하여 1월간정직에 처함			
재무국 지방재정사무관	조	영	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의 규정에의하여 2월간 감봉에치함			
서부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이	형	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3호의 규정에의하여 견책에치함			
갱생원 지방수위	이	춘	홍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격책에 처함			
동부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구	원	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의 규정에의하여 견책에치함			
관광과 지방건축기사보	이	현	우
용산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최	석	채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김	기	중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최	중	집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정	병	철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유	근	성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김	철	영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지원	박	재	덕
중구 지방행정서기	추	갑	술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이	영	휴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최	진	환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이	희	기
영등포구 지방농업기사보 김	동	창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그직위를 해제함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사무관 김	재	원
재무국 지방재정사무관 조	영	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그직위를 해제함		
◎서기 1966년 5월 1일		
	閔	文 鎭
조건부 지방기계기원보에 임함		
청소과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沈	相	乙
호적병무과 근무를 명함		
	강	동 희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월곡동 근무를 명함		
	박	재 길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삼선제1동 근무를 명함		
	이	덕 구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성북제2동 근무를 명함		
	김	수 길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정화동 근무를 명함		
	송	태 인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송천동 근무를 명함		

(9 8) 자 령

◎서기 1966년 5월 5일

조건부 지방건축기원보에 임함

송인출장소 근무를 명함

李 義 永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삼선제2동 근무를 명함

金 應 淳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남암동 근무를 명함

金 成 重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정능제1동 근무를 명함

朴 元 義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길음동 근무를 명함

文 洪 植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인수동 근무를 명함

金 吉 泰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송천동 근무를 명함

文 敏 子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살양1동 근무를 명함

丘 鳳 完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郭 正 仁

월곡동 근무를 명함

郭 漢 奎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장석동 근무를 명함

金 鳳 添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화계동 근무를 명함

高 在 晉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인수동 근무를 명함

南 一 雄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정능제3동 근무를 명함

沈 勳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정능제1동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5월 17일

성북구정화동 지방행정서기 姜 海 根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월간 근신에 처함

성북구징수과 지방재정서기 金 玉 實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에 처함

성북구동소문동 지방행정서기 金 潤 煥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월간 감봉에 처함

◎서기 1966년 5월 18일

정능제1동 지방조무보조수 장 침 순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5월 30일

청소과 조건부지방기계기원보 민 문 호

서기 1966년 5월 1일자 발령(신규임용)을 동일자로 취소함

◎서기 1966년 5월 20일

부과과 지방사세주사(부과제1제장) 고 재 양
직세제장에 포함

부과과 지방사세주사(부과제2제장) 전 주 호
간세제장에 포함

◎서기 1966년 5월 30일

지방사세주사 洪 性 完
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호및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1월간 근신에처함

성북구종암동 지방행정서기보 申 成 燮
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월간 감봉에처함

◎서기 1966년 4월 30일

공덕4동 지방행정서기보 權 寧 祐
의원면직

◎서기 1966년 5월 1일

김 상 수
조전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관란동 근무를 명함
李 潤 鎔

조전부 지방건축지원보에 임함
건설과 근무를 명함

禹 鍾 樂
조전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아현제3동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5월 4일

총무과지방행정서기 李 信 煥
원예외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5월 5일

조전부지방행정서기보

宋 權 雙

호적병무과 근무를 명함

유 영 록

조전부지방행정서기보

공덕동제1동 근무를 명함

마포구대흥동 조전부지방조무보조수 高 榮 柱

의원면직

◎서기 1966년 5월 15일

정수과 지방사세서기 박 덕 기

종로구 근무를 명함

정수과 지방사세서기보 金 南 濟

공덕2동 근무를 명함

정수과 지방사세서기보 徐 相 榮

아현3동 근무를 명함

이 딘 식

조전부지방행정서기보

공덕제2동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5월 9일

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이 태 석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968호

사방사업법 제 20조의 지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시설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1.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시설면적	해제면적	잔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주 소	성명
서대문 구 제	홍제	312-16 대		1.0216	1.0216	1.0216	0	서대문구홍제동317	김명복
		312-72		0.2208	0.2208	0.2208	0	〃	〃
		2필지		1.2424	1.2424	1.2424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63년도에 영구적인 산림조성이 아닌 일시적인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방시설을 한 지대로서 주위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등의 입지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산림이외의 타용도로의 전환이 타당하므로 계속 사방시설지로 존치할 가치가 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969호

사 작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 지정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1.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잔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주 소	성명
서대문	남가좌	23-3	임야	0.4800	0.4800	0.4800	서대문구남가좌동177	김인선

2. 해제사유

본 임지는 1958년도에 사방 서종하고 1963년도에 보수시공한 시공지로서 정사완란하여 정상적인 시업을 하더라도 토사유출의 피해가 없는 지대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 도시발전상 산림이외의 타용도로의 이용도가 큼으로

해제합

◎서울특별시고시제970호

축산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6년도 경기 종축
검사를 다음과같이 실시한다

서기 1966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실시범위 서울특별시전역
2. 실시기간 1966년 6월 3일~1966년 6월 22일
3. 검사대상 유우 육우 한우 돈 산양 마 면양
4. 검사장소 종축검사 신청서에 의한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장소
5. 검사방법 종축검사를 받고저하는 가축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종축
검사원이 순회하며 검사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971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 지정지를 해제고시한
다

서기 1965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임 야 소 재 지			지 목	지 적	기 정 래 제			잔면적	소 유 자		
구	동	지번			면 적	면 적	면 적		주 소	성 명	
성북	경능	87-28 29	임야	0.5214	0.5214	0.5214	0		중구회현동 1가195	김치운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1년도에 사방 지정지로 지정되어 1959—1960년도에 사방시설을
한 사방 시공지로서 신청지 대부분이 일반지대로서 도시계획상 임간택지로
이용함이 풍치 유지에도 효과가 클것임으로 산림 이외의 타용도로의 사용

이 부득이하여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972호

서울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한다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계획과 및 영등포구청에 비치하여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서기 1966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사업의 집행지

계 획	사 업 명	위 치	면 적
기정	일단의 공업단지조성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138.04평
변경	〃	〃	138.02평

가로변경 및 구역은 별첨 도면 및 조서와 같음(생략)

2.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

가. 착수일 1966년 5월 1일

나. 준공예정일 1966년 12월 31일

3. 사업 집행자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70의5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이 병 호

◎서울특별시고시제973호

서기 196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제2회) 및 각특별회계(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서기 1996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회 계 별	추가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금회추정액
일 반 회 계	7,241,097,400	5,573,949,200	1,667,148,200
시 민 회 관 비 특 별 회 계	30,086,400	28,837,600	1,248,800
공 익 전 당 포 비 특 별 회 계	6,913,900	6,170,100	743,800
주 택 비 특 별 회 계	358,237,400	358,237,400	
토 지 구 획 정 리 비 특 별 회 계	896,256,200	682,226,500	214,029,700
택 지 조 성 비 특 별 회 계	340,394,400	325,847,900	14,546,500
건 설 자 재 생 산 비 특 별 회 계	137,876,300	122,113,600	15,762,700
시 범 농 촌 개 발 조 성 사 업 비 특 별 회 계	120,000	120,200	100
개 해 구 호 사 업 비 특 별 회 계	6,566,300	4,598,800	1,967,500
하 수 처 리 장 특 별 회 계	155,000,000	100,000,000	55,000,000
사 환 곡 관 리 특 별 회 계	239,800	239,800	
수 도 비 특 별 회 계	2,511,017,140	2,420,919,630	90,097,510
합 계	11,683,805,540	9,623,260,730	2,060,544,810

◎서울특별시고시제974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같이 부과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사시공로선 : 성북구 {길음동간도로신설공사
부암동}
2. 공사의 종류 : 도로신설공사
3. 착공년월일 : 1966년 4월 13일
4. 준공년월일 : 1966년 12월 31일(예정)
5. 총공사비 : 14,480,650원
6. 부담금총액 : 2,172,097.5원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구청장이 시정하는 수해구역 일원

8. 기 타 사 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975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같이 부과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1. 공사시공로선 : 城東區 金湖洞(金湖洞)삼가복개공사
2. 공사의 종류 : 金湖川 복개공사
3. 착공년월일 : 1966년 3월 18일
4. 준공년월일 : 1966년 8월 15일
5. 총공사비 : 6,929,422원
6. 부담금총액 : 1,039,413.33원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8. 기 타 사 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976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 지정지를 해제 고시한다

서기 196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1.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면적	잔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구	동	지번						주 소	성명	
성북	월계	81-3	임야	정	정	정	0	성북구월계동	박인덕	일부시공지입
〃	〃	88	〃	〃	〃	〃	0	〃	〃	사방공지임
〃	〃	89-1	〃	〃	〃	〃	0	〃	〃	〃
계		3필					0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66년도 사방 지정지로서 지피가 안정된 사방 시공지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타 산업에 피해가 없으므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977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시설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면적	잔적	토지소유자		비고
구	동	지번						주 소	성명	
서대문	성산	24	임야	2.1500	2.1500	1.3600	0.7900	정북구안암 동1가94	이혁기	
								서대문구향 천동61	김명환	

2. 해제사유

본 임지는 1950년도 사방 시설지로서 경사 완만하여 지피가 안정된 지대로 정상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여타산업의 피해가 없으며 토지이용 및 공익상 산림 이외의 타용도로의 이용이 보다 효과적임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978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같이 부과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사시공로선 : 종로5가 대학천
2. 공사의 종류 : 대학천복개공사
3. 착공년월일 : 1966년 3월 29일
4. 준공년월일 : 1966년 7월 26일
5. 총공사비 : 6,915,225원

6. 부담금 총액 : 1,037,283원
7. 부 과 구 역 : 별도 해당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일원
8. 기 타 사 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979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결정하고 이에 고지함

서기 196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사시공로선 : 종로구 산청동 중학천상측
2. 공사의 종류 : 제7차 중학천 복개공사
3. 착공년월일 : 1966년 3월 11일
4. 준공년월일 : 1966년 10월 3일
5. 총 공사비 : 14,830,865원
6. 부담금 총액 : 2,224,629원
7. 부 과 구 역 : 별도 해당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일원
8. 기 타 사 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980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결정하고 이에 고지함

서기 196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사시공로선 : 서대문구 만리동 육천
2. 공사의 종류 : 제5차 육천복개공사
3. 착공년월일 : 1966년 3월 10일
4. 준공년월일 : 1966년 12월 31일
5. 총 공사비 : 49,292,228원
6. 부담금 총액 : 7,393,834원
7. 부 과 구 역 : 별도 해당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일원

8. 기 타 사 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981호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의거 명륜동—혜화동 간 도로 포장공사에 대한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지역 총공사비 7,452,157원 부과 총액 4,850,402원을 1966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고시제 940호로 고시한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

서기 196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사시공로선 : 명륜동—혜화동선
2. 공사의 종류 : 보도 및 차도 아스팔트포장
3. 착공년월일 : 1966년 7월 8일
4. 준공년월일 : 1966년 11월 13일
5. 총 공사비 : 4,344,157.75원
6. 부담금총액 : 2,823,702원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8. 기 타 사 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982호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같이 부과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사시공로선 : 삼선동지내
2. 공사의 종류 : 아스팔트 및 세멘콘크리트
3. 착공년월일 : 1964년 7월 8일
4. 준공년월일 : 1964년 11월 13일
5. 총 공사비 : 2,441,000원
6. 부담금총액 : 1,586,650원

7. 부 과 구 역 : 별도 해당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일원

8. 기 타 사 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983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같이 부과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1. 공사시공로선 : 경동고교입구

2. 공 사 의 종 류 : 소포석포장

3. 착 공 년 월 일 : 1964년 7월 8일

4. 준 공 년 월 일 : 1964년 11월 13일

5. 총 공 사 비 : 677,000원

6. 부 담 금 총 액 : 440,050원

7. 부 과 구 역 : 별도 해당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일원

8. 기 타 사 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984호

측산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세하지 아니한 가축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도살을 금지한다

1. 대상가축

중축 및 후보중축으로서 해제된 모축을 제외한 한우

2. 실시지역

서울특별시 일원

3. 실시시기

1966년 5월 21일부터

서기 1966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서울특별시고시제98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서기 1966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실시목적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미연방지하여 공중위생의 위태를 방지 함에있음
2. 실시지역 서울특별시 시내일원
3. 실시대상가축 축전
4. 실시기간 1966년 6월 20일 | 15일간
1966년 7월 4일
5. 기타 동 예방주사는 시내 각 가축병원에서 무상으로 실시함

서울특별시고시제986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임 야 소 제 지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잔면적	소 유 자		비고
구	동	지번			면적	면적		주 소	성명	
성북	정능	87외32	임야	0.9524	0.9524	0.9524	없음	중구충무로3가24외9	한영권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7년도에 사방 지정지로 지정되어 1959—1960년도에 사방시설을 한 사방 시공지로서 도시계획상 임간 택지로 이용함이 풍지유지에도 효과가 클것이므로 산림 이외의 타용도로의 이용이 부득이하여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987호

사방사업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시장 김 현 욱

1.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잔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구	동	지번						주 소	성명	
영등포	신대방	173-1	임야	정	정	정	0	영등포구신대방동565	최주호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6년도 사방지정지로서 경사완만하며 지피가 안정된지대로 정상적인 시업을 하더라도 여타산업에 피해가 없는 사업성공지로서 사방지정지의 목적을 달성하여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988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시설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시장 김 현 욱

1.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잔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구	동	지번						주 소	성명	
영등포	신대방	360-5	대지	정	정	정	0	성북구정릉동464-13	김상국	

2. 해제사유

본대지는 1963년도에 토사유출방지과 도시미화를 위한 일시적인 목적으로 사방시설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에 의거 산림이외의 타용도로의 이용도가 큼으로 사방시설의 목적달성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989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입 야 소 재 지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잔면적	토 지 스 우 자	
구	동	지 번						주 소	상 면
성북	미아	108-35	임야	0.5204	0.5204	0.2613	0.252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운 동56-57	영구영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9년도 사방지경지로서 대부분의 지역이 암반이 노출 내지는 매장되어 있음으로 사방 시설물의 생육상황이 불량함에 산림조합설을 위한 사업을 하기보다 국토 건설용 자재를 채취 이용함이 도시발전 및 국토이용상 효과가 큼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990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 지경지를 해제 고시한다

· 서기 1966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입 야 소 재 지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잔면적	토 지 스 우 자	
구	동	지 번						주 소	상 면
성북	정능	87외138	임야	0.5506	0.5506	0.5506	0	중구충무로 3가24의9	영구영

2. 해제사유

본임지는 도시계획상 입간택지로 이용함이 풍치유지에도 효과가 클것이므로 산림 이외의 타용도로의 이용이 부득이하여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991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지경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임 야 소 재 지			지목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면적	주 소	성 명
구	동	지 번							
성북	정능	산87-125	임야	0.2719	0.2719	0.2719	0	성동구신당 동290-1	임선재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7년도에 사방 지정지로 지정되어 1959년--1960년도에 사방시설
을한 사방시공지로서 도시계획상 임간택지로 이용함이 풍치유지에 효과가
클것이므로 산림이외의 타용도로의 이용이 부득이하여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992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임 야 소 재 지			지목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면적	토 지 소 유 자	
구	동	산 번						주 소	성 명
성동	향당	30의3	임야	1.6927	1.6927	0.0720	1.6207	전북전주시 전동2가1-15	안진길

2. 해제사유

본신청지는 1959년도에 사방지로 지정 1963년도에 보수 시공한 장소이나
어후 인위적인 피해로 시설물이 손괴되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암반이 노출
된 장소로서 계속 산림조성을 위한 시업을 하기보다 국토건설용 자재를 채
취함이 토지이용상 효과가 큼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993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임 야 소 재 지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잔면적	토 지 소 유 자		
구	동	지 번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성북	미아	35-2	임야	0.6700	0.6700	0.2620	0.4010	성북구미아동51-55		김도락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35년도 사방 지정지로서 신청지 대부분이 암반지대로 국토이용상 산림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기보다 건설용 자재를 채취공급함이 보다 효율적임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994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 지정지를 해제 고시한다

서기 1966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임 야 소 재 지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잔면적	토 지 소 유 자		
구	동	지 번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성북	미아	산75-10	임야	1.6620	1.6620	0.2000	1.4620	성북구충천동산46		윤장춘

2. 해제사유

본신청지는 1957년도에 사방지로 지정하였으나 사방시공은 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에 의거 주거 지역으로 되었는데 도시 발전상 산림이외의 타용도로의 이용 효과가 큼으로 지정지를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995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따라 도로 수익자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같이 부과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사시공로선 중립동~합동선
2. 공사의 종류 중립동~합동간도로공사
3. 착공년월일 1966년 5월 10일
4. 준공년월일 1966년 8월 15일
5. 총공사비 7,910,000원
6. 부담금총액 1,186,500원
7. 부과구역 별도 해당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해구역일원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996호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소 및 운수사업 공작장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같이 고시함

서기 1966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기

명칭	위치	비고
건차운수사업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289	
운수사업공작장	〃	

시행일

이 고시는 196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997호

서기 196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시함

서기 1966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회 계 별	추가경정예산액	기 정 예 산 액	금회추가액
일반회계	7,241,097,400	7,241,097,400	
시민회관비 특별회계	30,086,400	30,806,400	
공익전당포비 특별회계	6,913,900	6,913,900	
주택비 특별회계	565,950,100	358,237,400	207,712,700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896,256,200	896,256,200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340,394,400	340,394,400	
건설자재생산비 특별회계	137,876,300	137,876,300	
시범농촌개발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120,200	120,300	
재해구조사업비 특별회계	6,566,300	6,566,300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155,000,000	155,000,000	
사관목관리 특별회계	239,800	239,800	
수도비 특별회계	2,511,017,140	2,511,017,140	
운수사업비 특별회계	411,443,100		411,443,100
합 계	12,302,961,340	11,683,805,540	619,155,800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69호

주택분양공고

1965년도 주택건설 지침에 의거 건설한 주택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분양함을 공고함.

서기 1966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내 용

1. 장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용암동 산 번지
 2. 분양호수 10동
 3. 분양대상 서울 시내 거주하는 자로서 무주택자
 4. 구비서류
 - 가. 분양신청서 (소정양식)
 - 나. 무가옥증명 (동장발행) 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발행한 것
 - 다. 인 감 증 명 (동장발행) 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발행한 것
 - 라. 분양계약금 1금 425,108원정
시중은행 발행 보증수표로서 추첨시 납부함
 5. 접수 및 기간
 - 가. 장 소 당시 주택과
 - 나. 기 간 자. 1966년 5월 20일 매일 08:30
지. 1966년 5월 21일 17:00 (일간)
 6. 분양방법 공개추첨에 의한
 7. 추첨일자 및 장소
서기 1966년 5월 23일 13:00 당시후정
내 역
- | | | | | |
|------|----------|----------|----------|---------|
| 분양호수 | 호당총공사비 | 정부융자금 | 신 청 금 | 비 고 |
| 10동 | 575,108원 | 150,000원 | 425,108원 | 수도공사는별도 |

◎서울특별시공고제70호

조리사 강습에 관한 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강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서기 1966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강습내용 가. 위생법규 나. 공중보건학 다. 영양학 라. 식품학
마. 식품위생학 바. 조리이론
2. 강습기간 자. 1966년 6월 3일부터 지. 1966년 8월 2일까지 (60일간)
3. 강습장소 구립조리기술학교 중구 충무로 3가 50
4. 강습인원 300명

◎서울특별시공고제71호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서울 도시계획 쪽도 토지구획정리 사업 실시 인가를
건설부 고시 제2342호 (1966년 4월 16일)로 득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에 규
정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케 되었기 관계 도전을 당시 도시계획국 기획
정리과 및 관할 구청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서기 1966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토지 구획정리 사업 시행 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일부 (94필)

〃 〃 〃 2가 일부 (708필)

〃 〃 화양동 일부 (100필)

〃 〃 송정동 일부 (49필)

2. 사업 시행기간

자. 서기 1966년 4월 16일

지. 서기 1969년 12월 31일

3. 유의사항

가. 서울 도시계획 쪽도 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토지는 사업 실시 거
간중(공사) 사업 집행상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서가
사용케 되오니 환지 예정지 지정 및 공사가 완료 될때 까지는 각종 공
작물의 설치 및 농경작 행위를 금지할 것이며 상기 행위를 하고자 할시
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집행자의 허가를 받을 것

나. 쪽도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신 구 토지 소유자의 연서로 신고할 것

다. 공고후 전항의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당시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4.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될 것이나마 수행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함

◎서울특별시공고제72호

시유건물(철거조건부)매각 입찰 공고

1. 건 물 표 시 1) 종로구 종로 5가(아동 공원내)
목조건물(투명 판자) 133.93m²
2. 입 찰 일 시 서기 1966년 5월 11일 10시
3. 입 찰 장 소 당시 재무국 판재과
4. 입 찰 방 법 일반경쟁 입찰
5. 입 찰 등 록 서기 1966년 5월 10일 12시 까지 등록자의 시세 국세납세 필증을 첨부하여 등록 한다
6. 입 찰 보 증 금 입찰 금액의 1할이상 현금이나 시중 금융기관 보증수표를 납부한다.
7. 철거및대금납부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고 10일 이내에 완전 철거하고 정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약하였을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 하겠음

서기 1966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73호

택지 채비지 매각 공고

1. 재산의표시 별지와 같음
2. 입 찰 일 시 1966년 5월 20일 10.00

3. 입찰장소 당시 도시계획국 서무과
4. 입찰방법 일반경쟁 입찰
5. 입찰등록 1966년 5월 19일 17시 30분 까지 서무과에 접수시킬것
6. 입찰보증금 입찰액의 1환 이상의 현금 또는 시중 은행의 보증수표를
입찰시에 납부함

7.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가.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 보증금으로 대체하며 5월 28일 이내에
국세 시세 납세필증 및 총 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정기예금(1년 이상)
예치 확인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매매 계약을 체결함.

나. 매매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때에는 총 금액에서 3환 해당액을 공
제한 잔액을 토지대금으로 하고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한다.

다. 매매대금을 년부로 납부할 때에는 년 5부의 이자를 붙여 최장 4년간
분납케 한다.

8. 지상물의 철거 매매물건의 지상물건거 명도 및 보상에 관하여는 일체
매수자가 책임진다.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국 서무과에 문의할 것

서기 1966년 5월 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재산목록

1. 길음 상도 신촌택지 175필 5,496.24평

2. 대천지구의 11개지구 399필 14,535.20평

제비지

필지별 재산목록은 당시 도시계획국 서무과에 비치하고 일반의 종람에 공
함

◎서울특별시공고제74호

시유건물(철거조건부)매각 입찰공고

1. 전 물 표 시 1) 서대문구 북가좌동 137(6통 3반)
목조 도단층 3평
2) 서대문구 북가좌동 136-89(6통 2반)
목조 도단층 1.5평
3) 용산구 한남동 산 8-45 지상전불 15평 (구내다방)
2. 입 찰 일 시 서기 1966년 5월 18일 10시
3. 입 찰 장 소 당시 재무국 판재과
4. 입 찰 방 법 일반 경쟁입찰
5. 입 찰 등 록 서기 1966년 5월 17일 12시 까지 등록자의 시세 국제
납세 필증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6. 입 찰 보 증 금 입찰금액의 1환 이상 현금이나 사증 금융기관 보증수
표를 납부한다
7. 철거및대금납부 낙찰자는 계약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고
10일 이내에 완전 철거하고 정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약 하였을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
속 조치하겠음

서기 196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서울특별시공고제7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청산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중 일부 지역에 대한
환지 계획과 환지 예정지를 도시계획법 제31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 수익의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
환지 예정지 지정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서대문 구청
마포 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서기 1966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 서울특별시공고제76호

부정축산물 단속원 모집

부정축산물 단속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함

1. 모집인원 약간명 (10명)
2. 시험일시 1966년 5월 25일 09시 00분
3. 시험장소 서울특별시 산업국 농정과
4. 시험과목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축산법과 수의 축산에 관한 상식문제
5. 자 격

가.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수의 축산 기술자로서 관계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

나. 전직 경찰관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자

다. 이상 가 나 항의 동등한 자격을 가진자

라. 45세 미만의 남자

• 마. 고용원 규정 제4조 제1항 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6. 응시원서 접수기간 자. 1966년 5월 14일 지. 1966년 5월 24일

7. ✕ 접수처 서울특별시 산업국 농정과

8. 구비서류

가. 자필이력서 소정서식에 의함

나. 자격증명서 1통

라. 사진(명함판) 2장

로. 호적초본 1통

마. 신원증명서 1통

바. 주민등록초본 1통

사. 병적확인서 1통

아. 신원보증서 1통

자. 신원 조사 의뢰서 4통

차. 학력증명서 1통

9. 기타 상세한 것은 당시 농정과에 문의할 것

위 공고함

서기 1966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 서울특별시공고제77호

1964년 11월 27일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404호로서 환지처분한바 있는 제 2 중앙 토지 구획정리 남대문(양 도동)지구중 환지처분 일부에 대하여 별지 변경조서 및 도면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에 대한 조서와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무과 및 중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서기 1966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 서울특별시공고제78호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공고

건설부 고시 제444호(1963년 7월 11일)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 사업인 홍제동—녹번동간 도로 확장공사 지내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목공고를 도시 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서기 1966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토 지 조 서

※ 수용평수

순위	분 환 전 표 시		지목	분 환 후 표 시		소 유 자	
	지 번	평수		지 번	평수	주 소	성 명
1	녹번동 38-19	90	대	녹번동 38-19	78	홍은동 39	신용삼
2	38-34	90	대	38-34	76	〃	〃
3	38-35	180	대	38-35	125	관월동 14-9	정규영
4	38-10	73	대	38-41	39	조선농림주식회사	
5	38-13	111	대	38-42	11	〃	

6	38-33	19	대	38-43	2	희현동 1기 117	김해선
7	39-4	64	대	39-5	9	죽번동 53-97	김응호
8	53-97	60	대	53-120	14	53-98	신우현
9	53-98	16	◇	53-121	13	53-107	김기순
10	53-107	15	◇	53-122	11	53-15	최찬려
11	53-15	42	◇	53-123	35	◇	◇
12	53-14	38	◇	53-124	33	◇ 53-14	정홍일
13	53-20	35	◇	53-125	28	◇ 53-20	김광도
14	53-29	34	◇	53-126	27	공덕동 산 6-101	조길호
15	53-34	35	◇	53-127	26	문화동 290-95	김영순
16	53-43	35	◇	53-128	◇	죽번동 53-43	주발용
17	53-48	30	◇	53-129	27	◇ 53-48	김순태
18	55-19	64	◇	55-26	21	◇ 135-1	임현식
19	55-20	63	◇	55-27	29	◇	◇
20	58	95	◇	58-2	23	응암동 36-4	정승철
21	60-1	91	◇	60-3	66	죽번동 60-1	김춘봉
22	죽번동 61-1	73	대	61-3	30	죽번동 61	이광려
23	61-2	74	◇	61-4	60	응암동 36	김기선
24	66	183	◇	66-2	175	◇ 66	김준국
25	70	54	◇	70-2	48	◇ 88	이준걸
26	71	135	◇	71-28	126	산 15-1	김진선
27	41-3	28	◇	41-4	0 8	선선동 91	이동학
28	41-2	117	◇	41-5	30	서소문동 122	이정숙
29	42-3	1,810	◇	42-39	35	울지로 1가 194	이영득
30	40-2	20	◇	42-38	13	서소문동 122	이정숙
31	48-2	600	◇	40-2	18	서소문동 122	이정숙
32	51-2	125	◇	48-2	53		이정숙
33	55-10	7	◇	51-2	40	죽번동 51-2	노두찬
34	38-4	9	◇	55-28	1	명륜동 2가 67-1	김영선
				38-4	9	◇ 38-4	김광철

35	38-5	16	◇	38-5	16	◇	38-5	김계철
36	38-6	23	◇	38-6	23	◇	38-6	김진옥
37	38-7	9	◇	38-7	9	◇	38-7	조선농 림회사
38	38-8	17	◇	38-8	17	◇		◇
39	37-2	6	◇	37-2	6	◇		◇
40	40-1	19	◇	40-1	19	태평로 2가 106		민형기
41	42-1	13	전	42-1	13	◇		◇
42	42-4	22	◇	42-4	22	◇		◇
43	53-108 녹번동	9	대	53-108	9	◇	53-108	김희순
44	53-16	40	◇	53-16	40	◇	53-16	김묵석
45	53-17	39	◇	53-17	39	◇	53-17	하충심
46	53-19	35	◇	53-19	35	◇	53-19	최상현
47	53-36	34	◇	53-36	34	◇	53-36	김종범
48	53-33	38	◇	53-33	38	◇	53-33	김낙균
49	53-22	4	◇	53-32	4	◇	53-32	노호용
50	53-44	35	◇	53-44	35	◇	75	김명윤
51	55-6	24	◇	55-6	24	신길동 135		박경수
52	55	81	◇	55	81	용암동 21-1		최숙경
53	56	43	◇	56	43	◇	56	박동순
54	57	31	◇	57	31	◇		노세찬
55	60-2	45	◇	60-2	45	◇	60-1	김춘봉
56	67	32	◇	67	32	◇	67	황봉구
57	68	29	◇	68	29	후암동 244-11		조선농 림회사
58	69	30	◇	69	30	◇	69	윤기영
59	72-1	10	전	72-1	10	신당동 349-20		윤일선
60	72-3	43	대	72-3	43	◇	72-3	이우목
61	53-30	38	◇	53-30	38	문화동 190-95		김명윤
62	37-1	13	◇	37-1	13			조선농 림회사
63	38	18	전	38	18			◇

64	53-31	3	대	53-31	3	하왕삼리 14-41	선동숙
65	53-45	3	◇	53-45	3	75	문노우
66	53-105	27	◇	53-105	27	◇ 53-105	호갑산
67	53-46	0.9	◇	53-46	0.9		◇
68	53-49	2	◇	53-49	2	75	문노우
69	72-2	19	◇	72-2	19	창파동 3가 24	송창을
70	52-1	18	◇	52-1	18	◇ 51	노득원
71	41-1	16	◇	41-1	16	서노문동 122	사정숙
72	53-47	10	◇	53-47	10	◇ 75	문노우
73	52-2	7	도	52-2	7	◇ 51	노득원
74	용암동 16-5	13	대	16-5	7	◇ 46	백영걸
75	16-3	63	◇	16-3	48	◇ 16	김기락
76	17-1	52	◇	17-5	11	죽번동 5-9	김희희
77	17-2	89	◇	17-2	44	◇ 17-2	◇
78	18	71	◇	18-1	26	아현동 325	김윤환
79	20	48	◇	20-1	28	◇ 20	김창원
80	21-1	76	◇	20-1	41	◇ 21-1	최정환
81	22	73	◇	22-1	38	죽번동 66	김종혁
82	23	63	◇	23-1	53	◇ 23	이대근
83	25-2	14	림	25-2	2		◇
84	25	99	대	25	97	충경로 2가 116-3	조희원
85	27	79	◇	27	65	홍파동 186	박현홍
86	31-1	7	◇	31-1	6	◇ 31-1	장원기
87	31-9	14	◇	31-9	11	◇ 32-9	김경숙
88	31-6	33	◇	31-6	7	◇ 31-6	김관수
89	32-1	299	◇	32-1	257	망월동 69-109	이필수
90	19-1	74	◇	19-1	30	홍제동 산 33-2	김창원
91	33	150	◇	33	150	아현동 210	최을순
92	26	32	전	26	32	죽번동	김상현

93	32-2	47	대	32-2	47	병천동 69-109	이필수
94	24	32	〃	24	32	죽번동 40	국장봉
95	28	34	〃	28	34	죽번동	김상현
96	홍은동 130-1	654	〃	130-3	9	부산시 동구초읍동 987	정복숙
97	133	222	〃	133-2	24	〃	〃
98	135-1	54	〃	135-7	33	〃	〃
99	110-37	33	〃	110-59	4	〃 110-37	이원열
100	110-38	24	〃	110-60	4	〃 110-38	김향집
101	110-20	31	〃	110-61	6	〃 110-20	신명렬
102	107-1	18	〃	107-9	11	〃 110-42	이규환
103	107-5	20	〃	107-10	4	〃 107-5	김덕순
104	78-1	31	〃	78-6	30	〃 78	이 철
105	77-12	49	〃	77-16	7	돈암동 458-612	이복남
106	77-15	46	〃	77-17	4	〃 51-304	송등진
107	76-1	52	〃	76-3	27	〃 228	안철봉
108	71	254	〃	71-1104	17	삼선동 2가 272	정두현
109	72	83	〃	72-2	5	〃 74	임선준
110	73-1	12	대	73-3	10	〃 73-1	주점용
111	68-1	21	〃	68-3	11	〃 86	이양순
112	65-12	42	전	65-14	0.5	양동 124	조한철
113	65-10	53	〃	65-15	3	〃 65	최길성
114	64-1	51	대	64-3	21	용산동 2가 7-1	김만홍
115	62-1	14	〃	62-5	3	〃 62-2	이기옥
116	62-2	11	〃	62-6	3	〃	〃
117	61-1	38	〃	61-3	20	〃 61-1	홍종술
118	60-1	11	도	60-5	4	충정로 3가 544-16	임홍근
119	60-2	26	대	60-2	20	60-2	김주영
120	59-1	30	〃	50-3	29.5	홍제동 122-13	이종숙
121	57-1	770	〃	57-3	5	충정로 3가 544-16	임홍근

122	57-1	770	◇	57-4	21	◇	◇
123	57	48	◇	57-5	6	◇	◇
124	53	29	◇	53-36	28-6	◇ 53	이세진
125	53-5	15	◇	53-32	11	홍제동 122	최점분
126	53-6	65	◇	53-33	31	◇ 52	경기초 자회사
127	227	38	◇	227-2	15	◇	◇
128	52	271	◇	52-2	16	◇	◇
129	139	59	◇	139-1	26	◇ 201	이우영
130	105-3	34	전	105-3	20	◇	◇
131	105-4	139	◇	105-4	90	◇	◇
132	105-2	6	전	105-2	3	◇	◇
133	103-1	17	대	103-1	7	◇ 103-1	김도목
134	103-4	12	◇	103-4	0.4	◇ 103-4	김양일
135	102-3	10	◇	102-3	3	◇ 102-3	백금자
136	102-2	9	◇	102-2	1	◇ 102-2	이명환
137	102-4	13	◇	102-4	6	◇ 102	조용석
138	102-5	14	◇	102-5	10	◇	◇
139	101	15	전	101-1	14	현저동 2-5	최종목
140	86-4	26	대	86-4	25.7	현저동 107-146	이명길
141	86-2	38	◇	86-2	35	◇ 86-3	김복준
142	86-3	15	◇	86-3	8	명환동 81-46	서광숙
143	88-2	31	◇	88-2	21	◇ 88-2	서한근
144	89	46	◇	89-1	55	◇ 86	박은이
145	90	38	◇	90-1	33	부암동 89	장소영
146	92-2	72	◇	92-2	64	◇ 92	장원수
147	93-2	52	◇	93-2	44	◇ 93-2	전범식
148	94-3	33	◇	94-3	22	◇ 223-5	김점순
149	223-5	28	◇	223-5	14	◇ 223	김인환
150	221-6	4	◇	221-6	2	◇	◇

151	221-2	18	◇	221-2	0.6	◇ 221-3	원용택
152	158-1	29	전	158-3	4	◇ 161	한계원
153	155-1	46	◇	155-5	17	중립동 12	천동수
154	152-1	248	대	152-4	78	◇ 152-1	조용진
155	145	482	전	145-2	◇	◇ 152	조경산
156				145-3	53	◇	◇
157	142-7	57	대	142-9	35.5	돈암동산 83-3	손대우
158	◇	◇	◇	142-10	0.8	◇	◇
159	142-8	31	◇	142-11	2	◇ 142	정태운
160	142-4	27	◇	142-12	2	수원군봉담면당하리	김진배
161	142-5	17	◇	142-13	2	◇ 142-5	정해운
162	142-6	32	◇	142-14	6	◇	◇
163	161	87	◇	161-1	35	장충동 52-16	천복수
164	160-2	33	◇	160-2	32.2	◇	◇
165	167	43	◇	167-2	2	◇ 166	권희철
166	168-1	21	전	168-3	6	◇	◇
167	168-2	35	◇	168-4	15	◇ 162	김상운
168	169-1	39	대	169-1	22	◇ 169	정해몽
169	169-2	22	◇	169-2	20	◇ 169	김종순
170	171	162	◇	171	43	인현동 1가 126	박정이
171	91	55	◇	91-1	50	◇ 194	김경용
172	77-13	7	◇	77-16	6.4	성례연 59-12	황복기
173	82	61	◇	82-1	54	향촌동 220-203	임규재
174	99	63	◇	99-1	1	◇ 99	이규홍
175	112-4 홍은동	32	◇	112-4	32	부산시 초양동 987	정복숙
176	112-3	10	대	112-3	10	◇ 987	정복숙
177	110-21	17	◇	110-21	17	◇ 110-2	이원열
178	110-41	20	◇	110-41	20	◇ 110-41	박기철
179	110-22	24	◇	110-22	24	천연동 80-16	지명홍

180	110-2	27	◇	110-2	27	부산 초양동 987	정복숙
181	110-10	17	◇	110-10	17	◇ 110-1	김한만
182	110-11	20	◇	110-11	20	◇ 110-11	김순이
183	110-23	21	◇	110-23	21	◇ 110-23	김형식
184	107-2	19	◇	107-2	19	◇ 110-23	서소이
185	107-3	20	◇	107-3	20	현저동 107-27	정준도
186	107-4	13	◇	107-4	13	◇ 107-4	정계상
187	78-2	24	◇	78-2	24	성래동 59-2	황복기
188	75-1	6	◇	75-1	6	◇ 75-1	정성복
189	75-2	10	◇	75-2	10	◇ 75-2	김인성
190	75-3	7	◇	75-3	7	◇ 75-3	유홍식
191	74-1	8	◇	74-1	8	◇ 74	임대준
192	62-3	17	◇	62-3	17	◇ 62-2	이기숙
193	58-1	7	◇	58-1	7	◇ 58	정봉운
194	56-1	18	◇	56-1	18	◇ 56	장도문
195	55-1	29	◇	55-1	29	◇ 91	김영진
196	55-3	17	◇	55-3	17	◇	◇
197	54-1	3	◇	54-1	3	채부동 75	최영식
198	홍은동 78-5	13	대	78-5	13	성래동 59-12	김복기
199	140	44	◇	140	44	◇ 142-5	정태근
200	138	11	◇	138	11	◇	◇
201	137	128	◇	137	128	◇	조일초 자화사
202	136-2	45	◇	136-2	45	천연동 80-16	지영홍
203	136-3	96	◇	136-3	96	◇	◇
204	79-1	52	◇	79-1	52	교북동 130-17	◇
205	80	45	◇	80	45	◇ 80	이운복
206	81	12	◇	81	12	◇	◇
207	83	49	◇	83	49	향촌동 210-203	임봉태
208	84	46	◇	84	46	현저동 2-5	최종묵

209	85	49	〃	85	49	청원동 95-2	백순만
210	86-1	35	〃	86-1	35	〃 86-1	이형배
211	86-5	33	〃	86-5	33	〃 86-5	이양순
212	87	44	〃	87	44	〃 88-2	서한구
213	88-1	19	〃	88-1	19	〃 89	한순희
214	94-2	1	도	94-2	1	천연동 8-46	박용근
215	100	2	전	100	2	〃 95-2	백순만
216	223-4	13	도	223-4	13	〃 53	이춘호
217	226-1	8	대	226-1	8	종로 5가 282-19	유흥용
218	224-3	21	도	224-3	21	합동 18	박용근
219	226-8	19	대	226-8	19	종로 5가 282-19	유흥용
220	224-1	10	〃	224-1	10	〃 95	김경윤
221	224-4	11	〃	224-4	11	〃	〃
222	226-4	4	도	226-4	4	종로 5가 282-19	유흥용
223	53-9	14	대	53-9	14	〃 36-32	윤봉석
224	53-24	18	〃	53-24	18	〃 53-8	이민태
225	53-17	13	〃	53-17	13	〃 36-32	윤봉석
226	53-18	4	〃	53-18	4	〃 95	김경윤
227	53-3	5	〃	53-3	5	〃	〃
228	53-20	4	〃	53-20	4	〃 110-7	박순업
229	53-26	1	〃	53-26	1	〃 53-4	이명순
230	53-28	0.8	〃	53-28	0.8	〃	〃
231	53-4	3	〃	53-4	3	〃	〃
232	53-7	10	〃	53-7	10	〃 53-8	이민태
233	110-54	1	도	110-54	1	원당면 도래리 376	김 잠
234	110-53	2	〃	110-53	2	〃 110-19	김한만
235	107-8	2	대	107-8	2	부암동 387	장소영
236	75-5	13	도	75-5	13	〃 75-2	김인성
237	72-2	14	〃	73-2	14		주결용

238	68-2	22	◇	68-2	22	도동 1가 136	한은국
239	64-2	22	◇	64-2	22	용산동 2가 7-1	김만홍
240	59-2	25	◇	59-2	25	◇ 59	김덕환
241	58-2	9	◇	58-2	9	내자동 12	최화영
242	홍은동 56-2	12	◇	56-2	12	도동 136	한용국
243	54-2	1	◇	54-2	1	최부동 75	최영식
244	53-16	7	대	53-16	7	◇ 226	김봉득
245	53-30	4	◇	53-30	4	불광동 280	김정준
246	223-1	3	◇	223-1	3	◇ 53-3	김용덕
247	141-3	26	대	141-3	26	◇ 141	민단순
248	141-2	29	◇	141-2	29	◇ 142-5	정해운
249	141-4	7	◇	141-4	7	수원시 시정목 106	김현우
250	141-1	51	◇	141-1	51	돈암동 산 83-3	손대우
251	102-1	41	◇	102-1	41	◇ 142-1	김결서
252	143-1	73	◇	143-1	73	◇ 152	조점산
253	144-1	18	◇	144-1	18	◇	◇
254	152-2	11	도	152-2	11	◇ 152	조승진
255	153-1	37	대	153-1	37	◇	◇
256	153-2	50	도	153-2	50	◇	◇
257	153-4	6	대	153-4	6	◇ 153	김달수
258	153-3	2	◇	153-3	2	◇	◇
259	154-2	14	도	154-2	14	◇ 154	이관용
260	154-3	28	◇	154-3	28	◇ 164	김영진
261	154-4	20	◇	154-4	20	◇ 154	이관용
262	154-1	2	대	154-1	2	◇ 164	김영진
263	155-2	8	전	155-2	8	죽림동 121	한재원
264	홍은동 255-3	75	도	255-3	75	만리동 1가 50	김명환
265	155-4	9	전	155-4	9	◇ 161	한재원
266	160-1	18	도	160-1	18	장충동 1가 52-16	원복환

267	169-2	85	도	169-2	85	만리동 1가 50	김명환
268	159-1	6	전	159-1	6	〃 161	한재원
269	158-2	54	도	158-2	54	만리동 1가 50	김명환
270	170-1	56	〃	170-1	56	〃 169	김종순
271	170-2	6	대	170-2	6	〃	〃
272	170-3	24	〃	170-3	24	〃	〃
273	170-4	72	〃	174-4	72	〃	〃
274	226-7	6	〃	226-7	6	종로 5가 28-19	유홍용
275	226-6	4	〃	226-6	4	〃	〃
276	228	9	〃	228	9	〃 228	박원봉
277	222-1	1	도	222-1	1	녹번동 43	박종대
278	153-3	2	대	153-3	2	〃 153	김상수
279	144-2	9	도	144-2	9	〃 152	조점신
280	143-2	13	〃	143-2	13	〃	〃
281	170-2	6	대	170-2	6	〃 170-2	김종순
282	응암동 31-4	28027	임	산 1-110	900	경주관광 주식회사	
283	홍은동 3-4	0500	〃	산 4-2	0108	충정로 3가 3-46	김영례
284	산 5-1	2311	임	산 5-7	0323	〃 19-5	박창채
285	산 5-3	0500	임	산 5-8	0014	〃 153	조상진
286	홍은동 3-81	5328	임	산 8-3	0108	부산시 초양동 987	정복숙
287	산11-1	349606	임	산11-63	1100	〃 201	이우영

건 물 조 서

순위	소	제	지	구	조	총평수	수용평수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홍은동53-3의3필			목	조	와	16.11	16.11	동 소	김경운
2	〃 223-5				〃		25.44	25.44	〃	실일환
3	〃 226			목	조	도	48	48	〃	유홍용
4	〃 228			목	조	초	7	7	〃	김봉완

5	◇ 52	목 조 연 와 줍	43.91	20	◇	엄정섭
6	◇ 53-24	목 조 와 줍	22	22	◇	이민태
7	◇ 94-3	세안부록크도단줍	9.02	9.02	◇	김전승
8	◇ 92	목 조 와 줍	33	33	◇	장원수
9	◇ 91	◇	19	19	◇	김복관
10	◇ 89	◇	16	16	◇	한승희
11	◇	◇	8	8	◇	◇
12	◇ 88-1	◇	11	11	◇	주인승
13	◇ 88-2	◇	18	18	◇	김한기
14	◇ 85	목 조 초 줍	14	14	◇	조영호
15	◇ 84	◇	7	7	◇	박명관
16	◇ 101.84	목 조 와 줍	33	33	현저동 2-5	채영석
17	◇ 102-5	◇	7.11	7.11	동 소	김기옥
18	◇ 102-3	◇	7.1	7.1	◇	정금자
19	◇ 102-2	◇	6	6	◇	이병일
20	◇ 102	◇	13	13	◇	김강욱
21	◇ 67-1	◇	6	6	◇	유인홍
22	◇ 80	◇	23	23	◇	이운관
23	◇ 79	◇	9	9	◇	김유준
24	◇ 75-2	◇	7	7	◇	김원진
25	◇ 78-2	◇	11.38	11.38	◇	김복기
26	◇ 107	목 조 초 줍	9	9	◇	김정호
27	◇ 110-23	목 조 와 줍	12	12	◇	김형기
28	◇ 110-11	◇	16	16	◇	한종남
29	◇ 110-10	◇	11	11	◇	김영민
30	◇ 110-21	◇	9	9	◇	이건진
31	◇ 136	목 조 도 단 줍	240	240	◇	지병남
32	◇ 135	목 조 와 줍	6	6	◇	양재득
33	◇ 131	◇ 초 줍	6	6	◇	심순향

34	◇ 143	◇ 와 줍	34	34	◇	이봉구
35	◇ 141-3	목 조 도 단 줍	16	16	◇	조상근
36	◇ 142-6	세멘 부록 와 줍	21	21	◇	정태운
37	◇ 145	목 조 와 줍	21	21	◇	조점산
38	◇ 169-1	연 와 조 와 줍	54.1	25.5	◇	권희철
39	◇ 169	목 조 와 줍	18	18	◇	정씨영
40	◇ 153	◇	30	30	◇	조용진
41	◇ 154	목 조 초 줍	6	6	◇	배문성
42	◇ 161	◇	10	10	◇	김명환
43	녹번동72-3	◇ 와 줍	10.83	10.83	◇	이구목
44	◇ 72	목 조 와 줍	10.83	10.83	◇	송상울
45	◇ 71	◇ 초 줍	13	13	◇	정삼성
46	◇ 69	◇	17	17	◇	이광문
47	◇ 67	◇	13.95	13.95	◇	조인환
48	◇ 61	◇ 와 줍	21	21	◇	이광래
49	◇ 61-1	◇	19	19	◇	김연주
50	◇ 56	◇	13.33	13.33	◇	박동순
51	◇ 55-19	세멘 벽돌 와 줍	16.5	8	◇	박순정
52	◇ 55-20	◇	15	15	◇	한낙구
53	◇ 53-33 ³²	목 조 와 줍	15.82	15.82	◇	김탁균
54	◇ 53-30	◇	20	20	◇	장은순
55	◇ 53-19	세 멘 연 와	12	12	◇	최삼현
56	◇ 53-16	목 조 와 줍	15	15	◇	최삼목
57	◇ 53-17	◇	15	15	◇	하충심
58	◇ 53-41	◇	16	16	◇	김종혁
59	◇ 53-43	세멘 벽돌 와 줍	15.21	15.21	◇	송범용
60	◇ 53-34	목 조 와 줍	10	10	◇	김주열
61	◇ 53-29	세멘 부록 와 줍	13.8	13.8	◇	조길호
62	◇ 53-1	목 조 와 줍	20.15	20.15	◇	최천에

63	◇ 53	◇	30	30	◇	문광우
64	◇ 53-20	세멘 벽돌 와즙	23.7	23.7	◇	김세도
65	◇ 51-2	목 조 와 즙	30.17	30.17	◇	노득원
66	늑번동40-2	목 조 와 즙	27	27	◇	이달권
67	용암동16-3	목 조 도 단 즙	5.2	5.2	◇	장어석
68	늑번동37-1	목 조 와 즙	8	8	◇	김희림
69	용암동17-2	목 조 도 단 즙	27.7	27.7	◇	노득윤
70	◇ 18	세멘 부록 와즙	11.9	11.9	◇	안우악
71	◇ 19	목 조 와 즙	27.88	27.88	◇	김창선
72	◇ 20	◇ 와 즙	8	8	◇	김난숙자
72	◇	◇	18	18	◇	김환민
74	◇ 22	◇ 초 즙	17	17	◇	김종혁
75	◇ 23	◇	7	7	◇	김용주
76	◇	◇	6.66	6.66	◇	조희환
77	◇ 31-1	세멘 부록 와즙	13.43	13.43	◇	장선재
78	◇ 30-1	◇	15.93	15.93	◇	전길수
79	◇ 21-1	목 조 초 즙	26	26	◇	이성녀
80	늑번동55	◇ 와 즙	25	25	◇	최영학
81	◇ 66	◇ 초 즙	15.33	15.33	◇	김희대
82	홍은동 3	◇ 와 즙	10	10	◇	이순기
83	◇ 252-3외3필지	◇	12.42	12.42	◇	김상주
84	◇ 268-2	◇	23	23	◇	김상권
85	◇ 92	◇	11	11	◇	이항우
86	늑번동60	◇	24	24	◇	김연주의 1
87	홍은동53	◇	9	9	◇	김용덕
88	홍은동53	목 조 와 즙	11	11	◇	윤봉석
89	◇ 86-5	◇	17	17	◇	김봉순
90	◇ 101	◇	15	15	◇	채영석
91	◇ 61-1	◇	9	9	◇	이기옥

92	◇ 61-1	◇	38	38	◇	홍종율
93	◇ 60	◇	13	13	◇	고인종
94	◇ 78-1	◇	8	8	◇	최영병
95	◇ 110	◇	6.5	6.5	◇	최윤옥
96	◇ 131	◇	9.33	9.33	◇	이기남
97	◇ 135	◇	6.5	6.5	◇	최장선
98	◇ 106	◇	7.77	7.77	◇	이홍남
99	◇ 103	◇	8.16	8.16	◇	양재득
100	◇ 103	목 조 도 단 줍	10.35	10.35	◇	박호근
101	◇ 143	목 조 와 줍	21	21	◇	조점산
102	◇ 169	◇	8.5	8.5	◇	송선용
103	◇ 21-7	◇	8	8	◇	김용길
104	북변동 70-1	◇	9	9	◇	정태식
105	◇ 69	◇	17	17	◇	윤기영
106	◇ 64	◇	51	51	◇	김한종
107	◇ 61	◇	23	23	◇	김길성
108	◇ 57	◇	20	20	◇	노세창
109	◇ 55	◇	25	25	◇	최영학
110	◇ 53-44	목 조 와 줍	24	24	◇	노갑선
111	◇	◇	30	30	◇	문광우
112	◇ 53-41 32	◇	15	15	◇	주범용
113	◇ 53-33	◇	5	5	◇	노호용
114	◇ 53-14	◇	8	8	◇	안진남
115	◇ 42-1	◇	11	11	◇	최재원
116	◇ 42	◇	16	16	◇	박수만
117	◇ 41	◇	8	8	◇	김진옥
118	◇ 37	◇	10	10	◇	정광배
119	◇ 53-33 32	◇	16	16	◇	김낙환
120	홍은동 산 3	◇	8	8	◇	홍학천

121	용암동21	초	증	26	26	최영학				
122	홍은동 산 3	과	증	8	3	이준석				
123	〃	세	멘	부	록	이준석				
124	〃	목	조	와	증	필용한				
125	홍은동76	〃		12	12	최영병				
126	〃	〃		34	34	전필진				
127	용암동21-1	목	조	세	멘	와	증	5.44	5.44	이도실
128	홍은동62-3	목	조	초	증	19	19	김형욱		
129	〃 79-2	목	조	와	증	10.74	10.74	정명산		

◎서울특별시공고제79호

시유건물(철거조건부) 매각입찰공고

1. 건 물 표 시

1) 서대문구 창천동 30-15 세면벽돌조와증 3평 (공중변소)

2) 서대문구 홍제동 320 동지상 건물 목조와증 26평

2. 입찰 일 시 서기 1966년 5월 25일 10시

3. 입찰 장 소 당시 재무국 관재과

4. 입찰 방 법 일반 경쟁입찰

5. 입찰 등 록 서기 1966년 5월 24일 12시 까지 등록자의 시세 국제 납세 필증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6. 입찰 보 증 금 입찰금액의 1환 이상 현금이나 시중 금융기관 보증수표를 납부한다

7. 철거및대금납부 낙찰자는 계약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고 10일 이내에 완전 철거하고 경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약하였을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겠음

서기 1966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서울특별시공고제80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

시험 실시구분

시 험 종 별	응시 원서 접수	필기 시험 일자	필 기 시 험 장 소
보 통 제 1 종	1966. 6. 10~6. 16	1966. 6. 18 14 : 00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장
소 형 특 수	1966. 6. 14~6. 22	1966. 6. 24 14 : 00	“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자는 필기 시험장에서 알림

나. 필기시험 합격자는 기능 시험 일자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지정 받을 것

2.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보통 제1종 교통관계 법령

소형 특수 교통관계 법령 구조 및 취급방법

나. 기능시험

지각반응검사 코스 장거리

3. 응시자격

도로교통법 제57조 (면허시험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가. 보통 제1종은 1941년 6월 17일 이전에 출생한자

나. 소형 및 특수는 1948년 6월 23일 이전에 출생한자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이면 신체검사단에 국립 경찰병원의 신체검사를 받을 것)
1통

나. 주민등록표의 초본 1매

다. 시험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그에 따른 증명서

라. 사진 2매(반명합판)

마. 보통 제1종 면허 응시자는 3년 이상의 운전경력 증명서(시 도지사 받

행)

바. 수수료 3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5.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한남동 소재)

단 보통 제1종은 경찰국 교통과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찰국 교통과 (22,0375, 22~7595) 및 각 경찰서 교통반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6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② 서울특별시공고제81호

1. 주소 또는 거소 동대문구 창신동 151의 29 박흥정의 46인

2. 면목토지 구획정리 분납금 채납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 압류 통지서
 상기 부동산 등기 압류 통지서를 1966년 2월 24일 부터 1965년 3월 17일
 사이 등기 우송하였으나 일부 채납자의 주소 거소 불명으로 직접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서기 1966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NO	地目	物 件 地	滞納額	住 所	姓 名
B 60	田	面牧洞416	33,862	東大門區 昌信洞 131-29	朴洪顯
B207	〃	〃 553-1	92,934	〃 典農洞 山 11	朴大男
C 29	畓	〃 450-1	51,227	〃 祭基洞 86	朴今順
D 40	墳墓地	〃 367-1	29,134	〃 面牧洞 367-2	金虎鐸
D 17	〃	〃 370-1	35,614	永登浦區 黑石洞 207-16	李春子
B219	田	〃 554-1	74,505	東大門區 典農洞 山 11	李文永
C 90	畓	〃 897-2	193,635	西大門區 北阿峴洞 山 32	朱東浩
〃	〃	〃 〃	〃	京畿道 楊州郡 別內面 育鰐里 213	鄭見澤

B 92	田	〃	383-2	40,718	龍山區 龍門洞 15-1	尹用台
B 89	〃	〃	417-3	33,862	東大門區 昌信洞 131-29	朴洪載
B107	〃	〃	837	119,379	〃 龍頭洞 89-3	李柱成
B112	〃	〃	389	144,905	城北區 鍾岩洞 125-47	姜小阿
〃	〃	〃	〃	〃	〃 78-67	南容兒
B178	〃	〃	575	142,646	東大門區 龍頭洞 187	襄点順
〃	〃	〃	〃	〃	城北區 下月谷洞 90	洪完植
C 65	畜	〃	456	332,426	東大門區 踏十里洞 429	林英子
D 33	林野	〃	567-5	777,924	麻浦區 龍江洞 185	安致烈
B 68	田	面牧洞423	89,760	中區 忠武路 參街 56-3	李康史	〃
B 69	〃	面牧洞424	169,973	〃	〃	〃
C 97	畜	〃	766-3	79,740	東大門區 祭基洞 13-1	李順石
〃	〃	〃	〃	〃	〃 13-51	金斗滿
C 4	〃	〃	766-1	191,995	〃 面牧洞 553	柳仁子
B148	田	〃	540	272,646	〃 447	朴敬姬
B127	〃	〃	877-1	148,512	〃 祭基洞 27	申金禮
B209	〃	〃	390-2	93,849	永登浦區 九老洞 公用住宅 1107	襄南壽
B199	〃	〃	881-3	36,005	東大門區 普門洞 6가 195	朴世燦
D 41	墳墓地	〃	367-3	27,060	中區 桃洞 1街 93	李圭先
B108	田	〃	838	130,956	東大門區 祭基洞 86	金榮淑
B 79	〃	〃	506	88,649	城東區 新堂洞 333-42	元氣燮
C 54	畜	〃	474-2	41,012	中區 武橋洞 13	李相玉
C 28	〃	〃	563-8	67,623	東大門區 典義洞 11	李大永
B196	田	〃	544-1	82,617	〃 龍頭洞 115-14	許 煥
B 82	〃	〃	496	162,468	鍾路區 新門路 2가 1-167	李發正
B183	〃	〃	1108	104,624	麻浦區 桃花洞 271-1	金基男
D 21	墳墓地	〃	367-1	31,234	東大門區 里門洞 山 6	盧英愛
B167	田	面牧洞555	27,476	〃	面牧洞 555	洪鍾郁
C 76	畜	〃	377-1	153,329	〃 청량리동 山 7	金炳淑

C 76	番	面牧洞377-1	153,329	東大門區 제기동 21-1	金鐵法
C 19	◇	◇ 797	71,252	묵정동 11-77	李麗杰
18	◇	◇ 795	105,646	◇	◇
B230	田	◇ 500-6	33,280	仁川市 松月洞 1가 4	姜大,코
D 24	林	◇ 山 62	48,774	면목동 山 62	馬元子
C 89	番	◇ 896	104,358	이문동 163-43	金廟圭
B215	田	◇ 836-2	120,203	장충동 2가 185	朴和世
B140	◇	◇ 371-1	19,880	제기동 86	具泰壽
◇	◇	◇ 371-5	4,247	◇	◇
◇	◇	◇ 371-4	19,910	◇	◇
◇	◇	◇ 371-3	22,015	◇	◇
◇	◇	◇ 371-2	22,015	◇	◇

서울特別市公告第82號

警察職 및 消防職 公務員 昇進任用 規程에 依하여 第8回 警察昇進試驗을 다
음과 같이 施行한다

서기 1966년 5월 23일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 試驗施行日字

가. 筆記試驗

서기 1966년 6월 26일 (日曜日) 09:00

나. 面接試驗

서기 1966년 7월 5일 (火曜日) 09:00

2. 試驗場所

가. 筆記試驗: 明知大學

나. 面接試驗: 警察局

3. 應試資格

가. 警察職 및 消防職 公務員 昇進任用規程 第6條에 規程된 應試資格을 가진 者中에서 豫備試驗에 合格한 者

(1) 豫備試驗實施

豫備試驗은 警察局 警察署別로 實施하고 該當局 署의 有資格者數의 30%를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應試者 名單을 上申하여야 한다.

(가) 豫備試驗日時 및 場所

① 警察局

㉔ 論文試驗日時: 서기 1966년 6월 12일 09:00

㉕ 論文試驗場所: 明知大學

㉖ 面接試驗日時: 서기 1966년 6월 13일 14일 09:00

㉗ 面接試驗場所: 警察局

② 警察署

各署에서는 서기 1966년 6월 15일 以前에 署別로 適宜選定 實施

(나) 試驗科目

① 論文.....60%

② 面接.....40% (面接은 勤務經歷評定點과 平素勤務狀況을 參酌한 것)

計 100%

나. 警察職 및 消防職 公務員 昇進任用規程 第18.19條 및 同施行細則 第5條에 該當하는 者는 應試할 수 없다

4. 試驗科目

가. 筆記試驗 및 施行時間

筆記試驗은 警察職 및 消防職 公務員 昇進任用規程 第8條에 依하여 다음과 같이 行한다

(1) 行政法: 09:00~09:50

(2) 刑 法: 10:10~11:00

(3) 刑事訴訟法: 11:20~12:10

(4) 選擇科目(警務 保安 警備 搜查 情報 通信에 關한 實務科目中擇一)

14:00~14:50

나. 面接試驗

警察職 및 消防職 公務員 昇進任用規程 第7條 4項에 依하여 施行한다

5. 勤務成績等의 種別配點

警察職 및 消防職 公務員 昇進任用規程 施行細則 第9條 第2項에 依한 勤務成績 等의 種別配定比率는 다음 要領에 依하여 算出한 것

가. 經歷評點(15%) 및 勤務評定點(5%) 算出基準은 經歷評定規程 및 勤務成績評定 規程에 依하여 點數를 算出할 것

나. 訓練成績(3%)

(1) 當該職級에서 받은 基本教育履修者는 1回 1點 特殊教育履修者는 1

回 0.5點을 認定算出함

(2) 他職級에서 받은 教育은 認定하지 아니한다

(3) 前項의 教育訓練點數가 3點을 超過할 時는 點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 賞 勳(7%)

(1) 勳 章

(가) 武功勳章

花郎武功勳章..... 1回 2點

仁憲 〃 〃

(나) 素星勳章

綠條素星勳章..... 1回 2點

王條 〃 〃

(다) 勤務功勞勳章

4等 勤務功勞勳章..... 1回 2點

5等 〃 〃

(2) 褒 章

(가) 防衛褒章..... 1回 1.5點

(나) 勉勵 〃 〃

(3) 功績賞

(가) 大統領賞.....1回 2點

(나) 國務總理賞..... 〃 1.5點

(다) 長官賞 〃 1點

(라) 市道知事賞1回 0.5點

(마) 署長賞1回 0.25點

(4) 優等賞..... 1回 1點

(5) 前項의 勳褒章은 賞勳法에 依한 賞을 意味하고 表彰은 政府表彰規程에 依한 賞을 意味한다

(6) 모든 賞勳關係는 當該職級에서 받은 賞勳만을 認定하며 同一功績으로 수개의 賞을 받았을 時는 最高 職級者의 賞에 依하여 點數에 計算토록 한다

(7) 賞勳總點數는 7點 滿點으로 計算하고 7點이 超過되는 賞勳關係는 點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8) 政府表彰規程 以前에 發行한 治安局長 및 市道警察局長 賞은 政府表彰規程에 依한 點數로 認定하지 아니한다

6. 提出書類

가. 豫備試驗 應試者는 서기 1966년 6월 8일까지 各所屬課署에 應試하여야 한다 (警察局 各課에서는 豫備試驗應試者 名單을 6월 9일 까지 敎養係에 提出)

나. 本昇進試驗(豫備試驗合格者) 應試者에 對하여는 昇進試驗施行細則 第6條 規程에 依한 關係書類를 具備하여 서기 1966년 6월 18일까지 訓練 및 賞勳關係寫本添付 本委員會에 提出할 것

다. 昇進試驗施行細則 第6條 1項에 있는 應試者 名簿는 別添 書式으로 變更作成 關係官의 檢印 確認印을 捺印하여 提出할 것

7. 其 他

가. 모든 日字計算은 서기 1966년 5월 23일 現在를 基準으로 할것

나. 應試者 名單은 漢文으로 할 것

다. 本試驗 應試者는 應試手數料 200원을 應試者 名單에 添付提出할 것

라. 試驗應試者는 靑色 볼펜 또는 靑色 만년필을 持參 試驗 40分前에 集
합하여야 한다

마. 서기 1966년 5월 23일 現在 有資格者數를 다음 書式에 依據 5월 30
일 까지 報告할 것

署 別	巡警現員	2年以上勤賁者	缺格者	有資格者	備 考

※ 備考에는 缺格者 內譯表示

◎서울특별시공고제83호

건설부 고시 제 2266호(서기 1966년 3월 30일)로서 고시된 당시 도시 계획 사업인 청계천 하수처리장 건설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시 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사업명 청계천 하수처리장 건설
2. 토지 세목 (별지 조서)
3. 공고 기간 서기 1966년 5월 24일—서기 1966년 6월 2일(10일간)

서기 1966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土 地 調 査

一連 番號	財産의 表示		地目	地積	所 有 者		關 係 人	
	洞名	地 番			住 所	姓 名	住 所	姓 名
1	城東區 君子洞	205...615	畓	138	城東區 陵洞414	安 官 燮	分劃 205 의 393에 서	
2	〃	〃 816	〃	2	〃 〃	〃	〃 690	
3	〃	〃 817	〃	7	〃 〃 410	郭 鍾 國	〃 689	
4	〃	〃 818	〃	9	〃 〃	〃	〃 390	

5	◇	819	◇	257	東大門路里洞315	金 仲 文	◇	391
6	◇	820	◇	569	城東區 陵洞414	安 官 燦	◇	392
7	◇	821	◇	28	國		◇	35
8	◇	822	◇	314	城東區紫陽洞229	崔 容 鎮	◇	39
9	◇	823	◇	587	松亭洞 山1	崔 官 奉	◇	400
10	◇	824	◇	60	君子洞 124	李 性 男	◇	596
11	◇	825	◇	78	松亭洞 72	姜 性 學	◇	397
12	◇	826	◇	547	毛陳洞 72	朴 允 山	◇	402
13	◇	827	◇	417	君子洞 320	張 華 春	◇	403
14	城東區 君子洞	205의 828	◇	27	城東區毛陳洞63	李 德 辰	分割 205 의 55에서	◇
15	◇	829	◇	140	◇	◇	◇	56
16	◇	830	◇	16	華陽洞 147	李 貞 仁	◇	250
17	◇	831	◇	590	君子洞 59	金 七 山	◇	417
18	◇	832	◇	475	◇	◇	◇	418
19	◇	833	◇	308	毛陳洞 66	池 春 福	◇	419
20	◇	834	◇	146	沙斤洞212의1	千 炳 泰	◇	420
21	◇	835	◇	12	華陽洞 132	鄭 京 千	◇	709
22	◇	836	◇	6	國	◇	◇	711
23	◇	837	◇	1	◇	◇	◇	
24	◇	838	◇	7	◇	◇	◇	806
25	◇	839	◇	602	城東區毛陳洞54	池 龍 云	◇	57
26	◇	840	◇	426	◇ 63	李 德 辰	◇	425
27	◇	841	◇	169	杏堂洞 197	趙 元 吉	◇	426
28	◇	842	◇	112	◇	◇	◇	427
29	◇	843	田	24	國	◇	◇	428
30	◇	844	畚	33	杏堂洞 197	趙 元 吉	◇	429
31	◇	485	田	22	◇	◇	◇	430
32	◇	846	畚	56	◇	◇	◇	431
33	◇	847	◇	11	◇	◇	◇	432

34	◇	848	◇	1	東大門興農洞	426	李 今 成	◇	270
35	◇	849	道	5			國	◇	58
36	◇	850	番	2			國	◇	771 未確認
37	松亭洞	74의 300	◇	401	城東區陵洞	44	安 官 燁	74의 109	
38	◇	299	田	204	東大門興農洞	530	姜 卦 齊	◇	108
39	◇	232	◇	8	城東區新堂洞	80-70	許 時 榮	◇	297 未確認
40	◇	298	番	0.5	◇		◇	◇	4
41	◇	314	田	318	西大門區新營洞	105의 20	裴 聖 淑	◇	120
42	君子洞	205의 850	◇	4			國	◇	205 의 748
43	◇	110	番	540	城東區杏堂洞	196	金 祭 同	分劃 110 의 205	
44	城東區君子洞	205의 462	田	353	東大門區路十里洞	210	安 均	의 462에	
45	◇	853	番	108	◇		◇	◇	463
46	◇	854	◇	682	城東區杏堂洞	128	安 洙 煥		112
47	◇	859	堤				國		133 未確認
48	松亭洞	301	番	288	下往十里洞	707	金 壽 英	74의 89 에 서	
49	◇	302	◇	26	東大門馬場洞	476	李 公 烈		90
50	◇	100	◇	218	城東區下往十里洞	707	金 壽 英		100
51	◇	304	◇	7	◇		◇		101
52	◇	305	◇	95	東大門區路十里洞	山12	尹 永 哲		97
53	◇	306	◇	422	◇		陳 春 同		98
54	◇	307	◇	295	城東區松亭洞	707	金 壽 英		78
55	◇	308	◇	11	東大門區路十里洞	山12	陳 春 同		75
56	◇	309	◇	6	城東區君子洞	54	金 照 男		77
57	◇	310	◇	150	◇		◇		119
58	◇	73의 404	河川	218			國	分劃 73의 12에 서	
59	◇	405	◇	633			◇	◇	37
60	◇	406	道路	9			◇	◇	69
61	◇	407	溝	30			◇	◇	71
62	◇	408	番	5			◇	◇	84

63	◇	409	田	12	◇	◇	85
64	◇	410	番	23	城東區華陽洞	64 曹 景 山	◇ 97
65	◇	411	◇	7	國	◇	◇ 99
66	◇	412	◇	3	◇	◇	◇ 100
67	◇	413	◇	13	◇	◇	◇ 257
68	◇	414	溝	13	◇	◇	◇ 72
69	◇	13	林	525	◇	◇	◇ 73
70	◇	74	◇	102	◇	◇	◇ 74
71	◇	417	河川	199	◇	◇	◇ 75
72	◇	74의 41	林	1,021	◇	◇	◇ 41
73	◇	44	堤	1,055	◇	◇	◇ 44
74	城東區 松亭洞	74의 313	堤	1,123	◇	分割73의 44에서	◇ 73
75	◇	75의 64	河川	331	◇	◇	◇ 29
76	◇	65	堤防	288	◇	◇	◇ 30
77	君子洞	205의 43	番	537	城東區君子洞	86 裴 壽 煥	
78	◇	40	◇	534	華陽洞	135 鄭 生 得	
79	◇	44	◇	128	杏堂洞	256 金 顯 世	
80	◇	46	◇	72	華陽洞	43 李 仁 文	
81	◇	47	◇	91	陵洞	44 朴 貞 祿	
82	◇	48	◇	562	聖水洞2가1	池 宗 一	
83	◇	49	◇	589	東大門區路十里洞 山12	李 龍 鳳	
84	◇	50	◇	82	◇	◇	
85	◇	51	道	82	國		
86	◇	52	番	582	城東區華陽洞	89 朴 開 童	
87	◇	53	◇	584	陵洞	48 金 永 成	
88	◇	54	道	74	國		
89	◇	45	路	66	華陽洞122의 1	鄭 京 千	
90	◇	59	◇	602	杏堂洞	286 鄭 大 順	
91	◇	111	道	49	國		

92	◇	113	番	1,438	杏堂洞 128	安	洙	煥
93	◇	114	道	49	國			
94	◇	115	番	535	松亭洞 226	黃	保	泰
95	◇	116	◇	535	杏堂洞 286	鄭	大	順
96	◇	117	◇	244	華陽洞 127	全	德	浩
97	◇	118	道	24	國			
98	◇	119	◇	47	◇			
99	◇	◇ 120	番	278	杏堂洞 292	金	鍾	秀
100	◇	◇ 121	◇	352	紫陽洞 225	池	春	顯
101	◇	◇ 122	◇	380	杏堂洞 207斗1	金	五	洞
102	◇	◇ 394	◇	392	華陽洞 135	李	德	興
103	◇	◇ 395	◇	576	松亭洞 山1	崔	官	奉
104	城東區 君子洞	205斗401	番	598	君子洞 124	李	性	男
105	◇	◇ 404	◇	612	華陽洞 132斗1	鄭	京	千
106	◇	◇ 405	◇	597	◇ ◇	◇		
107	◇	◇ 406	◇	596	東大門區普門洞 3斗168	柳	貞	春
108	◇	◇ 407	◇	636	◇ ◇	◇		
109	◇	◇ 409	◇	613	城東區毛陳洞 60	池	春	福
110	◇	◇ 410	◇	612	華陽洞 132斗1	鄭	京	千
111	◇	◇ 410	◇	626	君子洞 124	陳	應	浩
112	◇	◇ 412	◇	318	華陽洞 49	吳	桂	孫
113	◇	◇ 413	◇	501	君子洞 26	崔	昌	福
114	◇	◇ 414	◇	599	華陽洞 71	鄭	明	朝
115	◇	◇ 415	◇	599	陵洞 44	朴	正	善
116	◇	◇ 416	◇	241	松亭洞 52	朴	昌	祿
117	◇	◇ 427	◇	591	華陽洞 40	崔	今	廉
118	◇	◇ 422	◇	612	東大門區踏十里洞 322	金	昌	福
119	◇	◇ 423	◇	615	城東區松亭洞 226	黃	保	泰
120	◇	◇ 424	◇	582	下往十里洞 805	金	東	根

121	〃	〃 433	〃	579	毛陳洞 63	李 德 辰
122	〃	〃 434	〃	924	典農洞 428	李 今 成
123	〃	〃 435	田	56	〃	〃
124	〃	〃 436	〃	56	〃	〃
125	〃	〃 437	〃	64	〃	〃
126	〃	〃 439	〃	116	杏堂洞 248	宋 顯 九
127	〃	〃 446	番	338	〃	〃
128	〃	〃 441	田	92	〃	〃
129	〃	〃 442	番	67	〃	〃
130	〃	〃 443	〃	602	〃 286	鄭 大 順
131	〃	〃 444	〃	587	沙斤洞 146	金 雲 山
132	〃	〃 445	〃	595	聖水洞2가1	池 宗 一
133	〃	〃 446	〃	595	陵 洞 410	郭 鍾 國
134	城東區 君子洞	205~447	番	583	城東區華陽洞 64	曹 景 山
135	〃	〃 448	〃	522	〃 43	李 仁 文
136	〃	〃 449	〃	271	陵 洞 44	朴 點 綠
137	〃	〃 450	〃	441	杏堂洞 286	鄭 大 順
138	〃	〃 451	〃	544	〃 128	金 用 峻
139	〃	〃 452	〃	617	聖水洞2가1	池 宗 一
140	〃	〃 453	〃	613	沙斤洞186~2	千 喜 泰
141	〃	〃 454	〃	538	國	
142	〃	〃 455	〃	185	聖水洞2가1	池 宗 一
143	〃	〃 456	〃	94	華陽洞 51	池 順 植
144	〃	〃 457	〃	9	國	
145	〃	〃 458	〃	33	杏堂洞207-1	金 五 同
146	〃	〃 459	田	289	〃	金 五 同
147	〃	〃 460	番	878	華陽洞 71	鄭 明 俊
148	〃	〃 461	〃	118	杏堂洞 128	安 洙 煥
149	〃	〃 502	〃	586	毛陳洞 60	池 春 福

150	〃	〃	503	〃	601	紫陽洞 225	池	春	順
151	〃	〃	504	〃	592	華陽洞 71	鄭	明	朝
152	〃	〃	505	〃	563	君子洞56~5	韓	明	淑
153	〃	〃	712	溝	67		國		
154	〃	〃	716	杏	14		〃		
155	〃	〃	717	〃	19		〃		
156	〃	〃	718	〃	16		〃		
157	〃	〃	719	〃	17	城東區華陽洞 132~1	鄭	京	子
158	〃	〃	720	〃	3	〃	43	李	仁
159	〃	〃	721	〃	30	〃	64	曹	景
160	〃	〃	722	〃	11	陵洞 44	朴	點	綠
161	〃	〃	723	〃	11	〃		〃	
162	〃	〃	724	〃	31	〃	410	郭	鍾
163	〃	〃	725	〃	27	聖水洞2가1	池	宗	一
164	城東區 君子洞	205~726	杏	11	杏堂洞 286	鄭	大	順	
165	〃	〃	727	〃	11	〃	128	金	用
166	〃	〃	728	〃	23	聖水洞2가1	池	宗	一
167	〃	〃	729	〃	24	國			
168	〃	〃	730	〃	25	〃			
169	〃	〃	731	〃	8	東大門區路十里洞 210	安		均
170	〃	〃	732	〃	51	國			
171	〃	〃	733	〃	20	城東區杏堂洞 292	金	鍾	秀
172	〃	〃	734	〃	12		鄭	明	俊
173	〃	〃	735	〃	6			〃	
174	〃	〃	736	〃	30			〃	
175	〃	〃	691	〃	6	國			
176	〃	〃	692	〃	9	〃			
177	〃	〃	693	〃	26	東大門區路十里洞 315	金	仲	文
178	〃	〃	694	〃	23	城東區陵洞 414	安	官	燮

179	〃	〃	695	〃	17	華陽洞 135	鄭 生 得
180	〃	〃	696	〃	14	君子洞 86	裴 壽 煥
181	〃	〃	697	〃	16	〃 59	金 七 山
182	〃	〃	698	〃	21	華陽洞132~1	鄭 京 千
183	〃	〃	689	〃	19	〃	〃
184	〃	〃	700	〃	17	毛陳洞 60	池 春 根
185	〃	〃	701	〃	16	華陽洞132~1	鄭 京 千
186	〃	〃	702	〃	17	普門洞3가168	柳 尙 春
187	〃	〃	703	〃	17	〃	〃
188	〃	〃	704	〃	19	君子洞 124	陳 應 浩
189	〃	〃	772	〃	42	國	
190	〃	〃	773	〃	34	〃	
191	〃	〃	774	溝	46	〃	
192	〃	〃	775	〃	29	〃	
193	〃	〃	776	〃	63	〃	
194	城東區 君子洞	205~777	溝	33	國		
195	〃	〃	778	〃	14	〃	
196	〃	〃	781	畚	27	池 掛 壽	
197	〃	〃	785	〃	15	城東區華陽洞 64	曹 景 山
198	〃	〃	793	〃	19		
199	〃	〃	805	〃	3		
200	〃	〃	801	〃	17		
201	〃	〃	838	田	35	東大門典農洞 428	李 今 成
202	〃	〃	408	畚	613	城東區君子洞 59	金 七 山
203	松亭洞	74~110	〃	222	國		
204	〃	〃	111	〃	39	國	
205	〃	〃	121	〃	219	西大門區 신영동 105~20	裴 聖 淑
206	〃	〃	122	田	578	國	
207	〃	〃	123	〃	611	城東區松亭洞 72	鄭 迷 山

208	◇	◇ 124	番	630	◇	35	池學天
209	◇	◇ 125	◇	601	中谷洞	396	李在榮
210	◇	74~7	◇	402	城東區杏堂洞	256	金顯世
211	◇	◇ 217	◇	13	君子洞	26	崔昌福
212	◇	◇ 218	◇	10	東大門區昌信洞	464~8	尹吉福
213	◇	◇ 219	◇	12	松亭洞	72	金福龍
214	◇	◇ 220	◇	15			吳桂孫
215	◇	◇ 221	◇	16	杏堂洞	256	金顯世
216	◇	◇ 222	溝	66			國
217	◇	◇ 223	番	25	中谷洞	396	李在榮
218	◇	◇ 224	溝	22			國
219	◇	◇ 225	番	27	松亭洞	35	池學天
220	◇	◇ 226	溝	30			國
221	◇	◇ 227	◇	104			◇
222	◇	◇ 228	◇	79			
223	◇	◇ 229	◇	59			◇
224	城東區 松亭洞	74~230	溝	13			國
225	◇	◇ 138	番	19	華陽洞	152~1	鄭京子
226	◇	◇ 137	◇	4	東大門區昌信洞	464~8	尹吉福
227	◇	◇ 270	◇	5	松亭洞	72	金福龍
228	◇	◇ 215	溝	86			國
229	◇	◇ 14	番	1,136	城東區仁陳洞	15	朴今奉
230	◇	◇ 8	◇	530	◇	12	
231	◇	◇ 271	◇	582	松亭洞	72	金福龍
232	◇	◇ 273	◇	587	東大門區昌信洞	464~8	尹吉福
233	◇	◇ 274	◇	16			國
234	◇	◇ 211	◇	39			◇
235	◇	◇ 212	◇	38	城東區華陽洞	132~1	鄭京千
236	◇	◇ 213	◇	37	東大門區昌信洞	464~8	尹吉福

237	◇	◇	214	◇	30	城東區松亭洞	72	金 福 龍
238	◇	◇	9	◇	19	華陽洞	43	李 仁 文
239	◇	◇	10	◇	44	◇	◇	◇
240	◇	◇	11	◇	575	陵 洞	44	朴 點 祿
241	◇	◇	12	◇	83	◇	◇	◇
242	◇	◇	141	◇	345	君子洞	10	鄭 明 雲
243	◇	◇	142	◇	632	◇	◇	◇
244	◇	◇	143	◇	154	◇	國	◇
245	◇	◇	144	◇	508	◇	◇	◇
246	◇	◇	145	◇	404	君子洞	26	崔 昌 福
247	◇	◇	146	◇	73	◇	國	◇
248	◇	◇	147	◇	88	君子洞	26	崔 昌 福
249	◇	◇	148	◇	595	陵 洞	381	郭 元 吉
250	◇	◇	149	◇	61	東大門區踏十里洞	12	李 龍 鳳
251	◇	◇	150	◇	291	◇	◇	◇
252	◇	◇	151	◇	62	◇	◇	◇
253	◇	◇	152	◇	63	◇	◇	◇
254	城東區松亭洞	74	153	◇	77	東大門區踏十里洞	12	李 龍 鳳
255	◇	◇	154	◇	86	◇	◇	◇
256	◇	◇	155	◇	162	城東區下往十里洞	573	鄭 玉 粉
257	◇	◇	156	◇	294	◇	◇	◇
258	◇	◇	157	◇	79	◇	◇	◇
259	◇	◇	158	◇	50	◇	◇	◇
260	◇	◇	289	◇	18	◇	國	◇
261	◇	◇	159	◇	50	上往十里	214	咸 允 成
262	◇	◇	160	◇	181	下往十里洞	621	咸 英 振
263	◇	◇	161	◇	161	◇	◇	◇
264	◇	◇	162	◇	87	◇	◇	◇
265	◇	◇	163	◇	651	松亭洞	72	金 壽 安

266	◇	◇	164	◇	682	東大門區 番十里洞山 12	南	白	斤	萬
267	◇	◇	165	◇	548	典農洞530의9	姜	星	學	
268	◇	◇	166	◇	159	◇	◇			
269	◇	◇	167	◇	408	國				
270	◇	◇	168	◇	264	城東區杏堂洞 305	李	達	植	
271	◇	◇	169	◇	669	松亭洞 72	金	福	黃	
272	◇	◇	170	◇	973	普門洞3斗168	柳	尙	春	
273	◇	◇	171	◇	646	華陽洞 71	鄭	明	德	
274	◇	◇	172	◇	495	◇ 51	池	順	植	
275	◇	◇	173	◇	415	上往十里洞10의8	尹	芸	昌	
276	◇	◇	174	◇	298	華陽洞 37	金	德	浩	
277	◇	◇	175	◇	11	杏堂洞207의1	金	五	同	
278	◇	◇	176	◇	100	◇	◇			
279	◇	◇	177	◇	364	沙斤洞 146	金	雲	山	
280	◇	◇	178	◇	67	國				
281	◇	◇	179	◇	604	華陽洞 132	趙	鎮	國	
282	◇	◇	180	◇	528	杏堂洞 215	白	南	興	
283	◇	◇	181	◇	555	◇	白	蓮	蓓	
284	◇	◇	182	◇	124	西大門區 신영동105의20	裴	聖	淑	
285	城東區 松亭洞	74의	183	番	341	城東區杏堂洞 305	李	達	植	
286	◇	◇	184	◇	154	華陽洞 99	尹	宗	實	
287	◇	◇	185	◇	453	東大門區 踏十里洞山12	金	梧	鳳	
288	◇	◇	186	◇	3	普門洞3斗168	柳	尙	春	
289	◇	◇	187	◇	157	典農洞 136	金	鳳	來	
290	◇	◇	188	◇	319	西大門區 신영동105의20	裴	聖	淑	
291	◇	◇	189	◇	183	杏堂洞 305	李	達	植	
292	◇	◇	190	◇	512	西大門區 신영동105의20	裴	聖	淑	
293	◇	◇	191	◇	137	杏堂洞 296	李	三	童	
294	◇	◇	192	◇	444	東大門區 踏十里洞山12	任	三	童	

295	◇	◇ 193	◇	153	西大門區 신영동105의20	夏 聖 淑
296	◇	◇ 194	◇	444	華陽洞 99	尹 宗 實
297	◇	◇ 195	◇	75	典農洞 136	金 鳳 來
298	◇	◇ 196	◇	398	◇	◇
299	◇	◇ 197	◇	192	西大門區 신영동105의20	夏 聖 淑
300	◇	◇ 198	◇	263	◇	◇
301	◇	◇ 199	◇	171	◇	◇
302	◇	◇ 200	◇	318	東大門區 典農洞 136	金 鳳 來
303	◇	◇ 201	◇	456	◇	◇
304	◇	◇ 202	◇	544	◇ 408	金 鳳 春
305	◇	◇ 203	◇	489	◇	◇
306	◇	◇ 205	◇	780	◇ 130	金 鳳 來
307	◇	◇ 206	◇	308	◇	◇
308	◇	◇ 204	◇	241	國	
309	◇	◇ 207	◇	205	杏堂洞 299	崔 三 童
310	◇	◇ 13	◇	188	君子洞 26	崔 昌 福
311	◇	◇ 275	◇	62	國	
312	◇	◇ 276	◇	33	◇	
313	◇	◇ 277	◇	31	◇	
314	◇	◇ 278	◇	10	◇	
315	◇	74의279	番	48	國	
316	◇	◇ 280	◇	69	◇	
317	◇	◇ 281	◇	22	◇	
318	◇	◇ 282	◇	30	◇	
319	◇	◇ 283	◇	27	◇	
320	◇	◇ 284	◇	31	◇	
321	◇	◇ 285	◇	26	◇	
322	◇	◇ 287	◇	25	◇	
323	◇	◇ 289	吳	38	◇	

324	◇	◇ 290	番	47	城東區陵洞	381	郭 元 先	
325	◇	◇ 291	◇	1	◇		◇	
326	◇	◇ 292	◇	4		國		
327	◇	◇ 293	◇	3		◇		
328	◇	◇ 294	◇	11		◇		
329	◇	74의 295	◇	7		◇		
330	◇	◇ 296	溝	827		◇		
331	◇	◇ 231	◇	7		◇		
332	◇	◇ 232	◇	46		◇		
333	◇	◇ 233	◇	13		◇		
334	◇	◇ 234	◇	10		◇		
335	◇	◇ 225	◇	11	上往十里214	咸 允 成		
336	◇	◇ 236	番	5	君子洞	26 崔 昌 福		
337	◇	◇ 237	◇	29	上往十里洞214	咸 允 成		
338	◇	◇ 238	◇	26	東大門區 踏十里洞山12	李 龍 鳳		
339	◇	◇ 239	◇	24		國		
340	◇	◇ 250	溝	775		◇		
341	◇	◇ 251	番	13		◇		
342	◇	◇ 252	溝	15		◇		
343	◇	◇ 253	◇	20		◇		
344	城東區 松亭洞	74의 254	溝	21		國		
345	◇	◇ 255	◇	27		◇		
346	◇	◇ 256	◇	20		◇		
347	◇	◇ 257	◇	0.8		◇		
348	◇	◇ 260	◇	73		◇		
349	◇	◇ 261	◇	5		◇		
350	◇	◇ 262	◇	20		◇		
351	◇	◇ 263	◇	56		◇		
352	◇	◇ 264	◇	31		◇		

353	◇	◇	265	◇	29	◇		
354	◇	◇	266	◇	46	◇		
355	◇	◇	268	奎	32	◇		
356	◇	◇	269	◇	34	◇		
357	◇	◇	257	◇	0.8	◇		
348	◇	◇	260	◇	73	◇		
349	◇	◇	261	◇	5	◇		
350	◇	◇	262	◇	20	◇		
351	◇	◇	263	◇	56	◇		
352	◇	◇	264	◇	31	◇		
353	◇	◇	265	◇	29	◇		
354	◇	◇	266	◇	46	◇		
355	◇	◇	268	◇	32	◇		
356	◇	◇	269	◇	34	◇		
356	◇	◇	99	◇	375	君子洞 57	趙 昌 植	
357	◇	◇	15	◇	225	◇ 10	鄭 明 雲	
358	◇	◇	2	◇	196	國		
359	◇	◇	21	道	244	◇		
360	◇	◇	22	番	487	君子洞 32	崔 先 福	
361	◇	◇	24	◇	523	毛陳洞 62	朴 允 山	
362	◇	◇	25	◇	219	紫陽洞 225	池 春 順	
363	◇	◇	26	◇	73	杏堂洞207의1	金 五 同	
364	◇	◇	27	◇	268	◇	◇	
365	◇	◇	28	溝	48	國		
366	◇	◇	29	番	304	華陽洞 37	金 德 浩	
367	◇	◇	30	◇	48	杏堂洞 215	白 蓮 基	
368	◇	◇	31	◇	569			
369	◇	◇	34	◇	288	踏十里洞山12	金 梧 鳳	
370	◇	◇	35	◇	510	典農洞 408	金 鳳 春	

371	◇	◇	36	道	32	國	
372	◇	◇	37	番	10	西大門區 신영동105의20	寶 聖 淑
373	◇	74의38	番	42	◇		寶 聖 淑
374	◇	◇	39	◇	23	◇	◇
375	◇	◇	40	◇	281	國	
376	◇	◇	42	道	30	◇	
377	◇	◇	43	番	258	◇	
378	◇	◇	45	堤	797	◇	
379	◇	◇	46	林	79	◇	
380	◇	◇	47	溜池	71	◇	
381	◇	◇	48	番	672	◇	
382	◇	◇	49	溝	269	◇	
383	◇	◇	50	◇	152	◇	
384	◇	◇	51	林	15	◇	
385	◇	◇	52	道	9	◇	
386	◇	◇	53	河川	1,089	◇	
387	◇	◇	54	道	19	◇	
388	◇	◇	55	番	262	◇	
389	◇	◇	56	◇	461	◇	
390	◇	◇	57	溝	75	◇	
391	◇	◇	58	◇	85	◇	
392	◇	◇	60	番	1,291	◇	
393	◇	◇	62	◇	69	◇	
394	◇	◇	63	堤	2,114	◇	
395	◇	◇	64	道	49	◇	
396	◇	◇	65	番	869	◇	
397	◇	◇	66	溜池	465	◇	
398	◇	◇	67	番	787	◇	
399	◇	◇	79	◇	284	城東區松亭洞 72	金 壽 安

400	〃	〃	80	〃	417	東大門區 踏十里洞山12	陳 春 回
401	〃	〃	81	〃	5	國	
402	〃	〃	82	〃	131	踏十里洞山12	陳 春 回
403	城東區 松亭洞	74의83	番		61	下往十里洞674의4	金 順 煥
404	〃	〃	84	堤	70	國	
405	〃	〃	85	番	6	〃	
406	〃	〃	86	〃	34	〃	
407	〃	〃	87	〃	158	君子堂 57	趙 昌 植
408	〃	〃	88	〃	264	下往十里洞 707	金 壽 英
409	〃	〃	121	〃	219	西大門區 신영동105의20	裒 聖 淑
410	〃	〃	126	〃	289	毛 陳 洞15	朴 今 奉
411	〃	〃	127	〃	421	〃	〃
412	〃	〃	128	〃	811	松亭洞 72	呂 振 國
413	〃	〃	129	〃	529	〃	〃
414	〃	〃	130	〃	126	〃	金 壽 安
415	〃	〃	131	〃	52	〃	〃
416	〃	〃	132	〃	128	踏十里洞山12	陳 春 會
417	〃	〃	133	〃	1,177	下往十里洞674의4	金 順 煥
418	〃	〃	134	〃	687	〃 707	金 壽 英
419	〃	〃	135	〃	136	國	
420	〃	〃	249	〃	44	杏堂洞 215	白 南 奧
421	〃	〃	59	溝	10	國	
422	〃	〃	146	田	52	毛陳洞 15	朴 今 奉
423	〃	〃	139	番	515	華陽洞132의1	鄭 京 千
424	〃	〃	140	〃	330	國	
425	〃	〃	78의2	堤	1,342	〃	〃
426	〃	〃	3	番	3,521	〃	〃
427	〃	〃	4	〃	5,444	〃	〃
428	〃	〃	5	〃	450	〃	〃

429	◇	◇	6	◇	43	◇			
430	◇	◇	7	溝	110	◇			
431	◇	◇	8	堤	1,052	◇			
432	◇	75의1	河川		583	◇			
433	城東區 松亭洞	75의3	堤		638	國			
434	◇	◇	48	◇	380	◇			
435	◇	◇	49	畓	39	◇			
436	◇	73의36	◇		49	◇			
437	◇	◇	38	林	6,370	◇			
438	◇	◇	39	河川	446	◇			
439	◇	◇	40	畓	271	◇			
440	◇	◇	41	◇	379	◇			
441	◇	◇	42	◇	217	◇			
442	◇	◇	44	◇	476	◇			
443	◇	◇	45	◇	1,021	◇			
444	◇	◇	46	◇	149	◇			
445	◇	◇	47	◇	517	◇			
446	◇	◇	70	◇	116	◇			
447	◇	◇	76	堤	235	◇			
448	◇	◇	77	◇	1,471	◇			
449	◇	◇	116	田	18	◇			
450	◇	◇	260	畓	21	◇			
451	◇	◇	261	◇	35	◇			
452	◇	◇	262	◇	7	◇			
453	◇	◇	293	◇	12	◇			
454	◇	◇	264	◇	13	◇			
455	◇	◇	268	◇	31	◇			
456	◇	◇	275	田	24	◇			
457	◇	◇	289	畓	41	國	萬 明 俊		
458	◇	◇	305	◇	50				

459	◇	◇ 306	◇	41	◇				
460	◇	◇ 307	◇	51	◇				
461	◇	◇ 308	◇	57	◇				
462	◇	◇ 309	溝	4	◇				
463	◇	73의 310	畝	20	◇	國			
464	◇	◇ 311	◇	28	◇				
465	◇	◇ 312	◇	54	◇				
466	◇	◇ 313	◇	53	◇				
467	◇	◇ 314	◇	26	◇				
468	◇	◇ 315	◇	1	◇				
469	◇	◇ 316	溝	28	◇				
470	◇	◇ 317	畝	121	◇				
471	◇	◇ 319	溝	237	◇				
472	◇	◇ 320	畝	1,890	◇				
473	◇	◇ 321	◇	304	◇				
474	◇	◇ 322	◇	263	◇				
475	◇	◇ 323	◇	8	◇				
476	◇	◇ 324	溝	33	◇				
477	◇	◇ 325	溝	22	◇				
478	◇	◇ 326	畝	1,310	◇				
479	◇	◇ 327	◇	84	◇				
480	◇	◇ 328	溝	70	◇				
481	◇	◇ 329	畝	283	◇				
482	◇	◇ 330	◇	40	◇				
483	◇	◇ 331	◇	105	◇				
484	◇	◇ 332	◇	148	◇				
485	◇	◇ 333	◇	79	◇				
486	◇	◇ 334	溝	7	◇				
487	◇	◇ 335	畝	755	◇				

488	◇	◇	336	溝	158	◇
489	◇	◇	337	畚	159	◇
490	◇	◇	338	◇	275	◇
491	◇	◇	339	◇	428	◇
492	城東區 松亭洞	73의	341	畚	941	國
493	◇	◇	342	◇	933	◇
494	◇	◇	343	◇	2,261	◇
495	◇	◇	344	◇	1,228	◇
496	◇	◇	345	◇	1,197	◇
497	◇	◇	346	◇	556	◇
498	◇	◇	347	溝	75	◇
499	◇	◇	348	畚	400	◇
500	◇	◇	349	◇	277	◇
501	◇	◇	350	◇	78	◇
502	◇	◇	351	◇	100	◇
503	◇	◇	352	◇	152	◇
504	◇	◇	353	◇	94	◇
505	◇	◇	354	◇	11	◇
506	◇	◇	355	溝	637	◇
507	◇	◇	356	畚	607	◇
508	◇	◇	357	◇	190	◇
509	◇	◇	358	◇	699	◇
510	◇	◇	359	◇	617	◇
511	◇	◇	360	◇	1,363	◇
512	◇	◇	361	◇	461	◇
513	◇	◇	362	◇	492	◇
514	◇	◇	363	◇	358	◇
515	◇	◇	364	◇	860	◇
516	◇	◇	366	◇	137	◇
517	◇	◇	367	◇	591	◇

518	◇	◇ 368	◇	517	◇
519	◇	◇ 369	溝	161	◇
520	城東鳳 松亭洞	73의 370	溝	26	◇
521	◇	◇ 371	畚	1	◇
522	◇	◇ 372	◇	172	◇
523	◇	◇ 373	◇	239	◇
524	◇	◇ 374	◇	286	◇
525	◇	◇ 375	◇	1,319	◇
526	◇	◇ 376	溝	14	◇
527	◇	◇ 377	堤	130	◇
528	◇	◇ 379	溝	645	◇
529	◇	◇ 380	畚	1,255	◇
530	◇	◇ 381	◇	149	◇
531	◇	◇ 382	◇	589	◇
532	◇	◇ 383	◇	603	◇
533	◇	◇ 384	◇	118	◇
354	◇	◇ 385	◇	187	◇
535	◇	◇ 368	溝	15	◇
536	◇	◇ 387	畚	77	◇
537	◇	◇ 388	◇	138	◇
538	◇	◇ 389	◇	301	◇
539	◇	◇ 390	◇	344	◇
540	◇	◇ 391	◇	209	◇
541	◇	◇ 392	◇	184	◇
542	◇	◇ 393	◇	708	◇
543	◇	◇ 394	釜	39	◇
544	◇	◇ 395	畚	415	◇
545	◇	◇ 396	◇	414	◇
546	◇	◇ 397	◇	138	◇

547	◇	◇	365	◇	9	◇			
548	咸安區 松亭洞	73의	258	番	9	國			
549	◇	◇	259	◇	26	◇			
550	◇	◇	265	◇	56	◇			
551	◇	◇	266	◇	6	◇			
552	◇	◇	102	◇	9	◇	金	用	峻
553	◇	74의	112	◇	275	◇	吳	桂	孫
554	◇	◇	113	◇	88	◇	崔	昌	福
555	◇	◇	114	◇	518	◇	朴	點	錄
556	◇	◇	115	◇	317	◇			
557	◇	◇	116	◇	150	◇			
558	◇	◇	117	◇	60		金	用	峻
559	◇	◇	136	田	52	毛陳洞	15	朴	今
560	◇	◇	272	番	17	國			
561	◇	◇	19	◇	108	上往十里洞	214	咸	尤
562	◇	◇	240	田	26	國			
563	◇	◇	33	番	73	◇			
564	◇	◇	233	◇	13	◇			
565	◇	◇	268	◇	32	◇			
566	◇	◇	269	◇	34	◇			
567	◇	◇	61	◇	18				
568	◇	78의	1	溝	22718	◇			
569	◇	73의	267	番	12	◇			
570	君子洞	205의	693	溝	26	踏十里洞	315	金	仲
571	◇	◇	438	番	35	典典洞	428	李	今
572	◇	◇	779	◇	31	國			
573	◇	◇	754	溝	23	踏十里洞	20	安	均
574	◇	◇	805	番	3	國			

◎서울특별시공고제84호

당시에서는 판매 생산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애용장려와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을 위하여 우량공산품 심사를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오니 많은 출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대상기업체 : 공장등록을 필하고 생산신고를 이행하는 업체
2. 출품점수 : 출품되는 물건당 2점씩
3. 접수기간 : 자 1966. 5. 30
지 1966. 6. 30
4. 접 수 처 : 당시 산업국공업과
5. 출품신청시 교부처
6. 우량공산품의관리

우량공산품으로 확정된 출품에 대하여는 그생산기업체 및 제품의우수성을 국내에 널리 피, 알, 하고 운영자금융자 수출진흥등 기업육성시책반영에 우선적으로 대우함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시 산업국공업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기 1966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85호

나무부고시제23호(52. 3. 25)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영천—내자동간도로 신설공사 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을 수용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공사명 영천—내자동간 도로신설공사
2. 지장물및 토지의 세목(별첨 조서와 같음)

서기 1966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土 地 調 査

一連 番號	分割前表示		地目	分割後表示		所 有 者	
	地 番	坪數		地 番	坪數	住 所	姓 名
1	社稷洞 2	59	丘	社稷洞 1	59	社稷洞 2	崔復洙

2	◇ 3	14	◇ 3	14	◇ 231	金永慶
3	◇ 227-2	23	◇ 227-2	23	◇ 227-2	朴光淑
4	◇ 225-2	19	◇ 225-2	19	◇ 275-2	李東海
5	◇ 223	20	◇ 223	20	內需洞 120	大奉廷玉
6	◇ 224	22	◇ 224	22	社稷洞 224	尹工順
7	◇ 278	37	◇ 278	37	◇ 278	安秉國
8	◇ 276	12.2	◇ 276	12.2	◇ 276	崔順女
9	◇ 276-1	6.7	◇ 276-1	6.7	◇	◇
10	◇ 235-1	12	◇ 235-1	12	◇ 235-1	具本順
11	◇ 235-2	13	◇ 235-2	13	◇ 235-2	朴英子
12	◇ 236	20	◇ 236	20	◇ 236	金相順
13	◇ 262-95	17	◇ 262-95	17	◇ 262-95	安聖孝
14	◇ 262-80	42.3	◇ 262-80	42.3	◇ 135-4	全鍾汶
15	◇ 242	6	◇ 246	6	◇ 218	權丁順
16	◇ 257	58	◇ 257	58	◇ 257	尹相儀
17	◇ 256-1	6.3	◇ 256-1	6.3	◇ 254-4	金永坤
18	◇ 256-2	17.7	◇ 256-2	17.7	◇ 256	李善昌
19	◇ 255-1	16.9	◇ 255-1	16.9	◇ 262-2	俞燦
20	◇ 255-2	3.4	◇ 255-2	3.4	◇ 212-2	◇
21	社稷洞252-1	28.5	社稷洞252-1	28.5	社稷洞252-1	朱奉龍
22	◇ 254-3	31	◇ 254-3	31	◇ 254-1	李貞松
23	◇ 265-1	32.7	◇ 265-1	32.7	桂洞15-17	金慶培
24	◇ 265-2	5.3	◇ 265-2	5.3	社稷洞265-2	徐向雲
25	◇ 266	21	◇ 266	21	◇ 266	金順姬
26	◇ 277-1	5.6	◇ 277-1	5.6	司錄洞 87	尹象赫
27	◇ 44-1	28	◇ 44-3	3.2	光山郡松訂邑松 訂里567-1	徐南徽
28	◇ 43-2	37	◇ 43-3	32.4	社稷洞43	俞時鉉
29	◇ 42	23	◇ 42-2	14.9	◇ 42	吳其明
30	◇ 37	45	◇ 37-2	16.4	◇ 37	李弼鎔

31	◇ 36-1	55	◇	◇ 36-3	16.4	◇ 36-1	吳 學 鎮
32	◇ 36-2	4	◇	◇ 36-2	2	◇	◇
33	◇ 36	35	◇	◇ 35-2	5.3	◇ 35	吳 文 燮
34	◇ 34	17	◇	◇ 34-2	42	◇	◇
35	◇ 33-1	18	◇	◇ 33-3	1.2	◇ 33-1	金 載 桓
36	◇ 33-2	20	◇	◇ 33-4	1.9	◇ 33-2	姜 福 順
37	◇ 8-1	43	◇	◇ 8-10	1.2	唐 珠 洞28	李 珉 載
38	◇ 8-2	56	◇	◇ 8-11	1.7	西小門洞58-20	金 子 善
39	◇ 7-1	177.9	◇	◇ 7-3	47.5	社稷洞7-1	吳 權 善
40	◇ 5	18	◇	◇ 5-2	13.8	◇ 5	朴 英 玉
41	◇ 6	61	◇	◇ 6-2	2.8	◇	柳 炯 址
42	◇ 6	61	◇	◇ 6-3	1.7	◇	◇
43	社稷洞 4	7	◇	社稷洞4-2	4.4	社稷洞 194	沈 熙 昌
44	◇ 221	47	◇	◇ 221-2	0.7	◇ 221	吳 仲 根
45	◇ 210	43	◇	◇ 210-2	5.1	◇ 311-11	李 正 惠
46	◇	◇	◇	◇ 210-3	0.2	◇	◇
47	◇ 209	20	◇	◇ 209-1	19.3	◇ 209	表 完 鶴
48	◇ 237	25	◇	◇ 237-2	11	◇ 237	千 好 鉉
49	◇ 238-1	17	◇	◇ 238-4	9.2	◇ 238-1	趙 熙 元
50	◇ 238-2	28	◇	◇ 238-3	14.7	◇	◇
51	◇ 227	19	◇	◇ 227-4	0.1	◇ 227-1	鄭 雲 建
52	◇ 227-3	12	◇	◇ 227-6	11.5	◇ 227-2	朴 光 淑
53	◇ 225-1	28	◇	◇ 225-3	19	◇ 225-1	金 明 熙
54	◇ 232	39	◇	◇ 232-2	0.9	◇ 212-4	成 榮 善
55	◇ 233	24	◇	◇ 233-2	21.1	◇ 233	沈 相 祚
56	◇ 234	25	◇	◇ 234-2	16.5	芋洞1가 46	川村原一郎
57	◇ 262-2	21	◇	◇ 262-128	11	社稷洞262-2	朴 壽 圭
58	◇ 262-79	114.5	◇	◇ 262-129	24.5	◇ 262-79	宋 秉 暉
59	◇ 262-88	63.2	◇	◇ 262-130	47.5	◇ 262-1	金 成 烈

60	◇ 262-89	27	◇ ◇ 262-132	26.4	都 染 洞 82	朴 魯 乙
61	◇ 262-92	25.8	◇ ◇ 262-133	22.3	社稷洞 262-85	徐 普
62	◇ 262-93	10.2	◇ ◇ 262-93	8.5	都 染 洞 82	朴 魯 乙
63	◇ 241-1	27	◇ ◇ 241-1	6.3	素砂邑流谷里 598	文 士 允
64	◇ 243	19	◇ ◇ 243-2	10.9	社稷洞 243	金 宗 圭
65	社稷洞 259	25	堡 社稷洞 259-2	7	社稷洞 259	廣 元 興
66	◇ 254-1	136	◇ ◇ 254-4	47	◇ 254-1	李 貞 松
67	◇ 254-2	40	◇ ◇ 254-5	35	◇ 254-1	金 永 坤
68	◇ 264-4	26	◇ ◇ 264-5	18	◇ 264-4	金 壽 鎭
69	◇ 267	18	◇ ◇ 267-2	8.7	◇ 267	張 邦 佑
70	◇ 270	64	◇ ◇ 270-2	0.8	◇ 270	韓 東 燮
71	◇ 271	23	◇ ◇ 271-2	18	◇ 271	權 重 許
72	◇ 272	17	◇ ◇ 272-2	16.8	◇ 272	尹 彦 植
73	◇ 279	58	◇ ◇ 279-2	17	◇ 279	李 聖 寬
74	◇ 273	42	◇ ◇ 273-2	40.2	◇ 273	高 禹 相
75	◇ 274	11	◇ ◇ 274-4	10.5	◇ 310-1	柳 在 根
76	◇ 274-2	12	◇ ◇ 274-3	10	靈 泉 洞 84	朴 商 珍
77	◇ 275	36	◇ ◇ 275-2	34.6	◇ 275	嚴 舜 鎭
78	◇ 252-2	215	◇ ◇ 252-2	20.8	◇ 252-2	尹 壽 鳳

支 障 物 調 査

一連 番號	所 在 地		構 造	總坪數	收用 坪數	所 有 者		備 考
	洞名	地 番				住 所	姓 名	
1	社稷洞	278	木造瓦葺	16.5	16.5	社稷洞 278	安東洞	
2	◇	279	◇	12	12	◇ 279	李聖寬	實測 依計測 收用坪數調整
3	◇	◇	木造 鉆 丹 葺	5	5	◇	◇	
4	◇	272	木造瓦葺	7.23	7.23	◇ 272	尹彦植	
5	◇	275	木造草葺	13.05	13.05	◇ 275	嚴舜鎭	
6	◇	274-2	◇	6	6	靈泉洞 84	朴商珍	

7	社稷洞	274-1	◇	8.14	8.14	社稷洞274-1	柳在根	
8	◇	271	◇	11.75	11.75	◇ 271	權英圭	
9	◇	266	木造瓦葺	10.882	10.882	◇ 266	金順姬	
10	◇	264-4	◇	15	15	◇ 264-4	池玉蘭	
11	◇	254	◇	34.71	34.71	◇ 254	李貞松	
12	◇	252-2	木造瓦葺	6	6	◇ 252-2	李鳳恒	
13	◇	255-1 256	木造瓦葺	10	10	◇ 255	尹好善	
14	◇	256-2	◇	10.76	10.76	◇ 256-2	李善潤	
15	◇	254-2	◇	18	18	◇ 254-2	金永坤	
16	◇	257	◇	24.98	24.98	◇ 257	尹相復	
17	◇	259	◇	15.74	15.74	◇ 259	盧元興	
18	◇	262-89	◇	9.01	9.01	都染洞 82	朴魯乙	
19	◇	243	◇	9.41	9.41	社稷洞243	金宗圭	
20	◇	241	◇	11	11	萊砂邑梁谷里 596	文士允	
21	◇	242	木造草葺	4.34	4.34	社稷洞242	權丁順	
22	◇	262-85	木造瓦葺	33.87	33.87	◇ 262-83	徐丹善	
23	◇	238-2	◇	14	14	◇ 238-1	趙熙元	
24	◇	238-1	◇	10	10	◇	◇	
25	◇	237	◇	13.54	13.54	◇ 237	千好鉉	實測에 依하여 收用坪數調整함
26	◇	262-80	◇	14.31	14.31	留善洞135-4	金鍾致	
27	◇	262-79	◇	46	46	社稷洞267-79	宋秉暉	實測에 依하여 收用坪數調整함
28	◇	209	木造草葺	9.42	9.42	銅雲洞274	裴萬基	
29	◇	262-2	木造瓦葺	11.42	11.42	社稷洞262-2	朴慈圭	實測에 依하여 收用坪數調整함
30	◇	236	木造草葺	8.92	8.92	◇ 236	金福一	
31	◇	210	木造瓦葺	16.64	16.64	◇ 262-18	南基成	實測에 依하여 收用坪數調整함
32	◇	235-2	◇	7.49	7.49	◇ 235-2	朴英子	
33	◇	235-1	◇	8	8	◇ 235-1	具本附	
34	◇	233	◇	11	11	◇ 233	沈相佑	
35	◇	232	◇	18	18	◇ 262-4	成樂善	實測에 依하여 收用坪數調整함

36	◇	225-1	◇	12	12	◇ 225-1	金湖熙
37	◇	225-2	◇	8.76	8.76	◇ 225-2	金聖甲
38	◇	◇	木造 鈗 丹 葺	1	1	◇	◇
39	◇	224	木造草葺	11	11	◇ 224	尹玉順
40	◇	227-2	木造瓦葺	10	10	◇ 227-2	朴爽鉉
41	◇	227-3	◇	6.36	6.36	◇ 227-3	朴光波
42	◇	223	木造草葺	17	17	◇ 223	徐廷玉
43	社稷洞	4	木造瓦葺	5.79	5.79	社稷洞 4	沈熙昌
44	◇	3	◇	9.93	9.93	◇ 3	金永璣
45	◇	2	◇	2.64	2.64	◇ 2	崔復津
46	◇	◇	木造草葺	13.08	13.08	◇	◇
47	◇	5	木造瓦葺	8.24	8.24	◇ 5	朴英玉
48	◇	7-1	◇	41	41	◇ 7-1	吳桂善
49	◇	33-2	◇	10	10	◇ 33-2	金誠穆
50	◇	33-1	◇	8	8	◇ 33-1	柳昌鉉
51	◇	37	瓦葺 木造 世 鈗 葺	45.48	45.48	◇ 37	李勇鎭
52	◇	35 36	瓦葺 木造 鈗 丹 葺	44.94	44.94	◇ 36-1	姜必順
53	◇	42	木造瓦葺	8.82	8.82	內灘 眞山王里 184	崔點獻
54	◇	43	木造草葺	10.33	10.33	社稷洞 43	俞時鉉
55	◇	◇	木造瓦葺	7	7	◇ 43	俞彦順
56	◇	◇	◇	24	24	松汀邑 松汀里 567-1	徐南澈

◎서울특별시공고제86호(1차)

유문개장공고

당시 용산구 한강로 1가 177 구봉각사 후측 1필 경도의 가진물에 화강유문 및 위폐등이 다수 보관되어 있는바 이는 도심에 소재함으로서 미관상 또는 시민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당시 공동묘지 (벽제리)에 개장하고자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와 등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니 연고자들은 이 공고기간내에 찾아가시

기 바라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무연 유골로 간주하고
당시에서 매장함

공	고	기	간	개장구분	개 장 장 소
시	기	1966년	5월 23일—11월 29일	합동매장	서울특별시제1공동묘지
시					
기 1966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87호

시내 영업용차량 임시검사 실시

시내에서 운행중인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 검사를 실시
리로 되었으니 기간내에 빠짐 없이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영업용버스(일반버스 급행버스 관광버스) 합승택시

2. 시행기간

가. 1966년 6월 1일 현재 계속검사(신규검사 제외)를 받고 3개월이 경과
되는 차량은 1966년 6월 1일 부터 1966년 6월 30일 까지

나. 1966년 6월 2일 부터 1966년 6월 30일 사이에 3개월이 경과되는 차량
은 1966년 7월 1일 부터 1966년 7월 9일 까지

다. 전 각항의외의 차량은 3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5일 이내

3. 실시요령

계속검사와 동일한 요령으로 실시함

4. 조치사항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휴일에도 검사를 실시함

5. 만일 임시 검사를 기한내에 수검치 않을 시는 도로운행 차량법 제51조
2항에 따른 처벌규정에 의거 의법 조치를 받게됨

시 기 1966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88호

도로 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서기 1966년 5월 27일

공고자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도로의 종류 소 로
2. 로 선 명
3. 사용폐지구간 자. 중구 초동 21의 1 지. 중구 초동 21의 1(20미터)
4. 비 고

◎서울특별시공고제89호

도로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서기 1966년 5월 27일

공고자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도로의 종류 소 로
2. 로 선 명
3. 사용폐지구간 자. 목경동 22의 22 지. 목경동 22의 22(17미터)
4. 비 고 관계 도면은 도시계획국 계획과 및 중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서중공고제80호

도로 정용 허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정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서기 1966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도 로 의 종 류	보 도	로 선 명
-----------	-----	-------

(176) 공 고

점 용 목 적	정 원	점 용 기 간	1966. 5. 2 1966. 10. 31
점 용 장 소	종로구 가회동 123의2 124앞	점 용 면 적	14.625M ²
점 용 물 의 종 류	도 토	공 사 기 간	
공 사 실 시 의 방 법		기 타 사 항	
도로의 복구 방법			
점용자의 주소 성명	종로구 가회동 123 의 2 박종식		

◎서종공고제91호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서기 1966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도 로 의 종 류	인 도	로 선 명	
점 용 목 적	정 원	점 용 기 간	1966. 5. 16 1967. 4. 30
점 용 장 소	종로 6가 12--13앞	점 용 면 적	30.45M ²
점 용 물 의 종 류		공 사 기 간	
공 사 실 시 의 방 법		기 타 사 항	
도로의 복구 방법			
점용자의 주소 성명	종로 6가 12-13 손 대 식		

◎서종공고제92호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서기 1966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도 로 의 종 류	폐도화된 도로	로 선 명	
점 용 목 적	정 원	점 용 기 간	1966. 5. 16 1967. 4. 30
점 용 장 소	종로 6가 12의 14	점 용 면 적	45㎡
점 용 물 의 종 류	도 로	공 사 기 간	
공사 실시의 방법		기 타 사 항	
도로의 복구 방법			
점용자의 주소 성명	종로 6가 12의 14 우 상 하		

◎서성공고제7호

독점 및 광나루 유원지내 계절적 하천부지 임시 점용허가문 다음과 같이 규정함

가. 허가지역 독점 및 광나루 유원지

나. 허가종별 탈위장 및 매점

다. 허가 대상자

(1) 1963년도에 유원지 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는자로 허가 조건을 충실이 이행한자.

(2) 유원지 개설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대 또는 중개업을 하지 않고 직접 경영한자

라. 구비서류를 완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한다

마. 구 비 서 류

(1) 소정의 신청서 5통 (당구청 건설과에 비치)

(2) 시세완납 또는 미과세 증명 1통

(3) 국세 완납 및 미과세증명 1통

바. 접 수 처 성동구청 건설과

사. 접 수 기 간 1966년 5월 10일~1966년 5월 14일 12시

아. 입 찰 일 독점 유원지 1966년 5월 16일 10시

광나루 유원지 1966년 5월 16일 14시

(4) 시설보증금 15,000원 (전년도 수허가자는 3,000원)

자. 기타 상세한 것은 성동구 건설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6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영공고제78호

도로법 제40조 및 하천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 관내 도로 및 하천
(구거) 부지 점용허가를 별지와 같이 허가 하였기 도로법 시행령 제22조 제
3항 및 하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거 공고함

서기 196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하천부지)

점 용 목 적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점 용 기 간	공작 물 종류	공작 물 구조	공사 실시 방법	공사 기간	하천 유수 면적	하천 구분 및 번호	가 일 월 일 번호	점 용 자 주 소 성 명
토석채취	영등포구 사당동 606선	평 66.4. 1 397.6	66.6.30						66.4. 2	76	사당동 594 정 회 천
경 작	신림동 444 (808선)	534	66.3.23 67.3.22						77	77	신림동 86 홍 순 진
"	" 205	692	" "						78	78	가리봉동 301 순 규 식
토석채취	사당동 607선	721	66.4. 1 66.6.30						79	79	사당동 593 정 동 순
물치장	목동 404-5	168	66.3.31 67.3.30						80	80	당산동 1가 472 이 기 순
"	"	612.5	" "						81	81	당산동 1가 77 김 세 직
"	흑석동 114-11	480	" "						82	82	흑석동 2가 151 강 원 성
대지시 용	시흥동 595 596	283.9	" "						83	83	시흥동 115 면 원 기
"	" 555-6	140.7	" "						84	84	시흥동 555 오 대 수
"	"	175.9	" "						85	85	유 창 옥
경 작	불천동 738	273	" "						86	86	불천동 89 조 규 한

목초채 취	반초동 618	2,338	66.4. 4 67.4. 3
"	"	2,844	"
"	기초동 100원	667	"
도로면 정 원	오류동 13-10	62.3	66.3. 1 67.2. 28
목작목 시	문래 2가 36원	292.9	66.3. 25 67.3. 24
보 호	"	450	"
유수인 용	"	450	"
목초채 취	고척동 277원	1,543	"
경 작	목동 119-4원	630	"
"	신도림동 357-32	126	66.4. 7 67.4. 6
임시통 로사용	" 1101-13 14	7.8	"
목초채 취	신림동 444	6,047	66.4. 7 67.4. 6
물치장	시흥동 771	588	"
경 작	봉천동 55	353	"
토석채 취	잠원동 1-1 1-18원	9,622	66.4.15 67.4.14
경 작	방배동 423 480원	1,851	66.4. 7 67.4. 6
목초채 취	방배동 686	2,322	66.4.14 67.4.13
경작지 대유	신림동 410	1,806	"
경 작	양재동 202-1	170	"
"	목동 137-4	1,090	"
"	" 177-7	388	66.3.25 67.3.24
"	" 143-7	466	"
"	봉천동 608	454	66.4.16 67.4.15
"	신림동 112-1	747	66.4.15 67.4.14
66.4. 4	서대문구강동34-1		
87	조 용 시		
"	종로 남창동 4가17		
88	조 북 동		
"	서대문구경동 247		
89	산 경 자		
"	소로동 13-87		
90	김 경 환		
"	종로 2가 36		
91	현 수 덕		
"	"		
92	"		
"	구학동 63		
93	박 금 려		
"	목동 88		
94	이 수 순		
66.4. 7	영등포동 1가46		
95	이 호 근		
"	종로 5가 281		
96	은 종 익		
66.4. 7	신림동 444		
97	신 동 목		
"	구로구구로주재19		
98	시 종 호		
"	종로구		
"	영등포동 2가 167		
99	강 동 용 전		
66.4.12	관 동 인 각		
100	관 동 인 각		
66.4.14	방배동 453		
101	김 경 화		
"	구로구안산동 101-16		
102	송 화		
"	신림동 410		
103	경 동 신		
"	양화동 140		
104	경 동 기		
"	목동 92		
105	시 동 기		
"	양화동 신 17		
106	양 동 석		
"	목동 223		
107	문 동 천		
66.4.15	봉천동 561		
108	경 동 신		
"	신림동 110		
109	경 동 전		

◇	양화동 2-4	2,335	◇
◇	신도림동 355	1,625	◇
◇	목동 157-5	900	66.4.20 67.4.19
◇	◇ 157-11	558.7	◇
◇	◇ 157-16	567.7	◇
◇	신대방동 367	173	66.4.18 67.4.17
◇	목동 157-16	566.5	66.4.20 67.4.19
◇	본동 126	8.7	66.4.22 67.4.21
경 작	신도림동 271-25	714.9	66.4.13 67.4.12
◇	대방동 60	156	66.4.1 67.3.31
◇	봉천동 665	593.5	66.4.25 67.4.24
◇	신도림동 271-25	714.9	66.4.13 67.4.12
대지사 용	상도동 373-10	57.6	66.4.25 67.4.24
◇	목동 404-5	99	◇
경 작	신림동 492	250	◇
간판설 치	구로동 628-3	2	◇
대지사 용	시흥동 130-7	39.8	66.4.23 67.4.22
케불선 반	◇	354.4	66.4.29 67.5.28
경 작	신림동 444진	200	66.4.1 67.3.31
◇	◇	244	◇
◇	반초동 237-1	2,051	◇
목초채 취	동작동 12-1	9,000	66.4.23 67.4.21
대지사 용	시흥동 130-7	48.5	66.4.26 67.4.25

◇	영등포동 1가 46	110	회 숙
◇	이 창 근 외 1명	111	◇
◇	영등포동 20	112	석 만
◇	목동 39	113	중 설
◇	이 두	114	영
◇	신대방동 367	115	남
◇	목동 44	116	수 필
66.4.21	본동 126	117	원
66.4.21	신도림동 279	118	혁
◇	대방동 60	119	중
◇	봉천동 665	120	북
66.4.22	봉천동 665	121	1가 58-7
◇	신도림동 373-10	122	의 1
◇	상도동 373-10	123	규
◇	신정동 144	124	남
◇	봉천동 719	125	신
66.4.27	시흥동 130	126	돈
66.4.29	을지로 2가 193	127	순
◇	신림동 71의 4	128	인
◇	신림동 시영 주택	129	탄
◇	반포동 539	130	택
◇	중구명동 2가 33-1	131	식
◇	시흥동 130	132	섬

경 작	목동 157-4선 164-2선	1,119.2	〃					〃 133	종로구 신분로 2가 12-5호
대지사 용	흑석동 106-1선 4선	137	66.4.30 67.4.29					〃 134	흑석동 106-1두
경 작	신림동 5가 217	444.3	66.5.15 67.5.14					〃 135	영등포 5가 217 길 칠 원

(도로부지)

경 목	용 적	절 용 장 소	절 용 면 적	절 용 기 간	공 과 물 종 류	공 작 물 구 조	공 사 실 시 방 법	공 사 기 간	하 천 유 수 면 적	중 개 방 안	허 가 일 년 일 월 일 번 호	절 용 자 주 소 성 당
죽장 자 지	영등포동 4가 33	평 6.7	66.4.1 66.5.31								66.4.4. 48	영등포 4가 73 이 창 수
〃	〃 147	3.3	66.4.1 66.6.30								〃 49	영등포 146 김 용 도
죽장 자 지	문래동 6가 37	223	66.4.1 66.9.30								〃 50	영등포 2가 104 최 순 구
죽장 자 지	고척동 63-2	1.3	66.3.22 67.3.22								〃 51	고척동 141 서 경 한
죽장 자 지	노랑전동 184-24	11	66.4.1 67.3.31								〃 52	대평동 2가 60-2 장 운 화
경 원 (주택)	상도동 22-107	15.3	〃								〃 53	상도동 22-107 한 범 성
〃	〃 22-119	4	〃								〃 54	〃 22-119 김 의 식
경 원	〃 22-99	18.7	〃								〃 55	〃 22-99 조 용 윤
〃	〃 22-50	13.3	〃								〃 56	〃 22-50 심 소 야
〃	〃 19-5	12.5	〃								〃 57	〃 19-5 권 현
죽장 자 지	영등포동 2가 154	4.7	66.4.15 67.5.31								66.4.11 58	영등포동 5가 154 김 력 수
〃	당산동 2가 27-3	32	66.4.11 66.6.10								〃 59	당산동 2가 27-3 진 한 기
〃	영등포동 1가 9-5	5	66.4.11 66.7.10								〃 60	영등포동 1가 9-5 박 회 섭
경 작	신길동 232-1	84	66.4.1 67.3.31								〃 61	영등포동 2가 328 최 상 선
〃	구로동 644-11	189	66.4.15 67.4.14								〃 62	구로동 690 박 용 문
종로 화 단	본동 150	11	66.4.21 67.4.20								〃 63	본동 150 이 로 마
화 영 단	양평동 4가 315	4	66.4.22 66.5.21								〃 64	율리로 1가 97 신 상 욱

선건립	영등포동 2가1	1	66.4.1							충무로 1가 18	기
"	"	1	66.4.30							방문	
"	"	1	66.5.1							중구회현동3가1	진
관장	영등포동	14.5	66.6.30							백동	
관장	2가 94-1	14.5	66.4.22							신길동 38-7	태
관장	고척동 63-2	1	66.2.21							중	
관장	고척동 63-2	1	66.4.22							고척동 173	신
관장	고척동 63-2	1	67.4.21							김효	
관장	영등포동470-3	3.5	66.4.27							66.4.29	영등포동 3가 90
관장	영등포동470-3	3.5	66.8.26							69	김지운
관장	신림동 86	2.2	66.4.27							"	영등포동4가56-3
관장	신림동 86	2.2	66.7.26							70	이상옥
관장	양평동 4가 323	193	66.4.27							"	중구대평로1가76-4
관장	양평동 4가 323	193	67.4.26							71	김동철
관장	신길동 222	16.9	"							"	신길동 222
관장	신길동 222	16.9	"							72	김성만

㉠서울공고제79호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을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서기 1966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도로의종	도로	구선명	
점용목적	경원	점용기간	1966. 5. 2
점용장소	종로구 삼청동 35의 116. 35의 240	점용면적	1966. 10. 31
점용물의종류	도로	공사기간	129. 07M²
공사실시의방법		기타사항	
도로의복구방법			
점용자의주소성명	종로구 팔판동 35 김 사 달		